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일시 | 2012년 | 7월 11일(수) | 09:00~18:00

장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주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주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후원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동아일보

❖ 일시 : 2012년 7월 11일(수) 09:00~18:00

❖ 장소 :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시간	행사내용
09:00~09:30	등 록
09:30~10:00	<p style="text-align: center;">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신의기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개회사 : 박진근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환영사 : 김일수 원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축 사 : 안양옥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0:00~12:30	<p style="text-align: center;">session 1</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장석현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한국공안행정학회장) <p>▮ 제1주제 ▮ 학교폭력의 가정·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 론 : 박옥식 사무총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li style="padding-left: 20px;">문재현 소장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li style="padding-left: 20px;">성우제 과장 (법무부 소년과) <p>▮ 제2주제 ▮ 학교폭력의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토 론 : 박은진 교수 (일산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li style="padding-left: 20px;">이웅혁 교수 (경찰대학 행정학과) <p>▮ 제3주제 ▮ 학교폭력의 성별 차이와 정책적 대응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 표 :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 론 : 백미순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li style="padding-left: 20px;">정성희 논설위원 (동아일보)
12:30~13:40	오 찬

시간	행사내용
13:40~15:40	<p style="text-align: center;">session 2</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폭력 법제 및 대책</p> <p>• 사 회 : 오영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국형사법학회장)</p>
	<p>■ 제1주제 ■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p> <p>• 발 표 : 이승현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p> <p>• 토 론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인구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p> <p>■ 제2주제 ■ 외국의 학교폭력 법제 및 강력대응방안</p> <p>• 발 표 : 김대근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정한 전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p> <p>• 토 론 : 이진국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덕난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김영문 과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p>
15:40~16:00	휴 식
16:00~18:00	<p style="text-align: center;">session 3</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폭력 피·가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p> <p>• 사 회 : 조흥식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한국사회복지학회장)</p>
	<p>■ 제1주제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p> <p>• 발 표 : 김미숙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p> <p>• 토 론 : 권문일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재호 본부장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p> <p>■ 제2주제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치유 및 선도방안</p> <p>• 발 표 : 배상률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p> <p>• 토 론 : 윤소영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과) 고성혜 사무총장 (청소년희망재단)</p>

◎ 개회사 1

◎ 환영사 3

【session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 제1주제 | 학교폭력의 가정·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 7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한범죄학회장)
- 제2주제 | 학교폭력의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45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 제3주제 | 학교폭력의 성별 차이와 정책적 대응방안 67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session 2】 학교폭력 법제 및 대책

- 제1주제 |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 105
이승현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학박사)
- 제2주제 | 외국의 학교폭력 법제 및 강력대응방안
 - 미국의 따돌림(bullying) 법제를 중심으로 141
김대근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소년구금제도와 학교경찰배치제를 중심으로 165
오정한 전문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session 3】 학교폭력 피·가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 제1주제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183
김미숙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태정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주제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치유 및 선도방안 211
배상률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여 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백년대계’의 의미는 백년 동안의 계획, 다시 말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며, 우물가에서 승능 찾는 격으로 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거두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현실은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집단적 따돌림과 폭력은 단순한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의 갈등 수준을 넘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학생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폭력의 현실은 학교교육 현장에만 맡겨둘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으며,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공동 기획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더불어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작금의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었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이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는 여러분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부종합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본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과열된 학교폭력을 진정시킬 강력한 단기대책의 수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도를 넘은 학교폭력을 일단 억제하면서, 중·장기적 대책을 병행해 나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엄격성·확실성·신속성 그리고 무관용의 원칙과 단기효과성의 원칙을 통해 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교의 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장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안전사회 건설의 시발점이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진근**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일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학교폭력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시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동으로 이 주제에 관한 긴급단기 대책을 수립해보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진근 이사장님과 관련 스텝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전부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인간사회에서 폭력은 강자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폭력이 사회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수십년 동안 미래의 주역들을 육성하는 학교교육 현장에서조차도 심각한 형태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로 일컬어지는 왕따와 성인범죄를 뺨칠만한 집단괴롭힘 및 동급생간의 폭력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심지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과 수많은 연구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가 학교테두리 안에서 교육이념에 따라 선도로 치유할 한계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성을 띤 학교폭력은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일반사회내의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할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해 재탕·삼탕에 해당하는 원론적인 담론이나 지나친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강력하고도 긴급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리고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방과는 차별화된 강력하고도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해결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사법기관과 교육주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데 지혜를 모으는 장입니다. 각 계의 전문가와 실무가가 학교폭력에 대한 처방을 놓고 치열한 논의의 장을 펼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수수 방관하거나 원론적 처방에 머물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기승을 부리는 악성 학교폭력의 고리를 끊고, 이를 감소시키는 실천적인 대화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7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 장 김 일 수

issues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 제1주제

- 학교폭력의 가정 · 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

▶ 제2주제

- 학교폭력의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제3주제

- 학교폭력의 성별 차이와 정책적 대응방안

session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의
가정·학교 요인과
단기대응방안

❖ 발표 ❖

장준오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범죄학회 회장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즐게임이나 배이스볼게임을 하면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말리기는 힘들어요. 상황이 정말 심해지면 그제야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소재 중학생 김○○)

“요즘 교사들은 학교생활 외에도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따돌림 피해학생의 상담이나 학생들의 사고에 대한 경찰서 및 보호자의 연락에 바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경기도소재 고등학교 교사 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향하여 강통을 던진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교장선생님이 지나가실 때 실명을 부르며 장난치기까지도 합니다. 학생들 간의 폭력 뿐 아니라 교사를 향한 폭력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소재 초등학교 교사 김○○)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었으며, 수많은 정책과 실천방안을 내놓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비롯한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기간 중 진행된 학생과 교사의 면담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학교폭력의 현실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현대사회에서 갑작스럽게 생겨난 신드롬’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미 1990년대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고, 그 당시 언론을 통하여 제기된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마치 오늘날의 기사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¹⁾ 결국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이 십여 년간 다각도의 해결방안이 모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자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조벽, 2012).

또한 이런 학교폭력은 ‘한국사회 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1980년대 노르웨이에서 시작한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의 자살은 집단따돌림(bullying)이라는 용어가 탄생시켰고,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더 이상 특정국가에서만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니라 동서양을

1) 경향신문, 1997년 6월 29일 1면, 동아일보, 1995년 12월 14일 1면. 등 각 신문의 1면의 기사의 주제가 학교폭력이며,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이 집단화·홍포화되고 있으며, 폭행, 금품갈취,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가출, 자살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에 학교 당국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오늘날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음을 짐작케 할 수 있다.

구분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외국의 제도 및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다각도의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작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5년부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2월에 정부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각 사법기관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기관의 활동에 앞서 학생의 생활터전이 되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은 학생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며,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일탈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배움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학교의 현실은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강유미, 2011; 이신옥, 2002; 이영복, 2009). 게다가 학교폭력이 일부 문제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겉보기에는 평범하고도 모범적인 학생들에게까지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이영복, 2009), 그 양상은 저연령화·홍포화·집단화 될 뿐 아니라 폭력의 다양성과 지속성과 같은 심각한 특징까지 나타나며 더욱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기술된 면담의 내용에서 ‘쫄게임’과 ‘베이스볼 게임’²⁾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의 게임은 단어 자체의 어감과 다르게 ‘게임을 가장한 폭력’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약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력이 장난

2) 쫄게임과 베이스볼게임

쫄게임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이긴 숫자만큼 때리는 게임이다. 게임방법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학생이 ‘쫄게’하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 상대방이 그 행위에 겁을 느끼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피하게 되면, 이마나 뺨을 맞는다. 쉽게 말해 ‘쫄면 맞는다’는 것이 게임의 원칙이며, 가해학생들은 게임이라는 명분으로 웃으면서 때리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수치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해학생이 맞지 않기 위해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의 행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뺨’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베이스볼 게임	야구를 응용한 게임으로 얼굴이 공, 주먹 쥔 팔이 방망이가 된다. 보통 학급에서 놀림받거나 왕따인 학생이 대상이 되며, 그 학생의 턱 아래 부분을 방망이를 휘두르듯이 팔로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이때 대상이 되는 학생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방어해야 하는데, 방어하지 못할 경우 뺨을 맞는다. 설사 방어 하더라도 2루수, 3루수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대기 하고 있어 게임이 반복된다. 맞는 부위가 얼굴의 부분인 뺨이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치욕감을 느끼지만,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할 경우에는 집단폭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의 대상이 교사로 확대되거나, 범위가 학교 밖으로 넓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지자 관련기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다수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폭력은 이미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폭력을 장기적인 예방 및 치료에만 의지 할 수 없다.

이제는 학교폭력도 무관용 원칙과 제재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관대하게 처벌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제재를 당하지 않는 가해 학생들을 보고 주위학생들도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인간은 누구나 합리적 계산자이어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회피한다고 주장하는 범죄학자들(Hobbes, 1957; Beccaria, 1963; Bentham, 197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은 고통을 피하고 대가를 치루지 않고 쾌락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학의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억제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처벌에 주목하여 그것이 범죄를 설명하는 주요요인이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누구나 범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 요인으로서 처벌여부에 의해 범죄여부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처벌이 존재하거나 강화되면 범죄를 하지 않으며, 반대로 처벌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화되면 범죄의 발생가능성은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처벌이 범죄의 주요 설명요인이 되며, 따라서 범죄예방 및 대책도 처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처벌의 효과성은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실제 현상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학교폭력을 짚어보는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학교폭력의 원인, 실태, 처리절차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단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학교폭력의 원인 및 실태

1. 학교폭력의 원인

최근 10여 년 동안 학교폭력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김경집, 2005; 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김창균·임계령, 2010; 노성호, 2004; 박영신·김의철, 2001; 박정선, 2004; 박효정·정미경, 2006; 송정아·김영희, 2001; 이순래, 2002; 이해경·김혜원, 2001; 정규석, 2009; 한상철, 2004 등).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학교폭력의 원인들을 제시해 왔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임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의 경우 배타적으로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요인들의 다차원적인 작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³⁾. 국내의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을 크게 개인, 가족, 친구, 학교, 사회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김창균·임계령, 2010; 정규석, 2009)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학교요인에 집중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가정 및 학교의 요인의 중요성은 Hirchi의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사회통제이론의 기본가정은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유대가 약해졌거나 끊어졌을 때 비행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통제의 4가지 요소인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등의 사회통제요인이 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규범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유대요인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행을 스스로 억제하며, 사회의 결속이 없고 관심이 없을 때 비행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유대환경은 가정과 학교이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송정아·김영희(2001)의 연구는 가족폭력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및 폭력매체에 대한 접근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것이 직접적으로 혹은 학교폭력을 통해서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부적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가정 요인

가정은 청소년의 인격발달에 처음부터 영향을 주는 일차집단으로 자녀들의 지능, 성격, 신체, 정서 형성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즉 가정이라는 곳은 청소년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간성을 키우는 요람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청소년의 주체성이 형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만일 가정이 이러한 가치관을 가질 수 없게 되면 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들은 마치 하얀 도화지 같아서 거기다 무엇을 써넣느냐에 따라 훌륭한 서예나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낙서장이나 휴지조각이 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에 대한 가족의 배려와 관심은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무관심하거나 방임을 하면 청소년 비행자나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가정의 구조적·기능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Barnes&Farrell, 1992; Griffin et al, 2000; Hirshi, 1969; Kim et al; Oetting et al, 1998; Straus, 1991; Wilson, 1980). 특히 결손가정(강경수, 2005; 배종대, 2008; Loeber&Loeber, 1986; Rankin, 1983), 부도덕함(조철옥, 1991), 갈등(배종대, 2008; 양기석, 1981), 애정결핍(양만우, 1984), 가정 내 폭력(김정옥·장덕희, 1999; 연진영, 1992) 등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가정이 청소년의 행동과 성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부모의 훈육 및 통제방식,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정도,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 등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로 간주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관심이 부족할수록, 부모의 훈육 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폭력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운선, 2005; 한상철, 2004). 특히 가정 내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간의 폭력은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적응 및 폭력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학습되고 내면화된 폭력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더 큰 공격성 및 충동성으로 드러나게 된다.

2) 학교 요인

학교폭력의 원인은 청소년의 가정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요소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리적 장소임과 동시에 학교폭력의 주된 물리적·심리적 행동을 행사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학교 그 자체는 학교폭력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특히 학업성취도 및 학교에 대한 적응도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학업성취와 학교폭력 가해행위와는 매우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준호, 1997; 장덕희, 2007), 특히 입시지향적인 국내의 교육 환경은 개인의 적성을 찾아 계발시키는 학교 고유의 기능을 왜곡 시키면서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포기한 학생들을 폭력으로 쉽게 빠져들게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다(최덕경·강기정, 2001; 광영길, 2007). 또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혹은 적대적인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유형 및 통제의 강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 등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교 폭력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상균, 1999). 연구들에 따르면 교사와의 친밀감이 낮을수록(김치영, 2002),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이은주, 2000) 폭력행동을 보일 경향이 높았으며, 피해집단 보다는 가해집단이 교사와 보다 갈등적인 관계를 보였다(박영신·김의철, 2001). 그리고 학생에 대한 통제 방식이 폭력적일수록 학생의 폭력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김은경, 1997). 또한 김미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체계적 요인들은 학교폭력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로 사용되어 왔다.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행동 및 심리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및 폭력적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김영희 외, 2000).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경험이 많은 친구와 어울리는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집단 내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2007; 김순혜, 2007; 장덕희, 2007; 최운선, 2005; 김용석 2004; 김재엽·최선희, 1998). 특히 최운선(2005)의 메타분석 연구는 32개

의 학교폭력 관련 변인들 중 또래폭력 허용도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실태

1) 학교폭력 발생 실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실태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발생 실태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자료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의 실태조사 보고서이다. 청예단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2006년 17.3%, 2007년 16.2%, 2008년 10.5%, 2009년 9.4%, 2010년 11.8%, 2011년 18.3%로 학교폭력의 평균피해율은 13.9%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가해율은 2006년 12.6%, 2007년 15.1%, 2008년 8.5%, 2009년 12.4%, 2010년 11.4%, 2011년 15.7%로 동기간 평균가해율은 12.6%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 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합쳐 전체 학생 수의 25% 내외에 이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1〉 학교폭력 발생 피해율 및 가해율

연 도	피해율(%)	가해율(%)
2006년	17.3	12.6
2007년	16.2	15.1
2008년	10.5	8.5
2009년	9.4	12.4
2010년	11.8	11.4
2011년	18.3	15.7
평 균	13.9	12.6

〈자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2012년 보고서 재구성〉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실태

학교폭력의 또 다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건수를 정리하였다.⁴⁾ <표 2>에서 보듯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총 5,30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학교가 전체 발생건수의 약 70%가량 차지하고 있다.

<표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심의건수 (연도:2008~2010/ 단위:명)

학교급	2008년		2009년		2010년	
	건	%	건	%	건	%
초 등	38	1.9	31	2.4	44	2.2
중 등	1,390	70.0	893	68.3	1,459	72.4
고 등	557	28.1	383	29.3	511	25.4
합 계	1,985	100	1,307	100	2,014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3)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집계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자료를 재구성하여 <표 3>을 만들었다.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전체 가해자수는 총 46,354명이고, 전체 피해자수는 총 36,701명이며, 이중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로 초등학교와 고등학생을 합친 수치보다 훨씬 높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가해자 1인당 피해자수 평균은 1.3명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1.6명으로 매년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중학교는 평균과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평균 보다 낮은 수치(1.2명)로 나타났다.

4) 2011년 자료는 2012년 12월에 공시예정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 3〉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구 분	2009년		가해자 1인당 피해자수	2010년		가해자 1인당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초 등	488	314	1.6	676	497	1.4
중 등	9,762	8,180	1.2	12,008	8,640	1.4
고 등	3,337	3,234	1.0	4,662	4,439	1.1
합 계	13,587	11,728	1.2	17,346	13,576	1.3

구 분	2011년		가해자 1인당 피해자수	2012년 (~5/31)		가해자 1인당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가해자수	피해자수	
초 등	567	363	1.6	84	67	1.3
중 등	11,074	8,504	1.3	1,993	1,959	1.0
고 등	3,780	2,530	1.5	873	776	1.1
합 계	15,421	11,397	1.4	2,950	2,802	1.1

〈자료: 각 시·도 교육청〉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비교해본 결과, 2009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대비 가해자수는 10.4명이고 피해자수는 9.0명으로 나타났다.⁵⁾ 2010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대비 가해자수는 8.6명, 피해자수는 6.7명으로 나타났다.

4)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실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의 유형은 〈표4〉과 같다. 우선, 가해자수와 피해자수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폭행이며, 폭행은 가해자수와 피해자수가 각각 21,340건, 17,561건이다. 또한 전체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비율도 중 64.1%, 49.4%로 차지하여, 폭행이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폭행 외에 금품갈취나 따돌림이 역시 많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이 세 가지의 유형의 합이 약 80%임을 감안하였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폭행, 금품갈취, 따돌림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고려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5) 이 통계자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와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고된 가해자수 및 피해자수가 포함되어 있어 자치위원회 개최건수당 가·피해자의 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

〈표 4〉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실태(2009년~2011년 합계)

유형	가해자수(%)	피해자수(%)
폭행	21,340 (64.1)	17,561 (49.4)
금품갈취	6,114 (18.4)	9,988 (28.1)
따돌림	1,566 (4.7)	748 (2.1)
상해	917 (2.8)	1,054 (3.0)
협박	695 (2.1)	764 (2.1)
명예훼손/모욕	457 (1.4)	243 (0.7)
강요 및 성추행	421 (1.3)	404 (1.1)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205 (0.6)	154 (0.4)
약취/유인	67 (0.2)	117 (0.3)
공갈	58 (0.2)	88 (0.2)
감금	30 (0.1)	23 (0.1)
기타	1,445 (4.3)	4,413 (12.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많아 학교폭력의 집단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태는 폭행이며 그 다음으로 금품갈취, 따돌림, 상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금품갈취나 심한 폭행, 혹은 상해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런 행동들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폭력의 사건처리절차

〈그림1〉은 소년법 및 각 기관의 학교폭력 처리 지침서를 통해 작성한 학교폭력 사건처리절차 흐름도이다.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는 가정 또는 학교에서 경찰, 검찰, 법원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소년법 또는 형법의 처분을 받거나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된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⁸⁾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모두 학교폭력 사건처리절차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 외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여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통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심리상담 및 조언, ② 일시보호,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권고) 퇴학처분(고등학생의 경우)의 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 중 외 특별교육이수처분을 통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또는 일반대안학교로 특별교육이수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으로 경찰에의 고발과 「소년법」제4조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접수하는 통고제도가 있다. 최근 법원에서 권

러한 경우 사건 조치 방안으로는 첫째, 담임교사가 포래상담, 포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학급총회 등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해야 하는데, 이때 학교실정에 맞는 포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담임교사가 사안 인지 후 3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7)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는 1)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조치 대상이 아닌 폭력사안과 2)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사안이 있다. 이러한 사안은 첫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안을 보고 받은 즉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 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선도 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되, 학교폭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선 조치로 할 수 있는 조치에는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학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가 있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격리조치를 취한 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 8) 학교장이 반드시 출석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는 폭력행위로써 ①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③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④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사건의 조치 방안으로는 ①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② 출석정지 기간 중에는 학교 내 상담실 또는 Wee클래스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③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후, 신속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장하고 홍보하는 통고제도는 「소년법」 제4조에 의거하여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제도이다. 통고제도의 대상에는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이다. 통고제도는 소년 문제의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건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소년에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부담을 주지 않으며,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통해 낙인찍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조사제도나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의 전문가의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경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경찰에서 117, 112신고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여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주변가담학생 등을 파악한다. 경찰서장이 ‘안전 Dream팀’⁹⁾을 구성하여, 사례회의(필요시 전문가 참여)를 통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 및 처벌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기능에 배당한다.

선도대상사건은 ① 사안이 경미하여 경찰의 개입 보다 가해자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② 가해자 자진신고 또는 피해회복·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처벌대상사건은 ①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②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비행의 질이 중한 사건 및 선도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선도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은 신속히 학교에 통보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하며,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불입건을

9) 안전 Dream팀은 서장(팀장),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정보과장으로 구성되며, 여성청소년계장이 간사역할을 수행한다. 야간 등 부득이한 경우, 생활안전과장(또는 상황실장)이 Dream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검토한다.

그 밖의 사건은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기소되는 것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10)

4. 검찰

검찰이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3가지 과정이 있다. 첫째,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 둘째, 법원으로 송치 받은 사건, 셋째, 「학교폭력예방및대처에관한법률」의 특별이수교육 명령에 의해 학교로부터 직접 송치 받은 사건 등 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하여, 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그 동기와 죄질에 따라 일반형사법원으로 공소제기하거나, ② 그 외의 소년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으로 공소제기하거나, ③ 사안이 경미한 소년에게는 기소유예 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 즉 검찰은 가해학생들에게 멘토링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교육 이라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함으로써 사법절차의 회부 및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소년들을 선도 및 보호하고 있다. 11)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①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②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③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 ④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특별교육, 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⑥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0)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자체만을 처리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학교폭력 가·피해자를 위한 제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단계에서 불입건 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경찰단계 촉법·범죄·우범소년 그리고 학교 또는 보호자가 교육을 의뢰한 학생들이다. 프로그램은 죄종, 연령, 개인 특성 등을 구분하여 10명 내외의 소집단으로 주1회 2시간씩 5회 이상의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은 총 5단계로 개인별 문제평가 등 초기상담과 10명 내외의 집단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한 부모상담 및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논의 및 평가, 사후관리(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까지 현장방문과 전화상담)등으로 진행된다. 경찰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는 ① 멘토 경찰관 지정 및 2차 피해 방지, ② Wee센터, CYS-Net 연계 심리치료, ③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신변보호·법률지원, ④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치료비 등 보상, 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 등이 있다.

11)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청소년희망재단과 함께 학교폭력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파랑 마니또”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로스쿨 학생 등으로 구성된 파랑마니또는 소년법들과 결연을 맺고 6개월간 상담, 교육활동 등의 멘토역할을 한다. 해당 소년법들은 멘토링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는다.

5. 법원

법원은 학교 장 등의 통고처분,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검찰의 기소에 의해 학교폭력 사건을 접수한다. 먼저 검찰로부터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형사법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나누어 처리한다.

형사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처분을 내리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한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조사와 심리를 한 결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불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의거하여 10가지 보호 처분¹²⁾ 중에서 선택하여 결정한다.

또한 법원의 절차에는 검사에게 송치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불처분 결정 또는 소년보호 처분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리고 이중 4,5호 처분으로 보호관찰명령을 받는 청소년은 대안교육명령을 통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12)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감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IV. 학교폭력의 문제점 진단

1. 가정에서의 문제점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통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때 학교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 부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기능적 결손인데, 다음의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사례 1>과 같이 부모 중 한명이 없는 가정의 편부모 가정 또는 조손부모 가정과 같이 물리적 결원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결함으로 인하여 학생이 부모의 보호 및 훈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이르게 된다.

사례 1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중(中)

• 사건 : 집단 괴롭힘, 폭력(2011.12.8.)

가해학생 母 진술: 학생의 아빠 기일이라, 아빠가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제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빠가 늘 정의를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돌발성 난청이라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또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

또한, 학교폭력 학생의 가정의 기능적 결손과 관련된 사항은 <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5>를 통해 볼 수 있다. <사례 2>의 내용과 같이 부모가 건강 상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사례 3>과 같이 자녀의 등교조차 통제하지 못하는데다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비규범적인 부모, <사례 4>와 같이 학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부모, <사례 5>와 같이 자신의 자녀는 잘못이 없다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부모 등 가정 내 부득이한 사정, 자녀에 대한 통제불능, 무관심, 방임 등으로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가정의 교육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교폭력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이다.

사례 2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중(中)

- 사건 : 금품갈취 및 폭행사건(2011.6.18.)

담임진술: 의견서에도 썼는데 가해학생의 가정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1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학교폭력)사건발생 시기와 일치합니다. 집에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

사례 3 2011년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중(中)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2011년 5월에 고3인 학생의 생활지도(본교의 등교시간이 7시 30분이고, 학생이 지각이 빈번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지각하여 30분 일찍 등교시켰음)에 불만을 가지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아침 7시에 전화를 해서 언성을 높이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음. 출근 후 10시 경에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일찍 등교시키는 것에 대한 항의를 함. 그 이유는 아침에 아버지가 학생을 태워서 등교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술도 못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와야 하므로 교사가 부모에게 벌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례 4 2011년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중(中)

대전지역 모 중학교에서 3월 중순경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에게 경위서를 받자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무실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그 학생에게 경위서를 받던 생활지도부장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학생전체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사례 5 2011년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사례 중(中)

2011년 4월 대구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끼리 다툼과 수업 방해 문제에서 가해 학생을 체벌 없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잘못 없는 학생을 범인 취조하듯이 조사하지 말라는 식의 항의를 받았다.

2. 학교에서의 문제점

1)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간 갈등

학교 내에서 학생을 통제하는 방법 및 통제의 정도 등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갈등이 심해지며,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¹³⁾

2010년 10월 5일 현재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중이다.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도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교권침해사례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전보다 약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에 대한 욕설은 2009년(104건)에서 2011년(575건) 사이에 5.5 배가 늘었으며, 수업진행 방해는 4건에서 32건으로 8배가 증가하였다.¹⁴⁾

이와 같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가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규정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¹⁵⁾에서는 체벌금지(제6조), 휴식권(제8조, 제10조), 복장의 자유권(제12조), 사생활의 자유(제13조), 의사표현의 자유(제17조) 등의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문제 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간접체벌(교육벌)까지도 전면 금지시키며, 학생 지도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수면을 취해도 통제 방법이 없다. 또한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용모의 규제를 하여서도 안 된다. 학생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지품 검사 및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는 안 된다. 교사가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을 뿐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 교권보호조례안에 따르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4조), 교원의 책임의무(제8조)를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및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학교장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으로 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간의 상충된 입장이 학생과 교사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하며, 교사가 올바르게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리게 한다. 이렇

1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 2012년 4월 3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학교 이상없다’ 발언, 학교현장 ‘어이없다’”.

14) 중부일보. 2012년 6월 18일.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배 증가. 이복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7일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김종례(새누리·화성2) 의원에게 제출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자료

15) 2012년 1월 26일 공포.

계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갈등이 깊어진 교실 내의 현실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사례분석을 통한 학교의 사건처리 문제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 결과 보고서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카인즈)¹⁶⁾의 기사를 분석하였다.¹⁷⁾

학교폭력 사례별로 학교에서 내린 조치는 <표 5>와 같다. 학교에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거나, 가벼운 주의, 등교정지, 전학권고 등의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가장 심한 조치는 10일간의 출석정지, 전학명령, 퇴학명령 정도였다. 기사화되지 않은 사례나 처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는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미온적이다.

특히 ②, ④, ⑥, ⑦, ⑧, ⑩, ⑪, ⑫, ⑬, ⑮, ⑯의 사례와 같이 사안이 집단성, 상습성, 중한 죄질의 행위를 저지른 경우조차 등교정지, 권고전학명령이 내려지며, 심지어 무조치 하는 사례도 있다. 사실상 성인이라면 형사 처분을 받을만한 수준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하거

16) 카인즈에서 2009년 1월 1일에서 2012년 6월 28일까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1,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기사의 대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는 사건보도의 내용이었으며, 가해학생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중 중복되는 기사를 제외하고 이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기사만을 사례분석에 사용하였다(<http://www.kpf.or.kr>)

17) 사례별 참고 출처

- | | |
|---|--|
| ① | : 동아일보, 2012년 4월 24일, 가해자 전학 보낸다고? 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최예나 기자 |
| ② | : 서울신문, 2012년 2월 6일, ‘뇌병변장애 2급’ 명환이의 끝나지 않은 비극/ “장애보다 무서운 폭력... 개학이 두려워요”, 박건형·윤샘이나 기자 |
| ③ | : 동아일보, 2012년 5월 23일, 일진은 흥기 협박하는데...학교는 “그냥 참고 다녀라”, 김희균 기자 |
| ④ | : 동아일보, 2012년 5월 23일, 일진은 흥기 협박하는데...학교는 “그냥 참고 다녀라”, 김희균 기자 |
| ⑤ | : 한겨레, 2012년 1월 12일, (중) 은폐의 메커니즘/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눈귀 닫아, 진명선 기자. |
| ⑥ | : 세계일보, 2011년 11월 25일, 왕따당한 아들에게 전학 강요하고 돈까지 받은 교사 처벌 힘들다니..., 서지희 기자 |
| ⑦ | : 서울신문, 2012년 3월 16일, 일진들, 급우 부모에 “등에 칼 꽂혀요”위협, 임송학기자 |
| ⑧ | : 한국일보, 2011년 11월 3일, 집단폭행으로 등교 공포 시달리는 초등학생 은재/“학교 무서워서 못가요...전국에나 빨리 갔으면”, 김혜영 기자 |
| ⑨ | : 서울신문, 2012년 2월 8일, 7개월 폭행·성희롱-4차례 조치 요구 목살 끝에..., 김소라 기자 |
| ⑩ | : 서울신문, 2011년 12월 29일, 막가는 학교폭력...2차피해에 노출된 아이들/“보복이 두려워요”폭력신고 꺼린다, 김소라기자 |
| ⑪ | : 서울신문, 2012년 1월 27일, ‘권고 전학’은 중학생 또 폭행, 조한중 기자 |
| ⑫ | : 서울신문, 2012년 2월 23일, 막장 10대들 학교폭력 어디까지...“성추행 가해자 전학후 내 딸 왕따 당해 자살”, 황경근 기자. |
| ⑬ | : 세계일보, 2011년 12월 30일, ‘건방지다’는 이유로...여중서 후배 집단폭행, 박종훈 기자 |
| ⑭ | : 세계일보, 2012년 1월 11일, 전학처벌 불복해도 대책 없다니... 유재권 기자 |
| ⑮ | : 동아일보, 2012년 1월 3일, 무서운 여중생들, 차준호 기자 |

나, 내부사건으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¹⁸⁾ 학교에서의 사건처리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통제능력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를 남기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조치

사 례		조 치
①	폭행 및 집단 따돌림	무조치
②	집단 따돌림, 폭행, 협박, 상해(전치 12주)	
③	집단폭행 및 인터넷 괴롭힘	
④	금품갈취를 위한 협박 및 괴롭힘	
⑤	집단 따돌림	
⑥	6개월간 29차례 폭행, 폭언, 1차례 성추행	부적절하거나 가벼운 주의
⑦	일진들의 집단 폭행 및 협박	
⑧	집단폭행 및 가혹행위	
⑨	집단 따돌림, 폭행, 욕설	
⑩	코뼈, 연골 부서짐(완치 6개월 및 재수술 필요)	치료비 및 교내봉사 3일
⑪	금품갈취 및 폭행	특별교육이수처분(5일)
⑫	1년간 지속된 금품갈취 및 폭행	퇴학(타지역 전학가능)
⑬	3년간 지속된 금품갈취 및 폭행	전학 명령
⑭	폭행 및 괴롭힘	등교정지
⑮	2년간 150여 차례 폭행	(권고)전학 (명령)
⑯	성추행	
⑰	집단폭행	
⑱	집단 따돌림	
⑲	집단 괴롭힘	권고퇴학/ 출석정지/ 사회봉사
⑳	집단 폭행	10일간 등교정지와 전학명령 (복합처분)

18) 세계일보. 2007년 3월 6일. “학교 명예 훼손될라, 해결은 뒷전 '쉬쉬'”. 특별기획취재팀.
중앙일보. 2011년 12월 31일. “‘쉬쉬’해서는 학교폭력 못 막는다”. 홍권삼 기자.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신고 받은 후 7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⁹⁾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열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학교 측의 소극적인 입장은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마저 소집하지 않는다.

사례 1 ²⁰⁾

왕따를 당한 7군의 부모가 처음 교장을 만나 가해 학생의 공개사과와 각서를 요구하자, 교장은 “학교는 교육 기관이지 벌주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감은 “아이들을 불러 반성문을 쓰도록 지도했다”고 말했지만 반성문을 7군이나 학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열어달라는 어머니 박씨의 요구에 대해 교감은 “가해자의 사실 인정 등 증거자료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학급교체 등 처벌을 요구하는 박씨에게 교감은 “그럴 경우 애들이 보복할 생각만 한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교감은 박씨에게 “7군 한 명도 소중하지만 다른 학생도 소중하다”며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담임교사 박씨가 7군 친구들의 왕따 가해 사실을 녹취한 자료를 내놓자 담임교사는 “녹음은 불법이고 범죄”라며 믿어주지 않았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기피하며 학부모와 학교관계자들만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례 2 ²¹⁾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를 많이 포함시키라는 법 규정상 외부인이 들어올 자리도 없을뿐더러 교내 폭력사건이 밖으로 새어 나가는 부담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만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학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①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상시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였다.

20)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2일. (중) 은폐의 메커니즘/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눈귀 닫아. 진명선 기자.

21) 서울신문. 2012년 6월5 일. “학교폭력 알려질라” 외부전문가 참여기피 그들만의 폭력대책. 윤샘이나 기자.

셋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에서 학교 측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료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의 이미지만을 생각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 3 ²²⁾

지난해 자치위에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던 B씨는 “학부모들은 처벌이나 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장과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이야기를 주도한다”며 “결국 학교 문제가 소문나서 좋을 것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자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자치위가 학급교체(0.7%), 출석정지(7.1%), 전학(5.85%) 등의 처분보다 교내 봉사(36.9%)와 같은 손쉬운 처분을 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0 자치위 가해 학생 처리 현황')

대다수 교장들이 법률이 정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들어 자치위의 처분 결과를 공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박종호 건국대 교수(교직학과)는 “사건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면 학생들이 이를 의식해 학교폭력 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점은 학교폭력에 대한 같은 사례도 각 학교마다 처벌이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처벌을 위하여 통일되고 체계적인 양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9가지 처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처벌 정도를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기준으로 인해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가해학생의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학교폭력 문제로 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문제점

2012년 2월 6일 정부 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안은 크게 '직접대책'과 '근본대책'으로 나뉘었으며, 직접대책은

22)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2일. (중) '쉬쉬'하고 마는 폭력대책자치위. 진명선 기자.

①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② 신고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 조치 강화, ③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④ 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이며, 근본대책으로는 ⑤ 인성교육 실천, ⑥ 가정과 사회 역할 강화, ⑦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대책 등이 포함된 총 7개의 실천과제이다.

특히 학교 일진회 수사는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등 공권력을 투입하여 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울 정도로 학교폭력 척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였으며, 가정과 학교의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종합대책의 내용은 세부적이고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대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사실상 대책의 내용보다는 실행이 더 중요한데, 소요기간, 예산,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평가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대책의 내용상에 몇 가지 의문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집단화를 조장하는 일진의 위험성을 제시하고, ‘일진경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것이다. 일진경보제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무기명 표본조사를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 나오거나, 일진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학교폭력 조사 담당자와 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고위험군 학생상담과 전교생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일진지표의 개발이 1996년 실행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둘째,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부분이다. 세부내용은 ① 학교폭력 예방, 자녀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고 가정교육을 실천하도록 **모든 학부모**(약 1,000만명) 대상으로 교육 확대, ② 일과 후 학교설명회 개최(연2회) 및 교사-학부모간 상담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③ 학부모 **교육기부 인력풀을 확보(약 10만명)**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강화 등 이다.

특히 교육·교육정보제공 방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청과 학교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각 기관에서 실천해야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학부모의 일과 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직장에서의 학부모 교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을 강화 시키는 최고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을 강제 출석시켜야 하고, 소요기간이 너무 길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전문 인력 동원 측면에서 이러한 방안들의 실천가능 여부는 의문

이다. 1천만 명이 넘는 학부모를 전부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학부모를 교육하는 강사를 10만 명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다더라도 과연 그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셋째,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대책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즉각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기존 대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사건 처리기간 중 경찰의 보호, ② 심리상담 실시 의무화, ③ 심리상담-의료지원-법률지원 등 통합적 지원, ④ 학교안정공제회를 통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우선 보상 하계 하는 등 피해학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중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은 Wee센터, Wee스쿨을 비롯한 외부기관과 연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Wee센터와 Wee스쿨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이다. Wee센터는 2012년 7월 현재 전국에 136개, Wee스쿨은 3개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도움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또한 시설도 학교나 교육청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Wee센터가 상담 서비스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다문화 관련 업무, 봉사활동 등 지역교육지원청 행정 업무를 떠안으면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²³⁾ 즉 Wee센터 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본연의 활동인 상담서비스 외에도 지역교육지원청과 관계된 일반 행정업무를 추가로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인력 면에서도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²⁴⁾

23) 제주뉴스. 2011년 11월 18일. ““WEE센터, 학생 상담업무 전념해야”. 김문기 기자.

24) Wee 센터/스쿨(교과부)

시·도	Wee 센터		Wee 스쿨	
	시설수	1일 수용 가능인원	시설수	1일 수용 가능인원
서울	11	109	-	-
부산	5	37	-	-
대구	5	42	-	-
인천	6	53	1	90
광주	3	26	1	50
대전	3	37	1 ('13년 개교)	100
울산	3	28	-	-
경기	18	151	1 ('13년 개교)	100
강원	7	56	-	-
충북	11	102	1	50
충남	9	46	1	50
전북	11	83	-	-
전남	11	62	-	-
경북	12	65	-	-
경남	9	76	1 ('13년 개교)	100
제주	2	16	-	-
합계	126	989	7	540

V. 결론 및 단기대응방안

학교폭력이 지역 및 학교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여 왔음은 사실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크게 인식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비행이기 때문이고, 단기적으로는 자살과 같이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예방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대응방안으로서의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단기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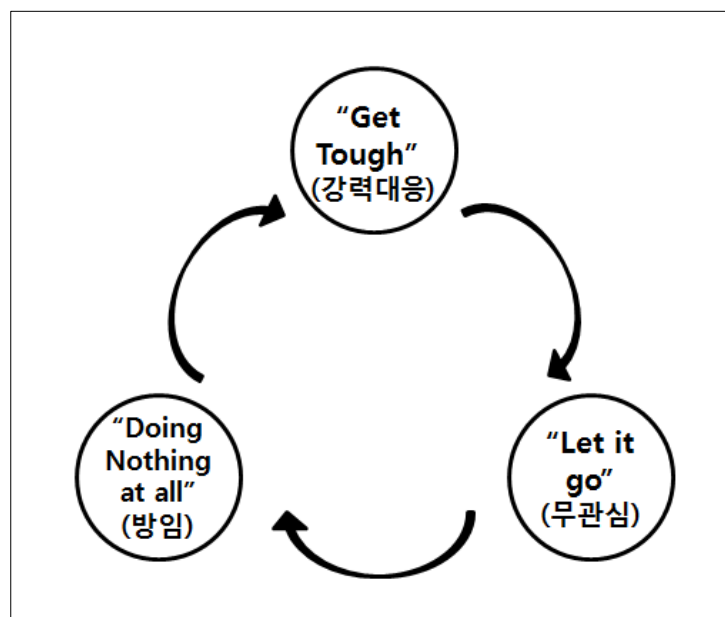
1. 소년사법체계 정책 변화 및 처벌의 기준 필요

소년사법체계의 정책적 방향은 [그림 2]와 같이 순환한다. “Get Tough”를 강조하여 강력한 처벌정책, “Let it go”와 같은 무관심한 정책, “Doing Nothing at all”의 방임하는 정책의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Bernard, 1992). 한국사회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정책으로 인해 범죄피해자보다는 범죄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범죄자에게 무관심이나 방임하는 모순된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다. 그 결과 공권력의 실행은 감소하고 법치주의가 약화되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년사법체계의 주기에서 보여주듯이 “Get Tough”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

이런 추세와 병행하여 학교폭력도 무관용 정책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억제이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처벌을 엄격하고 신속하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학교폭력을 근절 시

[그림 2] Cycle of Justice



킬 수 있을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지체됨 없이 신속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며,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경우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를 하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며,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었다(Tittle, 1969; Logan, 1972; Klepper & Nagin, 1989; Grasmick & Bursik, 1990; Decker et al., 1993; 기광도, 2004; 이성식, 2007; 2008). 예컨대 선거법 261조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겐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5,000원 짜리 설렁탕을 한 그릇을 먹고 그의 50배에 상응하는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례가 있었고, 그 이후 선거기간에는 사소한 식사대접 조차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는 처벌의 확실성의 효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대처 법령을 시행하여 성공한 외국의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의 Manifesto against Bullying, 아일랜드의 National Guideline to Counter Bullying in School, 네덜란드의 National Education Protocol against Bullying 프로그램 등이며, 이를 통하여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결국 한국사회도 더 이상 예방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에 근거한 단기적인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Get Tough"한 무관용 원칙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처벌강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현재 학교에 따라 학교폭력을 대응하고 예방을 위하여 적용하는 처벌 적용 기준과 외부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 이유는 ① 어떤 행위까지를 폭력이라고 간주할 것에 대한 문제, ② 폭력의 어떤 수위부터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 어렵다. 학교폭력 처벌에 초점을 맞추려면 끊임없는 논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있어 처벌에 대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수행하는 외부기관과의 연계에 대한 객관적인 방향성 부여 및 강력한 체계구축을 해야 한다.²⁵⁾

이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학교폭력 처분사례를 폭력의 유형별로 정리하여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죄질이 중하거나 집단성, 상습성이 있는 ③, ④, ⑦,

25) 학교폭력을 가정과 학교에서 감당하고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설, 인력, 프로그램 등 전문성이 좋은 기관에서의 교육과 합리적인 처벌은 학교폭력에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⑧, ⑫, ⑬ 등의 사례는 형사처분이 마땅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에 대한 ⑫, ⑬ 사례는 피해학생이 자살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례⑫는 사회봉사명령, 사례⑬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죄질, 집단성, 상습성을 인정하여 형사처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출석정지명령의 기간은 10일이며, 이 기간 동안은 학교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때 단순히 출석정지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에 특별교육이수처분²⁶⁾을 반드시 받게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학교에서 의뢰할 수 있는 과정은 5일 과정 및 10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2주 과정, 1개월 과정과 같이 장기의 교육과정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 학교,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사건접수 할 수 있는 통고처분도 좋은 대안이며,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받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장이 출석정지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례인 <표4>의 ①, ②, ⑤, ⑥, ⑨, ⑩, ⑪는 최소 특별교육이수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죄질이 중해 성인이라면 형사처벌이 당연한 ①, ③, ⑤, ⑥의 사례는 형사처분결정을 내려야 하며, 사례②, ⑩과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을 통해 소년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사례②는 보호처분 8호 이상으로 소년원 송치, 사례⑩은 보호처분 4호를 통해 보호관찰명령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⑨, ⑪은 사안에 따라 특별교육이수처분의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2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과정

과 정	대 상	내 용
3일 과정	검찰청 의뢰 기소유예처분 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 등 3일 20시간
5일 과정 /10일 과정	학교 및 교육청 의뢰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검찰청 의뢰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 등 5일 35시간, 10일 70시간
1개월 과정	법원의 대안교육명령 처분자	전문교육, 체험교육, 소양교육 등 70시간, 140시간

〈표 4〉 학교폭력 유형별 처분 기준(예)

학교폭력 분류유형	구체적 사례	기존 학교 조치	가해자에 대한 처분	
			최소	최대
폭행/상해	① 상해(전치12주)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10일)	형사처분
	② 6개월간 29차례 폭행	가벼운 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2주)	학교장 통고처분 (보호처분 8호이상)
	③ 2년간 150여 차례 폭행	권고전학	형사처분	
	④ 일진의 집단 폭행 및 협박	가벼운 주의	형사처분	
	⑤ 집단 폭행 및 가혹행위	가벼운 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일)	형사처분
	⑥ 코뼈, 연골 부서짐(완치 6개월 및 재수술 필요)	교내봉사 3일	“	형사처분
금품갈취	⑦ 금품갈취 및 폭행(1년지속)	퇴학 (타지역 전학)	형사처분	
	⑧ 금품갈취 및 폭행(3년지속)	전학 명령	형사처분	
	⑨ 금품갈취 목적 협박 및 괴롭힘	무조치	특별교육이수처분 (5일)	특별교육이수처분 (2주)
강요 및 성추행	⑩ 성추행	가벼운 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10일)	학교장 통고처분 (보호처분 4호)
따돌림	⑪ 집단따돌림	가벼운 주의	특별교육이수처분 (5일)	특별교육이수처분 (10일)
정보 통신망 음란/폭력	⑫ 미니홈피를 통해 집단적으로 위협으로 인한 자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회봉사명령 (법원결정)	형사처분	
	⑬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한 자살	형사처분 (법원결정)	형사처분	

2. 처벌의 단기적 대응방안

청소년을 제재 혹은 처벌함에 있어 사회내 처우²⁷⁾, 중간처우, 시설내 처우²⁸⁾를 고려할 수 있는데, 현재 학교폭력을 위한 사회내 처우는 Wee센터, 일반대안학교 등 대표적 기관이며 시설 내 처우는 소년원²⁹⁾이다. 여기서 이 둘 사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처우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시설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 모두 균형을 이루며, 활성화 되어 있는 중간처우기관은 법무부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이다. 이 센터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빠른 기간 내 특별이수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이 이수교육 명령을 받은 학생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사회내 처우와 달리 공권력에 의해 유지됨으로써 학교폭력 교육생에 대해 확실한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사회내 처우보다 시설, 전문 인력, 예산, 운영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현재(2012년 6월) 10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검사, 법원에서 의뢰된 학생들에 대하여 대안교육, 법교육,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에 이용되는 교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등의 교육관을 비롯하여 모의법정, 장애체험실, 도예실 등의 체험관 뿐 아니라 연수관, 편의시설 등 교육을 위한 시설이 충분하다. 또한 청소년 상담, 임상심리, 약물상담 등의 전문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 미술치료사, 청소년 지도사, 금연지도사와 같은 청소년 전문가의 배치가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에서는 일반대안학교 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관이 공권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다른 사설기관 보다 월등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청소년 비행 대책의 중간처우기관으로 가장 탁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설 및 인력 확충을 통하여 역할을 강화시켜 보다 강력한 학교폭력 대응기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중간처우에서 보다 엄격성을 강조하면, 중간처우 형태의 구금처우를

27) 청소년을 일반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하면서 행동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준수사항을 과한다. 정기적인 통제를 통하여 미연에 비행을 방지하도록 생활을 지도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이 있다.

28)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처분 및 단기와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의미한다.

29)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받은 10세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하고,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① 교과교육, ② 직업능력 개발훈련, ③ 의료·재활교육 등을 통하여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제공자료)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처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간처우 혹은 중간제재 형식의 단기구금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Juvenile Court Work Program, 병영캠프(Boot Camp), 주말구금제도와 같은 프로그램이다. Juvenile Court Work Program은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소년원이나 소년 캠프에서 이루어지는데, 10주간 주말마다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며, 단순히 봉사활동이 아닌 강력한 활동으로 구금시설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병영캠프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에 크게 주목받았는데, 30-120일간 시설 내에서 군대식 규율, 육체훈련, 통제된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자에게 단기적인 충격을 줌으로써 미래의 범죄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주말구금제도는 소년원의 수용방식을 주중과 주말로 이원화 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주중에는 소년원에서 일정시간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귀가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이원화된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병영캠프와 주말구금제도는 구금의 충격을 경험하면서도 구금으로 인한 부장용을 최소화 하려는 절충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실상 학교폭력이 가정 및 학교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을 갖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역할은 형사사법체계의 몫이다. 또한 형사사법기관은 비행과 범죄에 대하여 처벌, 억제, 사회복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회 내에서 풀지 못한 문제들을 사법체계가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며, 형사사법체계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사회내 처우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사법기관이 확실한 제도적 준비를 통하여 보다 엄격하고, 강력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에서의 처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적절한 처벌이 신속하고 엄격하고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면, 그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사회통제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유미. (201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영길. (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책”.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제9회 교육정책 세미나 자료집」. 15-30.
- 기광도. (2004). “범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6(2):9-35.
- 김미영. (2007). “학교체계가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2):287-314.
- 김순혜. (2007).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논총」 27(2):67-85.
- 김영희·김운주·박경옥·이희숙·김창기. (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149-169.
- 김용석. (2004). “청소년 음주와 비행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 공통요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33-59.
- 김은경. (1997). “학교폭력과 폭력의 사회화”. 교육개발.
- 김재엽·최선희. (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181-204.
- 김준호. (1997). “학생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행청소년의 지도대책”. 한국범죄방지재단 정책세미나.
- 김준호. (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
- 김창균.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173-198.

- 김치영. (2002). “학교환경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 학교석사학위논문.
- 노성호. (2004).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1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 박영신·김의철. (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행동 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 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문제」 7(1):63-89.
- 박정선. (2004). “학교폭력의 일상화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심포지움」. 125-148.
- 배종대. (2008). “형사정책”. 「홍문사」.
- 송정아·김영희. (2001).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심리적·행동적 학교 적응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50.
- 신종순. (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기석. (1981). “한국청소년의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 「치안문제」. 32-33.
- 양만우. (1984). “청소년 범죄연구Ⅲ-청소년 범죄비행 암수분석”. 「전주교대논문집」. 20:35-52.
- 연진영. (1992). “아동 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동향보고서」.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성식. (2007). “약물사용과 처벌의 억제효과”.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263-281.
-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형사정책」. 20(1):187-206.
-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48.
- 이신옥. (2002).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복. (2009). “학교폭력의 예방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혁. (2006).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5:245-265.
- 이은주. (2000). “청소년 비행에 대한 자아개념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학연구」7(1):149-268.
- 이춘재·곽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책”. 「집문당」.
- 장덕희. (2007). “청소년 학교폭력의 중복특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6):69-97.
- 정규석. (2009).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교폭력 영향요인 비교”. 「사회과학연구」. 24(4):328-338.
- 조벽. (2012). “학교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3-16.
- 조철욱. (1991). “한국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연구”. 「경찰대치안논총」. 8:63-10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9).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최덕경·강기정. (2001).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 및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안성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복지연구」. (3)2:89-103.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95-111.
- 한상철. (2004). “청소년 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통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청소년폭력예방 사업평가와 통합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Beccaria, C. (1963). *On Crime and Punishments*. Indianapolis: Bobbs-Merrill.
- Bentham, J. (1970).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London: The Athlone Press.
- Bernard, T. J. (1992). *The Cycle of Juvenile Jus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Tittle, C.R., Birsik, Jr. R. & Arneklev. B.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Griffin, K. W., Botvin, G. I., Scheier, L. M., Diaz, T., and Miller, N. L.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 Behavior*. 14(2):174-184.
-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bbes, T. (1957). *Leviathan*. Oxford: Basil Blackwell.
- Kim, H. S., Min, B. K., and Kim, H. S. (1992). Correlation Between Delinquent and Their Character Pattern and Family Dynamics. *Ulsan Univ Med J*. 1(1):188-205.
- Klepper, S. & Nagin, D. (1989). Tax Compliance Perceptions of the Risks of Detection and Criminal Prosecution. *Law and Society Review*. 23:209-40.
- Oetting, E. R., Deffenbacher, J. L., and Donnermeyer, J. F. (1998). Primacy Socialization Theory. The Role Played by Personal Traits in the Etiology of Drug Use and Deviance II. *Subst Use Misuse*. 3(6):1337-1366.
- Loeber, R. and Loeber, S. M., (1986). Family Factors as Correlates and Predictors of Juvenile Conduct Problems and Delinquency.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7):29-149.
- Logan, C. (1972). General Deterrence Effects of Imprisonment. *Social Forces*. 51:64-73.

Straus, S. B., and Smith, C. A. (1991).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Antisocial Behavior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Delinquency Intervention. *Families in Society*, 80:169-181.

Tittle, C.R. (1969),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Social Problems* 16:409-23.

Wilson, J. Q. (1980). Parental Supervision: A Neglected Aspect of Delinquenc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0(3).

Brank, E. M. and Weisz, V. (2004). Paying for the crimes of their children: Public support of parent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 (5):465-475.

2. 기사

경향신문. 1997년 6월 29일 1면. “학교폭력 ‘일진회’ 공포”. 최정훈·이정구 기자.

노컷뉴스. 2012년 2월 12일. “전교조,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매우 실망스럽다”. 윤성호 기자.

동아일보. 1995년 12월 14일 1면. “학교폭력 9,068명 구속”.

동아일보. 2012년 1월 3일. “무서운 여중생들”. 차준호 기자.

동아일보. 2012년 4월 24일. “가해자 전학 보낸다고? 아직도 피해자만 눈물”.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2012년 5월 23일. “일진은 흥기협박 하는데... 학교는 ‘그냥 참고 다녀라’”. 김희균 기자.

서울신문. 2011년 12월 29일. “막가는 학교폭력... 2차피해에 노출된 아이들, ‘보복이 두려워요’ 폭력신고 꺼린다”. 김소라 기자

서울신문. 2012년 1월 27일. “‘권고전학’은 중학생 또 폭행”. 조한중 기자

서울신문. 2012년 2월 23일. “막장10대들 학교폭력 어디까지...‘성추행 가해자 전학 후 내딸 왕따 당해 자살’”. 황경근 기자.

서울신문. 2012년 2월 6일. “뇌병변 장애2급’명환이의 끝나지 않은 비극, ‘장애보다 무서운 폭력... 개학이 두려워요’”. 박건형·윤샘이나 기자

서울신문. 2012년 2월 8일. “7개월 폭행·성희롱-4차례 조치 요구 묵살 끝에...”. 김소라 기자

서울신문. 2012년 3월 16일. “일진들, 급우 부모에 ‘등에 칼꽂혀요’위협”. 임송학 기자

서울신문. 2012년 6월 5일. “‘학교폭력 알려질라’외부전문가 참여기피 그들만의 폭력대책”. 윤샘이나 기자.

세계일보. 2007년 3월 6일. “학교 명예훼손될라, 해결은 뒷전 ‘쉬쉬’”. 특별기획취재팀.

세계일보. 2011년 11월 25일. “왕따당한 아들에게 전학강요하고 돈까지 받은 교사 처벌 힘들다니...”. 서지희 기자

세계일보. 2011년 12월 30일. “‘건방지다’는이유로...여중서 후배집단 폭행”. 박종훈 기자.

세계일보. 2012년 1월 11일. “전학처벌 불복해도 대책없다니...”. 유재권 기자

제주뉴스. 2011년 11월 18일. “WEE센터, 학생상담 업무전념해야”. 김문기 기자.

중부일보. 2012년 6월 18일.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5배증가”. 이복진기자.

중앙일보. 2011년 12월 31일. “‘쉬쉬’해서는 학교폭력 못 막는다”. 홍권삼 기자.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2일. “‘쉬쉬’하고 마는 폭력대책자치위”. 진명선 기자.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12일. “은폐의 메커니즘/담임·가해학생 부모 ‘당할만하니 당했겠지’ 눈귀달아”. 진명선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보도자료. 2012년 4월 3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학교 이상없다’ 발언, 학교현장‘어이없다’”.

한국일보. 2011년 11월 3일. “집단폭행으로 등교공포 시달리는 초등학생은 ‘학교 무서워서 못가요...천국에나 빨리갔으면’”. 김혜영 기자.

session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 2 주제

학교폭력의
심리적 요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 발표 ❖

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1. 서론

지난 12월 이후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사건 발생으로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은 학령기 청소년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표 1에서 제시된 경찰청의 통계치를 보더라도 잠시 감소추세였던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학교폭력사건으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이미 이 만 명을 넘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6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던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던 학생 수보다 현저히 증가한 추세이다.³⁰⁾

〈표 1〉 학교폭력 가해자 검거인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21,710	25,301	24,825	25,175	21,957

이렇게 심각화의 일로를 걷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보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 집행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자살사건의 증가추세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괴롭힘 현상에는 그 어떠한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게 한다.

2010년 민간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총 3,560명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한 절반 이상(58%)의 학생들이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였음에도 모른 척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62%였다는³¹⁾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해당 부처가 수없이 많은 정책들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³²⁾ 학생들 자신이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필요가 있으며 또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같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결심을 갖

30)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수는 2001년 1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5년 5,653명이었다. 경찰서에 검거된 건수는 이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확보하지 못하였다.

31) http://home.ejikim.com/board/school_view.asp?b_idx=8234&code=J002

32) 방관자 비율 : '07년 35% → '08년 53% → '09년 56% → '10년 62%(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지 않고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타율적 대안은 결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냉담한 태도에는 기성세대의 원인 제공이 없지 않았다. 신고를 해도 학교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해자로부터 보복만을 당하게 된다거나 피해를 가한 가해자들에게는 별다른 법적 제재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신고를 한 피해자만 고통을 겪었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현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냉담하게 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원인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최근에 제시된 학교폭력 대책이 어느 정도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비판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정책방향에 중심을 두고자 하였다.

2.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안의 변화

2.1.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기능과 사법 환경의 변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 법률 제20조에 기재된 사항에 따르자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신고사실은 학교의 장에게 반드시 통보되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신고 된 사건의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당사자 간 분쟁조정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 거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근거를 남겨 차후 학생지도의 자료로 삼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피해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우선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법률 제14조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비하였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 등 사법기관은 역시 학교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의 경우 신고의 창구를 통합하여 '117'로 단

일화하고 이메일 및 방문조사 등으로 사건조사절차에 있어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한다거나 경찰서 별로 '학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단위학교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학교폭력의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183배 증가하는 등 피해신고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학생 검거 인원도 전년도보다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³⁾ 경찰청은 또한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미한 행위를 한 가해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선도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권고한다거나 피해학생들에 대하여서 민간인 멘토의 지도를 받도록 연계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검찰 역시도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선도대책을 내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법무부 산하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하여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11년도 기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들은 법원 대 검찰 대 학교의 비율이 7.1 : 1.5 : 1.5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2012년도 2월 이후)에는 학교로부터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직접 이첩되는 사건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⁴⁾

법원은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으로서 통고제도를 활용하기를 제안하였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학교장은 범죄소년 뿐 아니라 우범소년까지도 법원 소년부에 직접 통고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처분을 명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비행력의 초기 단계에 법원이 신속히 개입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은 소년조사관 제도와 민간전문가의 상담제도, 화해권고제도 등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법원의 통고제도를 거친 소년사건의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4건이던 것이 2011년에는 5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이 같이 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교육 및 사법기관의 개입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단위학교들과 경찰의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는 가시적인 성과, 즉 이첩된 사건 수와 상담 등 선도처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배현(2012).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방안. 학교폭력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 토론회. 경기대학교·경기도.

34) 최현(2012). 학교폭력 예방/재발방지를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역할강화. 학교폭력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 토론회. 경기대학교·경기도.

35) 법원행정처(2012). 소년통고실무: 개요와 사례.

2.2. 외국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의 내용

우리나라의 이 같은 변화와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 정부는 집단 괴롭힘과 같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좀 더 엄격한 처벌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학교폭력 행위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말리지 않은 방관자들도 함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Michigan Korea Times). 이 같은 조치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형사적으로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초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시행 할 뿐 아니라 교육청 산하의 대안학교들에서도 교과교육 이외에 인성개발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물들은 이렇게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과 중재 제도들이 왕따 현상을 50%까지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Nansel, Overpeck, Pilla, Ruan, Simons-Morton, & Scheidt, 2001).

1999년 조지아주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몬타나주를 제외한 미국의 49개 주에서 학교폭력 및 왕따 방지법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다(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예를 들어 17개 주는 왕따 사건을 목격한 교사는 의무적으로 사건을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3개 주는 학생들 역시 이러한 신고의 의무를 가진다. 11개의 주는 익명 보고를 권고하고 있고, 9개 주는 학교 관리자가 경우에 따라서 왕따 사건을 경찰에 꼭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또한, 14개의 주가 학교 내에 상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관련한 적절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Sacco, Silbaugh, Corredor, Casey, & Doherty, 2012).

표 2에는 미국 뿐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현재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학교폭력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몰타, 스웨덴, 그리고 영국인데, 핀란드의 경우, 1999년 제정된 핀란드 교육 제정법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령은 모든 학교에 적용이 되는데, 각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명확한 규율을 가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시 즉각적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직무를 전적으로 교장에게 일임하여 교장이 재량껏 학교폭력 방지 프로그램이나 대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왕따 방지법을 제정한 아일랜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교 근무자를 포함한 학생과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인지시킴으로써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을 법률로서 정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교사를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제만은 아니며 미국 뿐 아니라 여러 유럽국가에서도 효과적인 예방 및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을 법률로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Ananiadou & Smith, 2002).

〈표 2〉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내용

국가	법령	학교폭력 정의	교육자료	교육내용
미국	몬타나주를 제외한 모든 주	bullying	o	학교 구성원 대상 프로그램 및 대안학교(charter school) 운영
오스트리아	x		o	교사를 위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
벨기에	French community only	violence	o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덴마크	x		o	Teaching materials
핀란드	o	bullying	o	
프랑스	o	Both	o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독일	In some community	violence	In some community	
그리스	x		o	교사와 학생들에게 광고 캠페인
아일랜드	x		o	
아일랜드	o	both		
이탈리아	x		x	
룩셈부르크	o	violence	o	
몰타	o	bullying	o	Teaching materials
네델란드	x		x	
노르웨이	x		o	Teaching materials
포르투갈	x		x	
스페인	x		x	
스웨덴	o	bullying	x	
스위스	x		In some	
영국	o	bullying	o	교사들에게 정책과 증재에 대한 교육

3.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으로서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국내에서 최근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비된 많은 제도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처분 내용은 엄중한 격리수용보다는 다양한 선도대책들이다. 교육청 산하의 위센터나 단위학교의 위클래스, 그리고 최근 학교에서 계약직 형태로 고용한 심리사, 상담사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주로 집행하고 있는 선도방안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담 및 봉사를 집행하는 것 이외에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심리상담을 집행하는 일은 국내외 학교 혹은 사법기관, 나아가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가장 지배적인 대응방안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심리적 원인기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외국의 선도프로그램은 무엇을 상담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1. 학교장면에서의 집단역학 기제: 대인관계적 측면

청소년 폭력성의 원인은 연령에 따라 다양하며 그 유형 또한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학교폭력이라 부르는 청소년 폭력 행위는 학교라는 사회 내에서 존재하는 권력의 차이(power differential)에서 오는 폭력, 즉 힘의 과시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Juvonen & Graham, 2001)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학교폭력의 속성을 “Double I-R”로 표현하는데, 즉 학교폭력은 불균형적인 권력(Imbalance of power), 의도적 행위(Intentional acts), 그리고 지속성(Repeated over time)을 가진 폭력적 행위로서, 힘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인 폭력 행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패턴을 지닌다(Horne, Stoddard, & Bell, 2007; Newman-Carlson & Horne, 2004; Olweus, 1994).

이때 학교폭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권력(힘, power)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폭력행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들 보다 항상 권력(힘)의 우위에 선다. 이러한 권력(힘)은 신체 크기나 물리적 힘의 우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우위(social advantage)에서 발생한다(Craig & Pepler, 2007). 사회적 우위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내에서 발생하는 우세적인 사회적 역할의 부여, 또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우세적인 사회적 지위, 동조 집단의 크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두 번째 특징은 지속적이란 점이다. 반복적인 학교폭력은 학생들 간의 권력(힘)의 관계를 공고히 만들어주며, 이러한 관계가 반복됨으로써 힘을 가진 가해자는 더 큰 권력(힘)을 가지게 되고 반면에 피해자는 힘을 더 잃게 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파괴적 관계의 문제(destructive relationship problem)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Craig & Pepler, 2007).

여기서 꼭 고려해 보아야 하는 점은 가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과 파괴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 관계를 통해 이익과 보상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들은 폭력을 통해 타인(피해자)에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주고 그들을 통제함으로써 권력(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물질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 내에서의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일탈적인 자존감을 고취하게 된다. 한편으로 피해자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으로 더욱 힘을 잃게 되어 또래 가해자들의 폭력과 학대를 방어할 힘조차 잃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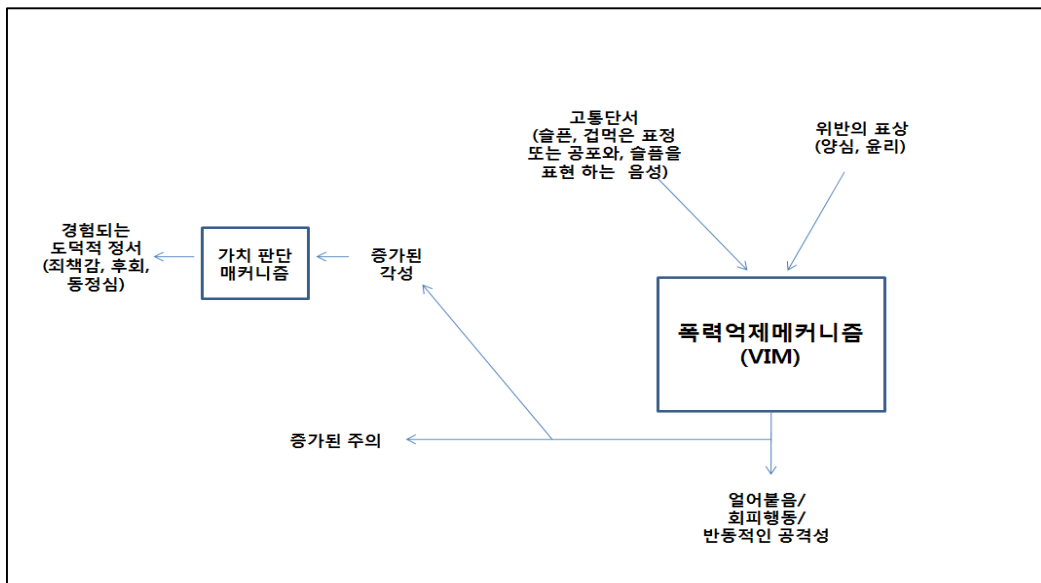
3.2.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정서적인 특성: 공감의 부재

학교폭력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 공격성과 공감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연구(Eisenberg & Fabes, 1998; Eisenberg & Miller, 1987; Howard & Barnett, 1981; Olweus, 1993, 1994, 2005, Redmond, 1989)는 수없이 많다. 이때 공감이란 사건을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Dikmen, 1991). 최근 Jolliffe와 Farrington(2004)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낮은 공감 능력과 반사회적 행위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특히 이런 관계성은 청소년기 집단에서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사이코패스(psychopaths)들에게 있어 공감능력이 부재하다는 사실 역시 많은 연구들(Hare, 1991, 1996)에서 지적된 바 있다. Blair(1995)는 사이코패스들이 유독 슬픔이나 고통과 관련된 정서 정보를 처리하는데 문제를 보인다고 하면서 정서인식능력 상의 손상이 폭력억제메커니즘(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VIM)에 문제를 일으키기에 사이코패스적 문제를 지닌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더욱 폭력적이 됨을 지적하였다(그림 1 참조). 이 이론의 핵심 개념인 VIM

은 스트레스단서에 의해 변연계 영역(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대상회)에서 발견되는 생리학적 시스템으로서, 스트레스 단서를 관찰한 유기체로 하여금 얼어붙음, 회피행동, 반동적 공격성과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을 불러일으키거나 증가된 각성과 함께 가치판단과정을 통해 후회나 동정심과 같은 도덕적 정서반응을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타인의 고통과 슬픔 표정이라는 스트레스단서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때야 비로소 사회에 의해 학습된 죄책감과 동정심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나친 가혹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격적 문제를 지닌 상습 폭력범들의 경우에는 변연계 부위의 발달적 미성숙으로 인해 이러한 스트레스 단서를 적절하게 인지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이는 곧 VIM의 폭력제지 기능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결국 타인에 대한 과도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 폭력 억제 메커니즘(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모형



3.3.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환경적 접근: 사회화 과정의 특성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경우, 일탈모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일탈자가 되어 가고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일탈적 행위유형을 학습하게 된다. 간단히 말해, 범죄는 학습을 통해 배운다(Barkan, 2006)는 것이다. 학습은 주로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인간은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일상적인 환경과의 관

계에서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것을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행동을 습득한다(Shoemaker, 2005). 차별적 접촉이론(Sutherland, 1939)에서는 또한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 규범과 태도 등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 또는 비행을 하는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으로서 비행을 학습해간다고 가정한다.

특히 요즘은 가족, 친구 등의 일차집단뿐 아니라 이차집단인 매스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을 통해 차별적 접촉이 진행된다. 청소년들은 무엇인가에 금방 마음이 동요되고 쉽게 동조하는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래집단이 좋다고 하면 자신의 주관과는 좀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옳다고 쉽게 결정을 짓게 된다(Burgess & Akers, 1966). 따라서 청소년 시절 이러한 심신의 미숙함과 판단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적절한 롤 모델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인과 사회 간의 연대가 강할수록 비행 동기를 통제할 수 있고(Hirschi, 1969), 특히 인습적 활동에 대한 교육과 같은 사회의 합법적인 목적에 대한 시간의 투자(Commitment), 사회 인습적 활동에의 직접적인 참여(Involvement), 인습적 태도에 대한 신념(Belief) 등을 심어주는 것이 비행의 억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3.4. 학교폭력 원인론에 근거한 예방 프로그램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교육청 뿐 아니라 법무부 소년과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발생 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단위학교와 사법기관 특히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인지적 행동치료

핀란드에서 애초에 개발되어 현재는 미국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KiVa Antibullying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그에 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1학년, 4학년, 그리고 7학년 학생들에게 시행함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피해자와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의 적절한 지도로 다양한 토론이

나 group work 또는 role playing 게임에 참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단편 영상을 봄으로써,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학교 측에서는 이 프로그램 세션들을 수업으로 인정하여, 각 학년에 맞는 적절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학년 대상인 경우, 학교폭력 방지 컴퓨터 게임을 이용하여 시각적 자극을 이용한 교육을, 고학년인 경우에는 도서관이나 영화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에 중점을 둔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부착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어떠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시 선생님의 중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교육 내용들을 학생들의 부모들과도 활발히 공유하여, 각 세션에 대한 설명들이나 사용되었던 중요 자료들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부모들도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K rn, Marinus, Todd, Elisa, Anne, & Christina, 2011). KiVa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서는 Kiva를 실시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의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피해자 설문조사에서도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보고(K rn et. al., 2011)가 있다.

(2) 정서중심 인성개발 프로그램

학교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들의 문제 중 언제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하는 구인은 바로 공감능력이다. 이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에서도 주요 특성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이에 착안하여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에서 개발하여 현재 시범 시행 중에 있는 The RULER Approach 사회적 정서 학습에 프로그램의 근간을 두고 있다.

The RULER Approach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정서의 활용능력, 일명 정서적 해독력(emotional literacy)을 가르친다. 이들 다섯 가지 정서해독력 중 (1) Recognizing(인식)은 표정, 목소리, 신체 등에 나타나는 정서 단서를 인식하는 기술; (2) Understanding(이해)은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기술; (3) Labeling(명명)은 풍부한 단어를 사용하여 정서를 최대한으로 표현하는 기술; (4) Expressing(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기술; (5)

Regulating(조절)은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서를 사용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기술은 학교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적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교육재료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3) 경찰이 중심이 되는 친사회화 프로그램

영미법 국가들의 경우 소년범들은 이미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역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비행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의 준법정신이나 규범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미국의 뉴욕, 로체스터에서 시행되었던 Teens on Patrol 프로그램(TOP)은 경찰단계의 전환(diversion)정책³⁶⁾ 중 지역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 1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수영장, 공원, 놀이동산 등에서 고용해서 순찰을 시키고, 다른 청소년들의 의심 가는 행동이나 비행행동을 경찰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써 무전기를 들고 다니며, 제복 경찰들과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범죄통제의 역할을 경험하고 경찰과 교류함으로써 좋은 것을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이 도시에서의 청소년 비행 발생률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Runyan, Shanahan, Hoekstra, Taylor, LaChasse, Duffy, Krueger, Russell, Brumm, & Lipson, 1982). 또한, 네바다의 Reno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Community Action Team(CAT)이 창설되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빈곤한 계층의 자녀와 부모를 일 년에 한번 씩 피크닉에 데려가는 ‘COPS+KIDS’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Reno 경찰서에서는 경찰관들이 청소년 권투 팀과 레슬링 팀의 코치를 할 뿐 아니라, 비행 청소년들은 데리고 주기적으로 하이킹, 도보여행, 혹은 캠핑을 가는 프로그램인 Police Athletic League(PAL)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경찰서에서는 COPY (Community Opportunities Program for Youth)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알코올과 약물문제, 그리고 갱 집단에 속해있는 청소년들이 비 위협적인 주위환경 속

36) 국내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전환 결정은 검찰의 권한이다. 영미법 국가 뿐 아니라 일본 등 대륙법 국가 중 일부에서는 범죄소년에 대한 경찰단계에서의 전환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에서 주기적으로 경찰관과 다른 청소년들, 그리고 부모들을 만나는 것이다. 경찰관은 비행 청소년과 비행식적으로 잡담하면서, 준법정신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 전통적인 윤리문제 등을 강조한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인터뷰와 리서치를 통해 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부모, 경찰관 모두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다(Thurman et al., 1993). 이렇듯 청소년들이 사회의 준법적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경찰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경찰을 통해 사회적 준법정신을 학습한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폭력에의 대응방안으로서의 현행 학교상담제도의 문제점

문제는 과연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담제도들이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느냐하는 문제인데, 최근 교육청 산하 위프로젝트를 통해 기 배치된 상담인력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집행방식으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³⁷⁾ 이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기준으로 산출한 전문상담교사의 숫자는 해당 교육청 소속 11317개교에 단 937명만 배치되어 있어 단위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수요의 2.7%만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실은 다른 교육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상담교사가 상담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는 또다른 문제 중의 하나는 이들 현재 고용된 인력이 모두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현장에서 상담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담장면에서 내밀한 자신만의 문제를 털어놓기 위해서는 라포의 형성과 장기간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되는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근무하기보다는 교육청 산하 위센터라는 곳에 근무하는 상담교사로서는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존하는 학교상담제도의 또다른 문제 중 하나는 폭발하는 상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거의 모든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계약직의 형태로 상담사들을 급박하게 선발하였다는 점이다.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다보니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으로 그러다보니 상담경험이나 학력 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보다는 검증도 되

37)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539399.html>

지 않은 각종 민간 자격증을 가진 자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하였다. 학교폭력 상담은 단순한 진로지도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그들의 보호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와 사법기관 사이의 중재까지도 담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나아가 자치위원회의 주요 일원이 되어야 하는 구성원을 단 몇 개월 간의 계약직으로 담당케 한다는 일은 무책임하다고까지 판단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더 양질의 인력을 어떻게든 확보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 생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교육청 등 단위 교육청에서 최근 발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을 살펴보면 현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일단 자치위원회를 거쳐 대부분 지자체 산하의 관련기관으로 이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상담지원센터나 민간 상담소, 정신보건센터나, 사회복지관 등 학교에서 일으킨 학생들의 문제를 대부분 학교 밖 기관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친다고 여기는 처리방침은 오히려 학교의 자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경우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는 정의실현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채, 가해자만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것으로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절차는 자치위원회라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켰기에 문제가 안된다는 학교의 안일한 태도, 즉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꼭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학교현장에 있는 실무자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기를 거친 일반인들이라면 누구나 오늘날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는 인성교육의 부재에 기인한 것임을 너무나 잘 이해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학업성취도에 따라 모든 것이 승자독식인 환경 등 무한경쟁에 내몰려 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교현장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희귀한 사건인지 짐작할 것이다. 경상북도의 한 교육감이 지적한 대로 사정이 이러하다보니³⁸⁾,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학교의 시각은 너무나 구태의연하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에 보고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응방안의 성공 사례는 이 같은 구태의연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표 3). 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인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보고는 현재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가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

38)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0783.html>

인 생각을 잠시 갖게 한다. 하지만 이 같은 활동이 결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한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나아가 이런 성공사례가 모든 학생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현장 실무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추정하게 된다.³⁹⁾

〈표 3〉 단위학교에서 보고한 학교폭력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사례

학교명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분
충북 내수중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서울 서운중학교	방과후 구기대회
울산 태화중학교	방과후 음악활동
대전 신탄중양중학교	오케스트라 활동과 봉사활동

학교나 사법기관에서 필요한 상담기능이 효과성을 발휘하는 방법은 양질의 인력이 안정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이 활용하는 상담기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은 실증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였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라면 누구라도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 같은 검증된 상담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교육하기 위한 워크숍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가들 역시 이 같은 실증적으로 검증된 상담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논의 및 제언

표 4에는 실제로 특정 단위학교에서 3월부터 6월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고용된 상담교사가 중심이 되어 처리한 16건의 학교폭력 사건의 처분 결과는 가해자를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처리내용을 보자면 자치위원회에

39) 이상범(2012). 학교폭력 예방 및 가피해학생 교육치료 지원. 학교폭력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폭력대책국제학술세미나 토론문. 경기대학교•경기도.

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으며, 3월에 고용된 상담교사가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에 교실 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칼로 찌르는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장의 문제를 토대로 보자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대책들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추정하게 된다. 불안정한 상담교사의 지위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치위원회의 역량, 그리고 심각한 상해사건이나 강력사건이 아니고서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학교의 분위기 등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과연 관계 당국이 알고나 있는 것인지 의심을 금할 수 없다.

〈표 4〉 **고등학교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결과

	가해자		피해자		징계사유	내용	처분	비고
3월	1학년	김**	1학년	신**	교내 단순폭력	코뼈 골절, 치료비 50만원, 보호자 합의	서면사과	교육청보고
4월	2학년	박**	2학년	전**	교내 단순폭력	뺨 때리고 주먹과 발로 참	서면사과	교육청보고
	2학년	정**	2학년	최**	교내 단순폭력	발로 참	서면사과	교육청보고
	2학년	곽**	1학년	김**	폭행	점심시간에 새치기해서 팔꿈치로 찍음, 둘 다 인문계고 부적응 학생, 스스로 전학 감	특별교육 10일	징계 전 전학
5월	1학년	고**	1학년	신**	폭행	생일빵 한다고 여러 명이 장난치다가 골반 뼈에 금이 감, 보호자 합의	사회봉사 5일	교내지도
	1학년	백**					사회봉사 5일	교내지도
	2학년	이**	2학년	김**	사이버 언어폭력	김** 학생을 인터넷 게시판에 무개념녀로 음해, 처음에는 김**와 지**이 피해자라고 접수되어서 진상을 조사해보니 알고 보니 가해자였음. 음해 사실이 밝혀지자 또래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심한 비난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신고한 것임. 결국 스스로 전학을 감	특별교육 5일	**사회복지관
	2학년	김**	2학년				특별교육 5일	**사회복지관
	2학년	김**	2학년				사회봉사 5일	**지역아동센터
	2학년	윤**	2학년				사회봉사 5일	**지역아동센터
	2학년	지**	2학년				사회봉사 5일	**청소년교실
	2학년	이**	2학년	한**	폭행	턱뼈 골절, 전치8주, 가해자 형편이 어려워 서 전세금 빼서 치료비 천만 원과 합의금 천만 원 마련	특별교육 5일	**청소년센터
	2학년	신**	2학년	정**	교내 단순폭력	머리를 치고 손으로 밀침	사회봉사 5일	교내지도
2학년	류**	2학년	채**	교내 단순폭력	뺨 때리고 코를 가격해 코피 남	특별교육 5일	**청소년센터	
6월	2학년	박**	2학년	정**	협박	죽이겠다고 협박	특별교육 5일	**청소년센터
	3학년	이**	3학년	이**	상해	점심시간에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붙음. 화가 난 이용관이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칼을 들고 와서 이**를 찌름. 다행히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음. 현재 이**은 경찰서에 있고 이**는 입원해 있음	구속	경찰서

본 논문의 목표 역시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 대응책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밖에서 법률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어른들이 상담교사의 자격요건을 갖고 문제 삼을 때,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웬만해서는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학교와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낯설어 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훈육부터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는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다. 대구에서만 약 7개월 동안 8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이들의 유서는 학교폭력이 얼마나 은밀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들은 계속 헛돌아가는 느낌이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한 곳에 차분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볼 때이다.

참고문헌

- 한국교육개발원 (2007).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Beane, A. L. (1999). *The bully free classroom*. Minneapolis: Free Spirit Publishing Co.
- Blair, R. J. R. (1995). 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 to morality: Investigating the psychopath. *Cognition*, 57, 1-29.
- Blumstein, A., Cohen, J., Roth, J., & Visher, C. (Eds.) (1986).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Bynum, E., Jack D. E., William E. T. (2002). *Juvenile Delinquency: A sociological approach*. Boston: A. Pearson Education Company.
- Craig, W. & Pepler, D. (2007). Understanding bullying: From research to practice. *Canadian Psychology*, 48, 86-93.
- Davis, M. H. (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 Dietsch, B. J., Diaz, M., Frey, K. S., & Constantine, N. (2000). *Beliefs and Behaviors Survey*. Los Alamitos, CA: WestEd.
- D kmen,. (1991). Measurement of empathy with new model and measurement with psikodrama. *Journal of Faculty of Educational Sciences*, 21, 155-190.
- Edstrom, L. V., Bruschi, C. J., & MacKenzie, E. P. (2004). *The Student Experience Survey* (Tech. Rep. 3.1). Seattle, WA: Committee for Children.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 91-119.
- Eisenberg, N., & Fabes, F. (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01–778). New York: Wiley.
- Erdley, C. A., & Asher, S. R. (1998). Linkages between children's beliefs about the legitimacy of aggression and their behavior. *Social Development, 7*, 321–339.
- Evers, K. E., James O. P., Deborah V. M., Janet L. J., & Janice M. P. (2007). Transtheoretical-based bullying prevention effectiveness trials in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49*, 397–414.
- Fan, Y., & Han, S. (2008). Temporal dynamic of neural mechanisms involved in empathy for pain: An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study. *Neuropsychologia, 46*, 160–173.
- Farrington, D. P. (1987). Predicting individual crime rates. In D. M. Gottfredson & M. Tonry (Eds.), *Prediction and classification* (Vol. 10).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rey, K. S., Miriam K. H., Jennie L. S., Leihua Van Schoiack-Edstrom, Elizabeth P. M., & Carole J. B. (2005). Reducing playground bullying and supporting beliefs: An experimental trial of the Steps to Respect® Program. *Developmental Psychology, 41*, 479–491.
- Flay, B. R., & Carol G. A. (2003). Long-term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7*, 6–21.
- Flay, B. R., Carol G. A., & Nicole V. O. (2001). Effects of the Positive Action program on achievement and discipline: Two matched-control comparisons. *Prevention Science, 2*, 71–90.
-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Tot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Systems.
- Hare, R. D. (1996). Psychopathy: A clinical construct whose time has co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3*, 25–54.

- Hirschi, T., & Gottfredson, M. (1983).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rne, A. M., Stoddard, J. L. & Bell, C. D. (2007). Group approaches to reducing aggression and bullying in school. *Group Dynamic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1*, 262–271.
- Howard, J. A., & Barnett, M. A. (1981). Arousal of empathy and subsequent generosity in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8*, 307–318.
- Jolliffe, D. & Farrow,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ve Violent Behavior, 9*, 441–476.
- Juvonen, J., & Graham, S. (Eds.). (2001).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New York: Guilford Press.
- Kern, A., Marinus V., Todd D. L., Elisa P., Anne K., & Christina S. (2011). A large-scale evaluation of the KiVa antibullying program: Grades 4–6. *Child Development, 82*, 311–330
- Newman-Carlson, D. A., & Horne, A. M. (2004). Bully Busters: A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for reducing bully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259–268.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2005). A useful evaluation design, and effects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Psychology, Crime & Law, 11*, 380–402.

- Prochaska, J. O., Kerry E. E., Janice, M. P., Deborah V. M., & Janet L. J. (2007). Efficacy and effectiveness trials: Examples from smoking cessation and bullying preventio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170–178.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ering) in human relation. *Human Relations, 42*, 324–344.
- Runyan, H., Shanahan, M. G., Hoekstra, J., Taylor, M. B., LaChasse, S., Duffy, M., Krueger, W. A., Russell, R. P., Brumm, S. H., & Lipson, K. (1982). Volunteers in policing – Law enforcement exploring, *Police Chief, 49*, 22–46.
- Slaby, R. G., & Guer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I.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session 1

학교폭력의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제 3 주제

학교폭력의
성별 차이와
정책적 대응방안

❖ 발표 ❖

장미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들어가며

가. 왜 지금 학교폭력이 문제인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올해부터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에만 맡겨두지 말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의 감소를 위한 연구가 과거 대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2월 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는 등 학교폭력을 줄어나갈 수 있는 대응책이 다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⁴⁰⁾

실제로 학교폭력의 범위는 포괄적이어서 공간적으로 학교내부 뿐만이 아니라 학생간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폭력의 특성도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폭행, 상해, 협박, 따돌림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음란정보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시킬 수 있다. 청소년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는 청소년 문제이기도 하다. 모든 형태의 폭력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특히 학교폭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첫째, 청소년기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인의 역할을 학습하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생애과정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충족시키는 규칙과 규범을 학습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자아와 인성을 형성하거나 변화시켜 가게 된다.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개인의 미래 삶과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폭력의 경험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기의 성폭력피해가 성인기에도 다시 반복되어 경험되는 폭력피해의 재희생화(Revictimiza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한 번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미쳐서 추가적인 피해에도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Messman, Moore & Long, 2003).

최근 학교폭력의 중요한 양상은 1)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보이고 있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이미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3)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금품을 갈취하거나(46%),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34.9%)(2012. 학교폭력종합대책). 4)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 특히 또래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중요하게 되는 가치를 습득하게 되어서 또래집단의 문화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입시준비로 학교나 학원과 같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부모를 포함한 다른 가족구성원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다. 입시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압박으로 인해 교사 개개인이 학생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나 관심은 제한된 반면에 자신들끼리의 결속감이 강한 또래집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압박감은 훨씬 증가하게 된다. 많은 폭력피해 학생들이 금품갈취나 심부름과 같은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가 또래집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피해와 가해의 어떠한 형태로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폭력의 방지와 감소는 미래의 한국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피해와 가해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남성과 여성이 겪고 있는 폭력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성중립적(gender-neutral)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정해숙외, 2010).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나가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폭력경험의 차이를 반영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기존연구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미시적인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에서 가족적 배경, 학교환경, 지역사회의 특성과 같이 여러 가지 것 등이 지목되었다.

1) 청소년 개인의 우울감과 같은 정서적 요인, 2)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 부모의 실질적인 학대, 자녀에 대한 낮은 부모의 관여,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소득, 가족기능의 저하를 포함하는 가족적인 요인, 3) 또래집단에 의해 따돌림을 당하는지, 혹은 폭력의 가해자집단과의 교우관계의 요인, 4)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지, 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를 포함하는 학교의 요인, 5) 지역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지의 여부,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잦은 이사와 소원한 주민들간의 관계같은 지역사회의 특성도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Williams 외, 2007). 이처럼 학교폭력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폭력 피해의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과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미시적 체계(micro-system), 각 단계의 교육체계와 폭력피해자와 가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신건강체계를 포함하는 의료체계, 이를 포함하는 중범위적 체계(meso-system), 폭력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인 대응책, 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까지 포함하는 거시적 체계(macro-system)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재조명해야할 시점이다.

위의 요인들과 더불어 한국사회 만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1) 대학입시와 성적만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의 풍토 속에서 지나친 경쟁속에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의 증가도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경쟁적인 교육풍토 속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은 좁은 범위의 또래집단을 넘어서 나와 의견이나 견해가 다른 사람과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특히 성적 제일주의적 가치관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삶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이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 다른 삶의 방식과 견해에 대한 존중,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때로는 양보할 줄 아는 유연한 태도, 소수의 견해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 등 우리가 삶에서 견지해야 할 많은 가치들을 미처 배울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들은 원하는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다.

2) 연이은 피해학생의 자살이후 표면상 학교폭력의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이나, 폭력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간에 생겨나는 갈

등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가족이기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나 여전히 가족과 무관한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지니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한국사회의 학부모들은 그것을 범죄로 보기보다는 한창 성장 중인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애써 과소평가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많은 학교폭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율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이나 약자에 대해서 집단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폭력에 길들여진 군사문화가 학교폭력의 형태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작 피해당자사자인 청소년들 스스로가 느끼는 폭력의 위협은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목격해도 직접 개입하기를 꺼리는 풍토가 학생들 사이에 대한 폭력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한 자녀 가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형제, 자매나 부모와 같은 다른 가족구성원의 돌봄없이 홀로 방치된 채 지내고 있다는 점도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세대들과는 달리 형제도 많지 않고 친인척간의 유대관계도 엷어진 상황에서 많은 시간을 오직 공부에 할애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소수의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자신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소속감은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한 또래집단의 따돌림으로 인한 소속감의 결여가 주는 심리적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유대관계가 엷어진 청소년들에게 친구들에게조차 소외되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4) 장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관계를 지속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통신수단이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사회는 세계 제 1위의 인터넷 보급율, 국가별 닷컴 도메인 등록순위 세계 1위, 사이버 주식거래 순위 세계 1위, 인터넷상 음악파일 다운순위 세계 1위의 국가이다. 이처럼 급속하게 정보화가 진전된 이유는 한국이 중앙집중화, 도시화, 아파트 중심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어 네트워크를 깔기에 적합한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자기 드러내기를 꺼리고 익명성을 선호하는 유교주의적 문화에 인터넷이 출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보화시대에 태어나고 성장한 지금의 청소년들은 누구보다도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이다. 특히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폭력의 수단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대면적 접촉없이도 하루 중 어느 시간대이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통제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도 지속되는 폭력과 감시는 피해학생들에게는 아무 데도 폭력으로부터는 안전한 시간과 공간은 없다는 좌절감을 안겨 주게 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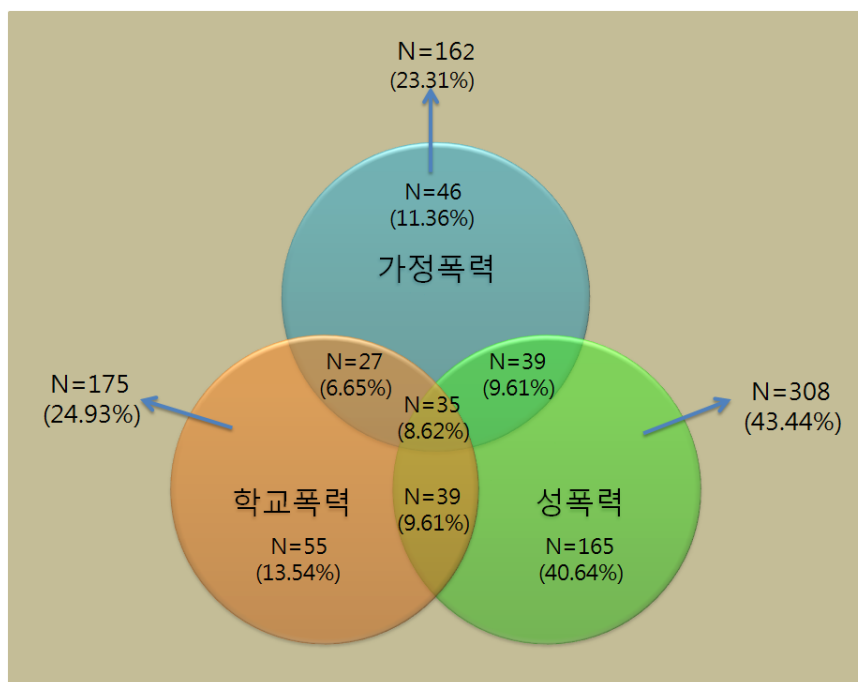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다르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왔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경험은 성폭력, 성학대가 동반된 가정폭력이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청소년에 비해 가족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청소년들의 비행은 친구와 학교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지만, 여성청소년들은 친구와 가정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다(김준호·김은경, 1995). 부모의 감독, 부모에 대한 애착, 가부장적 양육태도, 이중적 성규범,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이런 요인들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김준호·김은경, 1995). 이는 성역할 정체성이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여성청소년은 가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성별에 따라 폭력행위의 결과 차이로 이어지는데, 여학생들에게 있어 성적인 폭력은 임신과 출산, 낙태와 같은 신체적인 후유증을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성적인 폭력의 후유증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가출과 또 다른 성적인 피해나 임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험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8,9학년의 학생들중 비성적인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전체 학생의 25%인 반면에(Meyer & Stein, 2004) LA의 공립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학생의 10%, 여학생의 17%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보고되고 있다(O'Keefe & Treister, 1998). 한국의 경우를 보면, 2011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중 한 가지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청소년 집단의 경우 24.69%로 나타났다으며 가해청소년 집단에서는 41.81%로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두 가지 유형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청소년에서는 약 5.91%가 나타난데 반해 가해청소년 집단에서는 16.38%의 약 3배 정도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폭력피해를 경험한 고위험군의 청소년은 전체청소년 집단에서는 1.23%에 그쳤던 반면, 가해청소년 집단에서는 5.41%로 약 3~4배 정도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가해청소년 집단은 일반청소년 집단에 비해 폭력피해를 더 중첩적으로 경험하였을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가해청소년이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폭력피해의 중첩경험은 특히 남성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이 더 많은 유형의 피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별차이는 가해청소년 집단과 전체청소년 집단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가해청소년과 전체청소년 모두 “가정폭력-학교폭력”을 중첩하고 있을 경우보다는 “학교폭력-성폭력”, “가정폭력-성폭력”을 중첩하고 있을 경우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성폭력이 피해청소년들에게 여타 폭력피해의 경험들을 중첩하는데 중요한 통로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림 1〉 폭력유형별 피해경험의 중첩: 가해청소년



주 1) 백분율: 가해청소년 중 해당(%)

주 2) 가해청소년: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해 중 하나 이상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

주 3) 제시된 그림 중 원의 전체 N수를 합한 값이 해당 폭력유형에서 피해청소년의 전체 N수와 상이한 이유는 결측치로 인한 것임. 예시로, 가정폭력의 피해경험은 응답하였으나 다른 폭력유형군에 대해 무응답을 하였을 경우 중첩경험에서는 결측값이 되어 관찰치에 포함되지 않음

여성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어린 시절 성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 및 성폭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성매매 청소년에게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미국연구에 의하면 성매매청소년 대다수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나 오빠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폭력으로 부터의 탈출이 가출로 나타난다(Chesney-Lind and Sheldon, 1998). 성적 학대는 남자청소년 비행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자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춘화·윤옥경, 2003).

가출한 여성청소년은 가정에서의 학대와 심각한 수준의 가족 간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어머니로 부터의 양육이나 보호를 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의붓아버지, 어머니의 동거남에 의해서 성폭력을 당한다.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아도 어머니가 지켜주지 못하기도 한다(민가영 2009, 박지현, 2006; 변혜정 외, 2006). 이들에게 가정은 폭력적인 장소이기에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한다.

미국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 중 가족적인 이유로 학교를 중단하는 여성청소년의 비율이 남성청소년에 비해 7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족내 돌봄 노동에 대한 기대가 이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한다(OJJDP and Girls, Inc., 1996; 이춘화·윤옥경, 2003 재인용). 여성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는 빈도는 남성청소년보다 2배 높고, 스트레스 경험 및 자살 시도도 남성 비행청소년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한다.

가족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여성청소년의 특성은 가출 통계에도 반영되는데, 1998년 2001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 가출청소년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2001년의 경우를 보면 남성 가출청소년은 6689명이지만 여성청소년은 11,587명에 달한다(이춘화·윤옥경, 2003).⁴¹⁾ 미국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하면서 부모와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집안에서의 긴장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자청소년들은 가출을 시도한다(Chesney-Lind & Sheldon, 1998).

가출과 성매매는 여성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문가와

41) 200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가출경험은 일반학생집단에서는 남학생이 9.4%, 여학생 7.6%이지만, 소년원생이나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 67.9%, 여성청소년 76.2%로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이춘화·윤옥경, 2003). 폭력사용경험은 일반집단에서 남학생 9.7%, 여학생 2.6%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 40.7%, 여성청소년 41.3%로 여성집단에서 조금 더 높다. 성접촉 경험도 일반집단에서는 남학생 22.6%, 여학생 16.3%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만, 특수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 72.5%, 여성청소년 77.0%로 여성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이춘화·윤옥경, 2003). 일반청소년 집단에서는 여성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훨씬 낮지만, 특수집단에서는 남성청소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많이 나타난다.

청소년들은 꼽고 있다(이춘화·윤옥경, 2003). 가출 이후 청소년들은 가정 밖에서 생존을 위해 폭행, 돈 뺏기, 물건 훔치기, 성관계의 위협에 노출된다. 가출한 남성 청소년들은 돈 뺏기와 물건 훔치기로, 가출한 여성청소년은 성매매로 숙식을 해결한다.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려 하기보다는 채팅을 통한 성매매에 더 쉽게 끌린다(민가영 2009, 변혜정 외 2006).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강제적 성관계, 성병감염, 임신, 낙태는 여성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상황이다.⁴²⁾ 청소년의 성매매, 즉 성판매 행위는 청소년의 범죄로 보기보다는 성인에 의한 성착취로 보아야 한다(공미혜 외, 2009).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탈성매매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공미혜 외, 2009). 기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매매는 과거 가정에서의 학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선진국과 한국 연구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 다수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공미혜 외, 2009; 김준호·김은경, 1995).

성운숙(2009)의 성매매 청소년 43명에 대한 심층면접 연구를 보면, 43명 중 38명이 가출 경험이 있고, 15명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공미혜(2003)에 의하면 성매매 청소년 연구대상 13명 전원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성매매 과정에서 이들이 당한 피해로는 폭행, 납치, 협박, 사기, 성매매강요, 갈취, 수면제 복용, 임신, 성병감염이 있다(성운숙, 2009).

성매매 청소년을 위해서는 거처할 곳을 제공하고 탈성매매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쉼터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쉼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에, 길거리 노숙이나 친구 집에 기거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여성청소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쉼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 규율과 공동생활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이다(성운숙, 2009). 성매매 여성청소년을 길거리에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시보호쉼터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기 혹은 중장기 쉼터로 연결되는 중간통로의 연결을 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청소년을 쉼터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은 탈성매매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42) 대체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접촉은 원치 않는 성관계나 임신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실태조사에 의하면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은 일반청소년 집단에서 3.9%, 위기청소년 집단에서 44.1%로 나타났다. 첫 번째 성관계에서 강제로성관계를 한 경우가 남성청소년 3.6%, 여성청소년 19.2%, 술이나 약에 취해 성관계를 한 경우는 남성청소년 6.6%, 여성청소년은 17.5%로 여성청소년집단에서 성폭력 발생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 및 성폭력 실태분석

가. 분석대상과 자료

본 실태분석은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가해와 성폭력 피해 실태현황과 폭력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환경 등 청소년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1, 2, 3학년 남녀 중학생 1,846명과 1, 2학년 남녀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생 1,888명, 총 3,734명이다. 표본은 생활권과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할당추출하였다. 본 실태분석에서는 조사가 완료된 3,734명 중에서 성별이 확인되지 않는 52명을 제외한 3,682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성비를 보면 남자 청소년은 1,892명으로 51.4%, 여자 청소년은 1,790명으로 48.6%이다. 폭력 현황과 남녀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집단간 비교분석,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나. 학교폭력 피해경험

<표 1>은 성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나타낸다.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은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다. 응답한 여자 청소년의 7.98%인 136명이, 남자 청소년의 10.49%인 187명이 지난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피해 경험이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협박,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폭력의 경험이 높다고 보고 되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그러나 성별 피해 경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여자 청소년도 남자 청소년에 못지 않게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학교폭력 예

방과 개입에 있어 남자 청소년 뿐 아니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 학교폭력 피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없음	1,573 (92.04%)	1,596 (89.51%)	3,169 (90.75%)
있음	136 (7.98%)	187 (10.49%)	323 (9.25%)
1년에 몇번	99 (72.79%)	130 (69.52%)	229 (70.90%)
한달에 몇번	21 (15.44%)	24 (12.83%)	45 (13.93%)
일주일에 몇번	10 (7.35%)	18 (9.63%)	28 (8.67%)
거의 매일	6 (4.41%)	15 (8.02%)	21 (6.50%)
(소계)	136 (100.00%)	187 (100.00%)	323 (10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주 2) 응답을 하지 않은 표본은 분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의 수는 표본수와 다를 수 있음

다음은 학교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분석하였다(〈표 2〉). 먼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비교한 결과, 중학생의 피해경험이(13.97%) 고등학생의 피해경험보다(4.56%) 훨씬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발생이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보고들과 일치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처와 예방이 조기에 개입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간에 학교폭력 피해율에 차이가 있는지, 남녀공학과 남학교, 여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각각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학교유형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105 (12.53%)	137 (15.32%)	242 (13.97%)
고등학교	30 (3.45%)	50 (5.64%)	80 (4.56%)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17 (2.58%)	36 (6.43%)	53 (4.35%)
전문계고	14 (6.60%)	14 (4.28%)	28 (5.19%)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100 (7.73%)	149 (10.61%)	249 (9.39%)
남학교	-	38 (10.03%)	38 (9.82%)
여학교	36 (8.72%)	-	36 (8.94%)

다음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먼저 가정환경 요인으로서는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 목격경험, 가정환경 위험요소 세 요인을 보았으며, 세 요인은 모두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으나 그 값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환경으로 응답 청소년과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을 보았으며,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가장 크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은 남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환경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안전한지를 보았으며, 지역사회의 물리적 안전성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환경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의 상관관계

구분	여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남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전체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0.12*	0.13*	0.13*
가정폭력 목격경험	0.09*	0.11*	0.10*
가정환경 위험요소	0.09*	0.12*	0.10*
또래환경			
친한 또래의 폭력행동	0.13*	0.24*	0.20*
지역사회환경			
물리적 안전성	0.10*	0.12*	0.11*

주 1) *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주 2)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부장적 문화, 부모의 허용도, 정서적 친밀감, 부모의 존중도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값일수록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냄

주 3) 가정폭력 목격경험: 지난 1년간 심한 부부싸움, 폭행, 욕설 및 폭언, 무관심 및 대화없음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4) 가정환경 위험요소: 알코올 의존 가족, 가출 가족, 실직한 부모, 사망한 부모, 이혼한 부모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5) 친한 또래의 폭력행동: 친한 친구의 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6) 지역사회 물리적 안전성: 통학길에 유흥업소가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지역 청소년 대상 범죄, 으스스하고 후미진 장소 정도, 비어있거나 철거중인 건물 정도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음

〈표 4〉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피해 청소년의 74%가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하여 주변에 알리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83.33%(110명)가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던 반면 남자청소년은 67.22%(121명)가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피해사실을 알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남자청소년들이 좀 더 학교폭력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살펴보면, 응답자의 57.88%가 친구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27.27%), 선생님(12.55%), 기타 상담실 등 전문기관, 경찰(2.60%)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피해 학생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선생님이나 상담실 등 전문기관, 경찰과 같은 보다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에 따라 공식적인 지지체계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식적인 지원체계에 보고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학생들이 초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고 향후 더 심각할 수 있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이용을 높이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친구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피해 학생을 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내 학교폭력 지원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예방 및 대처 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학교폭력 피해사실의 알림여부와 도움받은 정도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알리지 않음	22 (16.67%)	59 (32.78%)	81 (25.96%)
알림	110 (83.33%)	121 (67.22%)	231 (74.04%)
친구	66 (60.00%)	67 (55.37%)	133 (57.58%)
다른 가족 구성원	28 (25.45%)	35 (28.93%)	63 (27.27%)
선생님	13 (11.82%)	16 (13.22%)	29 (12.55%)
기타(상담실 등 전문기관, 경찰)	3 (2.73%)	3 (2.48%)	6 (2.60%)
(소 계)	110 (100.00%)	121 (100.00%)	231 (100.00%)
도움받은 정도(1~4)	2.38(0.88)	2.63(0.88)	2.51(0.89)

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다음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실태를 분석하였다(〈표 5〉).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헐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였다. 응답한 여자 청소년 중 4.28%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은

5.96%가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 청소년의 가해경험이 여자 청소년이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가해경험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학교폭력의 예방과 개입에 있어 여자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학교폭력의 가해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1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의 가해경험이 실제로 낮을 수도 있으나, 응답자가 학교폭력 가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의식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경향을 보였을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을 학교폭력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을 수도 있는데, 특히 따돌림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행동이 아닌 폭력의 유형에 이런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

〈표 5〉 학교폭력 가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있음	75 (4.28%)	109 (5.96%)	184 (5.14%)
없음	1,679 (95.72%)	1,720 (94.04%)	3,399 (94.86%)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표 6〉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7.41%인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91%만이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과의 관계

구분		가해경험		전체
		있음	없음	
피해 경험	있음	88 (27.41%)	233 (72.59%)	321 (100.00%)
	없음	92 (2.91%)	3,065 (97.09%)	3,157 (100.00%)

*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

다음은 학교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분석하였다(〈표 7〉).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가해경험도 중학생이(6.78%) 고등학생보다(3.51%)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가해발생이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앞서 논의한대로 이는 학교폭력 가해발생의 저연령화에 주목하고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이 조기에 개입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가해경험에 있어서도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녀공학과 남학교, 여학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 환경과 학교폭력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중학교 vs. 고등학교			
중학교	52 (6.10%)	67 (7.43%)	119 (6.78%)
고등학교	22 (2.45%)	42 (4.54%)	64 (3.51%)
일반계고 vs. 전문계고			
일반계고	13 (1.93%)	26 (4.51%)	39 (3.12%)
전문계고	10 (4.41%)	16 (4.60%)	26 (4.52%)
남녀공학 vs 비남녀공학			
남녀공학	59 (4.42%)	90 (6.25%)	149 (5.37%)
남학교	-	19 (4.83%)	19 (4.83%)
여학교	16 (3.85)	-	16 (3.85%)

〈표 8〉은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 또래환경, 지역환경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 목격경험, 가정환경 위험요소는 상관관계의 값은 모두 청소년의 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값은 크지 않았다.

친한 친구의 폭력행동은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가장 크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과 친구의 폭력행동의 상관관계에서의 성별차이를 보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가($r=0.20$) 남자 청소년의 경우보다($r=0.17$) 경미하게나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의 또래집단 행동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은 본 조사 분석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 환경은 청소년의 폭력 및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중요 요인이므로, 앞으로 지역사회환경의 여러 영역들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환경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남자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전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가정환경			
부모-자녀관계	0.10*	0.08*	0.10*
가정폭력 목격경험	0.08*	0.06*	0.07*
가정환경 위험요소	0.11*	0.08*	0.09*
또래환경			
친한 또래의 폭력행동	0.20*	0.17*	0.18*
지역사회환경			
물리적 안전성	0.05*	0.08*	0.07*

주 1) *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주 2) 부모-자녀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가부장적 문화, 부모의 허용도, 정서적 친밀감, 부모의 존중도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높은 값일수록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냄

주 3) 가정폭력 목격경험: 지난 1년간 심한 부부싸움, 폭행, 욕설 및 폭언, 무관심 및 대화없음 등 총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4) 가정환경 위험요소: 알코올 의존 가족, 가출 가족, 실직한 부모, 사망한 부모, 이혼한 부모 등 총 8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5) 친한 또래의 폭력행동: 친한 친구의 폭행, 절도, 조롱, 따돌림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음

주 6) 지역사회 물리적 안전성: 통학길에 유흥업소가 있는지 여부,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지역 청소년 대상 범죄, 으스스하고 후미진 장소 정도, 비어있거나 철거중인 건물 정도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음

라. 성폭력 피해경험

다음으로 남녀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분석하였다(〈표 9〉). 전체 응답자의 약 18%가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평균 청소년 5명당 1명이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의 피해경험은 익명조사라 하더라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거나 본인이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축소보고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은 20.84%가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 청소년은 15.49%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낮은 하지만,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사례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남자 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9〉 성폭력 피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없음	1,417 (79.16%)	1,599 (84.51%)	3,016 (81.91%)
있음	373 (20.84%)	293 (15.49%)	666 (18.09%)
1회	250 (67.02%)	183 (62.46%)	433 (65.02%)
2회	71 (19.03%)	68 (23.21%)	139 (20.87%)
3회	34 (9.12%)	22 (7.51%)	56 (8.41%)
4회	9 (2.41%)	8 (2.73%)	17 (2.55%)
5회	7 (1.88%)	6 (2.05%)	13 (1.95%)
9회	2 (0.54%)	6 (2.05%)	8 (1.20%)
(소계)	373 (100.00%)	293 (100.00%)	666 (100.100%)

〈표 10〉은 구체적인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경험한 피해 유형 중 가벼운 성추행(24.1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23.62%), 성희롱(17.34%), 스토킹(11.35%)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의 피해 성폭력 유형으로는 가벼운 성추행(26.42%),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22.81%), 성희롱(16.64%), 스토킹(12.52%) 순으로 많았다. 남자 청소년의 피해 유형은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24.55%), 가벼운 성추행(21.56%), 성희롱(18.16%), 스토킹(9.98%) 순으로 많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 등의 피해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매우 보편화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 증가하고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매체를 활용한 성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0〉 성폭력 유형별 피해경험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가벼운 성추행	154 (26.42%)	108 (21.56%)	262 (24.17%)
심한 성추행	35 (6.00%)	32 (6.39%)	67 (6.18%)
강간미수·강간	34 (5.83%)	14 (2.79%)	48 (4.43%)
사진·동영상의 촬영·유포	8 (1.37%)	43 (8.58%)	51 (4.70%)
성희롱	97 (16.64%)	91 (18.16%)	188 (17.34%)
음란전화·음란문자·음란메일	133 (22.81%)	123 (24.55%)	256 (23.62%)
음란물 노출	9 (1.54%)	26 (5.19%)	35 (3.23%)
성기노출 등	40 (6.86%)	14 (2.79%)	54 (4.98%)
스토킹	73 (12.52%)	50 (9.98%)	123 (11.35%)
전체 피해 건수	583 (100.00%)	501 (100.00%)	1,084 (100.00%)

주 1) 다른 유형의 성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체 피해 건수는 〈표 9〉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와 일치하지 않음

다음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살펴보면(〈표 11〉), 응답한 피해 사례의 43.45%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였으며, 다음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31.17%), 이성친구(10.08%)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피해 사례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고(60.16%),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가 많았다(26.47%). 반면 여자 청소년은 전혀 모르는 사람(34.7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30.67%)가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다.

성폭력 유형과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에게 당한 성폭력 유형은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스토킹 등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음란전화·문자·메일, 가벼운 성추행, 성기노출 등이 많았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피해 유형은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사진·동영상 촬영·유포 등이 많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피해는 주로 음란전화·문자·메일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남녀 청소년 모두 음란전화·문자·메일 등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벼운 성추행이나 성기노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남녀 청소년 모두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성폭력 사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피해사례를 많이 당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기 남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또래에게 하는 성적인 장난이나 언행들이 상대에게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성폭력 행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성폭력·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이다.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향후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성폭력,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등에 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표 11〉 성폭력 가해자

유형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친구·선후배	150 (30.67%)	225 (60.16%)	375 (43.45%)
전혀 모르는 사람	170 (34.76%)	99 (26.47%)	269 (31.17%)
이성친구(전 이성친구)	59 (12.07%)	28 (7.49%)	87 (10.08%)
기타(그냥 아는 사람, 선생님, 동네사람 등)	110 (22.49%)	22 (5.88%)	132 (15.30%)
전체	489 (100.00%)	374 (100.00%)	863 (100.00%)

〈표 12〉 성폭력 유형별 가해자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친구 선후배	모르는 사람	이성 친구	기타	친구 선후배	모르는 사람	이성 친구	기타	친구 선후배	모르는 사람	이성 친구	기타
가벼운 성추행	41	37	13	46	56	7	7	16	97	44	20	62
심한 성추행	5	5	8	12	18	2	2	1	23	7	10	13
강간미수·강간	4	8	6	8	2	2	1	1	6	10	7	9
사진·동영상 촬영·유포	2	1	-	2	30	2	1	0	32	3	1	2
성희롱	50	4	7	17	68	2	2	2	118	6	9	19
음란전화·문자·메일	13	88	6	7	9	78	3	1	22	166	9	8
음란물 노출	5	-	-	1	13	2	1	-	18	2	1	1
성기노출 등	2	23	3	6	7	1	-	-	9	24	3	6
스토킹	28	4	16	11	22	3	11	1	50	7	27	12
전체	150	170	59	110	225	99	28	22	375	269	87	132

〈표 13〉는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피해 청소년의 약 과반수(53.68%)가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은

68.22%가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던 반면 남자청소년은 23.06%가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 남자청소년이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비율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겨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거나, 가해자의 상당수가 친구나 선후배이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묵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남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묵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피해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지 살펴보면, 학교폭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친구(62.10%)와 가족(33.12%)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학교폭력 피해실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문기관 등 공식적인 지원체계와 친구나 가족과 같은 비공식적인 지원체계 양쪽 모두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 성폭력 피해사실의 알림여부와 도움받은 정도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음	109 (31.78%)	162 (66.94%)	271 (46.32%)
알림	234 (68.22%)	80 (23.06%)	314 (53.68%)
친구	145 (61.97%)	50 (62.50%)	195 (62.10%)
다른 가족 구성원	77 (32.91%)	27 (33.75%)	104 (33.12%)
선생님	10 (4.27%)	-	10 (3.18%)
기타(상담실 등 전문기관, 경찰)	1 (0.43%)	3 (3.75%)	4 (1.27%)
도움받은 정도(1~4)	2.58	2.73	2.62

마.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

〈표 14〉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경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자료 분석결과, 세 유형의 폭력피해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조

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0.19$). 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는 폭력유형을 경험한 청소년이 다른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폭력 피해 경험들 사이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두 개 이상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은 특히 취약 집단으로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가정내·외에서 여러 폭력 유형을 중첩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4〉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상관관계

구분	여자 청소년			남자 청소년			전체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1.00			1.00			1.00		
성폭력	0.19*	1.00		0.19*	1.00		0.19*	1.00	
가정폭력	0.07*	0.13*	1.00	0.11*	0.10*	1.00	0.10*	0.11*	1.00

*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학교폭력과 성폭력의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가.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

여성가족부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CYS-Net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두드림존> 운영,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하고, 시설의 보호를 받는 등 성인기로의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매년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학생 청소년을 성폭력, 성매매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청소년 일반이 당면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성폭력, 성매매, 임신과 같이 여성청소년이 고유하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후자의 기관이 여성청소년에게만 특화된 것도 있지만, 여성 일반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개념하에 청소년에게 상담, 구조,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학생위기상담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YS-Net은 전국적 구축된 연계망을 통해서 어려움에 당면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Wee 센터는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학교 및 학부모가 의뢰한 청소년에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유형의 기관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문제점은 여성청소년이 고유하게 당면하는 성폭력, 성매매, 임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다. 어느 한 가지 종류의 기관이 청소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성(性) 문제가 성장기 남녀 청소년 모두의 폭력 및 일탈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이 판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이 성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 지원에 더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만, 이들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CYS-Net이나 Wee 센터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지원기관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미혼모자시설로, 여성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고유한 위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이 전국적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CYS-Net이나 Wee 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이나 위기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에 입각해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정책과 관련된 향후의

방향에 대한 몇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미국의 2005년도 <전국청소년폭력실태조사(national Youth Risk Behavior Survey)>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35.9%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이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대책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는데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비교평가한 Meta-analysis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에 프로그램의 성공여부는 1) 프로그램이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2) 일반학생과 선택된 일부의 학생중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3)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수가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개인가, 4) 대상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5) 교사의 유형은 어떠한가, 전문가를 고용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Park-Higgerson 외, 2008).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1997개의 청소년폭력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Meta-analysis에 입각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1) 부모와 또래집단,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전체에 다차원적으로 개입하는 프로그램이(multiple-approach intervention Programs) 교실에서의 교과과정 위주로 된 일차원적 개입프로그램(Single-approach programs)에 비해서 효과적이다. 2) 3학년 이하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프로그램은 보다 학년이 높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에 비해서 폭력예방의 효과가 큰 것은 증명되지 않았다. 10-19세 사이의 사춘기 청소년들(Steinberg, 2002). 3) 전문가를 고용한 경우 프로그램의 폭력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입각해볼 때, 1) 학부모가 학교의 폭력예방프로그램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하거나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서 학교와 가정 사이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과 만성적인 폭력의 행사와 의사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부모와 학생당자사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전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과 의사소통훈련,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연계, 학부모를 위한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안전하지 못한 도시공간의 정비, 법률적 개정등 광범위하면서 다차원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2) 사춘기의 고위험군의 집단의 경우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던 반면에 좀 더 이른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프로그램의 효과가 컸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은 좀 더 이룰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폭력의

초기단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 다음 특정한 폭력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폭력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설입소자나 폭력예방교육을 받은 집단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상의 접촉의 증가는 폭력의 가해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어느 시간대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의 행사나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자살한 많은 학생들이 24시간 지속되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폭언과 명령으로 고통받았다고 호소하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보다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통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나. 학교폭력과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정책

학교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정책적 대응 방안으로, 이미 법·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안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하여 수 많은 방안들이 제안되어 제도화되거나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1) 일상활동으로서의 학교 상담 정착을 위한 학교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성청소년보다 여성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고한다. 여기에는 폭력행사에서의 성별 차이 즉, 남성청소년은 육체적 공격을 하는 반면, 관계의 친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청소년들은 집단 따돌림과 같이 관계의 친밀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레이첼 시몬스, 2002) 특성의 차이가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높음에 따라, 육체적, 물리적 폭력 행사를 주로 하는 남성청소년에 비해 여성청소년의 폭력은 비가시화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드러날 가능성

이 높다.

집단따돌림이나 육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학교 상담이 학생들의 일상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년에 한번 모든 학생이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 의무제와, 상담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학생들의 전, 출입이나 자퇴 시 상담교사를 경유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 상담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해숙 등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2011),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은 문제있는 애들만 받는 건데, 내가 상담실을 가는 순간 나를 문제있는 애로 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 상담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도 교사가 보내주지 않으면 상담교사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 학교의 학생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도 학교 상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상담·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스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별학교에 설치되는 Wee Class가 2009년 1,530개교에서 2010년 2,530개교, 2011년 3,530개교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2010년 926명에 불과하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2009년 1,614명에서 2010년 981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학교 상담실역할을 하는 Wee Class가 말 그대로 일부학교에서는 상담교실만 있고 전문상담가 없이 일반 교사나 인턴교사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상담교사 500명을 하반기에 단위학교에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2. 5. 24).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습·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만이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상담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받을 수 있는 일상활동이라는 인식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2) 학교 보건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침 시행 등 단계적 방안 강구

교과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³⁾

2009개정 보건교육과정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분노 등의 감정조절과 건강한 관계 맺기 등을 주요 내용요소로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발생 원인 중의 하나로,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이 미흡하여,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 부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6)이라는 문제인식과도 맥을 같이 한다.

〈표 15〉 2009개정 보건교육과정

영역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 속의 건강한 선택	성과 건강	· 성적 발달의 이해와 대처 · 이성교제와 성역할, 임신, 피임 등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 성폭력, 성매매, 에이즈 등 성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섹슈얼리티 개념 이해 · 사랑, 성적 결정권, 성역할 등 성과 개인적·사회적 관계 · 임신, 미혼모, 저출산 등 국가정책 · 성폭력 성인성 질환 예방 등 성적인 위험과 안전
	정서와 정신 건강	· 화와 스트레스 등 감정 이해와 조절 · 건강한 관계 맺기와 학대 등 정신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 감정에 대한 이해와 화, 스트레스 등 부정적 감정 대처 · 건강한 관계 맺기와 학대 등 정신적 위험과 안전 ·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와 편견에 대한 대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등 관련 법령마다 초·중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도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학교 성교육 또한 범교과 학습주제 중의 하나로 다루지는 등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육과정에

43) 보건교과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선택 또는 교양교과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보건교과를 선택교과로 채택한 학교는 2011년 현재 중학교 11.8%, 고등학교 4.0%에 불과해, 보건교육을 필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제9조의2)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보건교육포럼 보도자료, 2011. 10.7).

는 이와 같은 법정 성교육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건교육의 교과교육화는 학교 성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표 16〉 폭력 예방을 위한 성교육관련 법령

법령	내용	법정 시간	조치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법정 시간없음 (1시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	성교육 및 성매매예방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교육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법정 시간없음 (1시간)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시행령 제4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교육결과를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

(3) 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한 학교 성교육 연계 강화

이와 함께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대상 성교육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통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 기관들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의거, 2007년부터 체험형 성교육 공간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전국에 총 42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교육을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교육과 관련하여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의 조치는, 범교과 학습주제 중의 하나로 성교육을 포함하고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는 원론적인 기술만 있을 뿐이다.⁴⁴⁾⁴⁵⁾

이로 인해 학교 성교육은 개별 단위학교에 일임한 실정이다. 그런데 개별학교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요청한 성교육형태를 보면, 대부분 1회성 대형강의 교육의 비중이 높다(이명선 외, 2010). 이렇게 이슈중심의 단발성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일종의 행사로써의 성격이 강해질 수 밖에 없어 교육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개별학교와 개별센터의 담당자간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기관간의 협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이 성교육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구조를 마련하고, 성교육 체험관 활용과 주제 등 학교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담당해야할 영역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학교폭력 및 성폭력 등 위기여성청소년의 CYS-Net 접근기회 확대방안 마련

위기상황에 놓인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CYS-Net을 통해 동등한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자청소년의 CYS-Net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한 CYS-Net 광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신, 출산, 성폭력 등 여자청소년만의 위기경험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위기청소년의 모집단 대비 CYS-Net 서비스 수혜율을 성별로 분석한 결과(정해숙 외, 2010),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CYS-Net 서비스 수혜율이 증가하였으나, 남성우위의 모집단대비 수혜율에서의 성간 격차는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우위의 모집단대비 수혜율에서의 성간 격차는 신규사례의 경우 2007년 0.1% 포인트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0.7% 포인트, 2009년 1.0% 포

44)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 시수를 확보 운영토록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학교자율화 2단계 조치로 폐지되었다(송영희, 2009).

45) 「학교보건법」(제9조) 은 학교의 장은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트로 증가하였으며, 종결사례는 성간 격차의 증가폭이 더욱 커, 2007년 0.1% 포인트, 2008년 0.8% 포인트, 2009년 1.6% 포인트에 달한다.

이처럼 CYS-Net 서비스 수혜에서의 성불평등 현상이 초래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CYS-Net 서비스 홍보방식의 문제이다. 본 연구결과,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청소년에 비해 스스로 또는 친구,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담기관을 알아보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담방식도 모바일이나 사이버 상담 등을 선호하는 등 신원 노출을 꺼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CYS-Net을 통해 지원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관련한 것이다. CYS-Net을 통해 여자청소년만이 겪게 되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여자청소년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CYS-Net을 통해 임신 및 낙태문제로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매우 적어, 이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CYS-Net을 통해 여자청소년들이 임신, 낙태, 출산, 성폭력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이 같은 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

(5) 여자청소년의 '다른' 위기경험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연계기관의 확충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성폭력 등 여자청소년 고유의 위기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미혼모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교육전문기관이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교육전문기관의 경우, 여자청소년만이 아니라 남자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 및 이중적 성윤리를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각 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CYS-Net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훈령(2009. 11. 27. 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훈령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지원 또는 보호하기 위한 필수연계기관에 광역 및 지역교육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관서, 지방노동관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

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하는데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기관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청소년들은 경험하지 못하나 여성청소년에게는 일생에 걸쳐 가장 중요하며 치명적일 수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들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인한 여성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만으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고,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가장 취약한 지점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십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십대 임신이 심각한 수준이며,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십대 미혼모 중에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청소년모자 모두에 대한 지원이 절박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또한 성매매와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위기경험으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관련 법률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은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성폭력관련 청소년지원시설은 필수연계기관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 사이버 아웃리치(Cyber Outreach) 사업 확대

이와 함께 일반청소년지원체계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여성청소년의 성매매⁴⁶⁾ 예방하고,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사이버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 성매매피해 경험이 있으나 이를 극복한 여성청소년이 사이버 상담원이 돼서, 성매매나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고, 상담을 해주면서 사회적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 인력 배치 및 또래 상담자 전문성 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멘토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46)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핫라인 1388의 성매매관련 상담실적은 매우 미미해, 전체 내담자중 1.1%인 327명에 불과하다(정해숙 외, 2010).

사이버 아웃리치사업의 필요성은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대상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연계받은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후속 사례관리를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경·검찰 등으로부터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365일 24시간 쉴 새 없이 거래를 통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성매매집결지와 다름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위기의 십대여성들이 넘쳐남에도 2010년의 경우 경·검찰 등에서 받은 성매매 여성청소년 명단이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명단 100명을 받아도 여성청소년들이 그 사이에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바꾸기 때문에 그 중 연락이 되어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 수는 극히 적다.⁴⁷⁾ 이에 비해 2011년 5월부터 사이버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기관의 사이버 아웃리치 실적을 보면, 지난 1년간 여성내담자는 866명이며 이중 67.6%인 585명이 성매매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민영, 2012). 이들에게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정보제공, 관계기관 연계 및 현장구조, 법률지원 등의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는 사이버를 매개로 한 조건만남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 보호관찰소 등에 의해 연계되는 성매매피해 여성청소년은 적은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에 처한 십대여성과 관련한 온라인을 통한 조기 개입시스템의 필요성과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후 개입과 지원위주의 현재의 접근방식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를 통해 성매매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연결하는 등 온라인 정보제공과 상담활동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성 인지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업무종사자, 즉,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CYS-Net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관장 및 상담사, 청소년동반자들의 성 인지력 향상

47) 이로 인해 각 센터별 2명의 실무자가 성매매 청소년 재활교육 등 기본 사업을 꾸려갈 뿐만 아니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직접 검찰 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을 방문해 명단을 받아오는 일까지 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S센터 담당자).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성 평등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핵심교육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젠더 감수성을 제고하고 청소년기의 성별 차이와 청소년문제에서의 젠더이슈에 대한 연수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기관 및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서 참여집단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단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숙 외 2011).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가출 등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이 부딪히는 생활세계는 또래남성과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 있으며, 이들의 경험내용 또한 성별 차이를 보인다. 가정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역할이나 기대가 남성청소년과 다르며,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이나 노동환경 역시 남성청소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내용과 방식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서비스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성에 많은 상처를 받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담과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지원서비스 자체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⁴⁸⁾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 및 지원기관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의 위기경험 지원을 위한 초기 개입인력인 경찰에 이르기까지 젠더관점에서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등의 위기경험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해야 한다.

48) 일례로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원조차 가출 여성청소년에게 ‘여자가 얌전히 집에 있지’ 돌아다니느냐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이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참고문헌

- 김민영(2012). 십대여성의 가출과 성매매, 그 접점의 현장에서. 십대여성의 안전·건강·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보건교육포럼 보도자료(2011. 10. 7). 학교 보건교육 엉망.
- 송영희(2009). 교육기관에서의 성교육지원체계. 대한민국 청소년성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모델 제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토론문.
- 이명선 외(2010).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컨설팅. 여성가족부.
- 정해숙·오은진·최자은(201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해숙 외(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issues

2

학교폭력 법제 및 대책

▶ 제1주제

-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

▶ 제2주제

- 외국의 학교폭력 법제 및 강력대응방안

session 2

학교폭력 법제 및 대책

제 1 주제

현행 학교폭력
법제의 문제점 진단
및 단기대응방안

❖ 발표 ❖

이승현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 학 박 사

I. 서

과거의 학교폭력은 단순 따돌림이나 물건 빼앗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성폭력, 뺑서들, 와이파이셔틀 등 폭력유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진 등의 방식을 통해 집단화되었으며, 신체상 폭력뿐만 아니라 SNS, 개인블로그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정신적·심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폭력이 폭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나 또다른 보복 폭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주는 충격이 크다. 근래에 발생한 대구여중생 사건, 청주 남중생 일진 폭행치사사건 등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고, 그동안 수차례 정부대책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다. 학교현장에서의 적용이나 가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안되는 정책이 많았고,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했다. 2012년 2월 6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정부정책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데 불과하였고, 정부가 직접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처벌이나 학교·가정의 책임을 묻기에만 급급하였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련 법률을 비롯한 학교 내 규제장치가 학교현장에서 작동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적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제재장치로서 소년사법체계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종합대책이 어떠한 점에서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안발생시 신속한 개입 및 적절한 처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제시한 대책은 대부분 장기적인 대안인 경우가 많아 심각화된 학교폭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근하여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력처벌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력처벌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스템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년이라는 이유로 일관되게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가해학생에게는 범죄라는 인식을 약하게 만들고 피해학생의 피해감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의 시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적절한 처벌이 제도적인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될 때 학교폭력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관련법제에 대한 구체적 진단을 통해 학교폭력문제 해결방식에서 신속한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요소를 걸러내고, 적절한 처벌방안을 비롯하여 단기적이고 긴급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현행 학교폭력 법적 지원체계

1. 학교폭력 관련 규율법률 형태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있다. 동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조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여 사법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절차와 형사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을 받아 사건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의 유형이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으로 규제되고(제257조, 제260조, 제276조, 제283조, 제30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폭력정보를 제공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된다.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이,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된다.

2.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배경

1990년대 후반부터 학교폭력 문제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1995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찰에서는 ‘학교담당 경찰관제’를, 검찰에서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97년 서울고내 폭력조직 폭행사건과 2001년 부산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부는 민관공동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2003년 1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해 1월에 공포되고, 이 법률에 따라 정부는 2005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005년 3월 일진회 폭력사건, 2005년 10월 부산 중학생 사망사건, 충주여고생 일진회 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몇 차례의 법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학교폭력이 사회적 조명을 받게 될 때마다 정부의 긴급대책이 수립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이 2008년(법률 제8887호)과 2009년(법률 제9642호), 2011년(법률 제10642호) 개정작업을 통해 개선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집단따돌림, 무단결석, 가출, 살인, 자살 문제⁴⁹⁾ 등으로 연결되면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동안 제18대 국회에서 심의되었던 24개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취합하여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이 법률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조문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이외의 조문은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내용(개정법률을 중심으로)

2012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였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상을 높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전문화하고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개선하였으

49) 2011년 3월 청주고등학교 남학생 자살사건, 7월 대구 여중생 자살사건, 12월 대전여고생 자살사건, 대구 남중생 자살사건, 청주 중학교 남학생 일진 폭행치사사건, 광주중학교 남학생 자살사건, 2012년 1월 대전여고생 자살사건, 전주 남고생 자살 사건 등으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며, 부모 및 교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하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학교폭력의 개념 확대

구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면,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행위를 말한다.

2012년 개정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구법 제2조 제1호는 ‘학생간’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가해자나 피해자 중 일방이 근로청소년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아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하거나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확대하여 학교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동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제2조 제1호).

그리고 구법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만 규제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놀림이나 욕설·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다보니 가해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교사나 학부모들도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개정법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

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사이버따돌림’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1호의3).

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개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있던 ‘학교폭력기획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었다(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대책지역위원회, 대책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와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를 공동으로 한 자) 2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제10조의2).

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2조).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련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해당학교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시행령 제1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

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제13조 제2항). 자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었다(구법 제16조 제1항).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개정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였다(제16조 제1항 제5호). 학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고,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할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하도록 하였다(제16조 제2항).

피해학생이 전문기관으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바로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제16조 제6항).

마.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 및 치료적 접근 병행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법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로서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교체, ④ 전학, ⑤ 학교에서의 봉사, ⑥ 사회봉사, ⑦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⑧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⑨ 퇴학처분 등 9가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조치가 가해학생에 대한 규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였다.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신고·고발 학생과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출석정지에 대하여 기간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다(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6항). 또한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하여는 병과 및 가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제17조 제2항),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추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17조 제11항).

구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정지 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회복적 정의를 위한 국가적 노력 의지가 없었다. 장기간 출석정지를 당하거나 전학 보내질 가해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지도를 해줄 구체적 대책도 없었다. 학교폭력 대책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처벌로 이분화하는 것은 조기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해학생이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 이에 2012년 개정법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협박 등을 한 경우, 학교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⁵⁰⁾ 또는 전학처분을 받은 경우 가해학생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7조 제3항).

바. 가정 및 학교의 책임 강조

학교폭력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부모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 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의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개정법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제22조 제2항).

50) 학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동법 시행령 제2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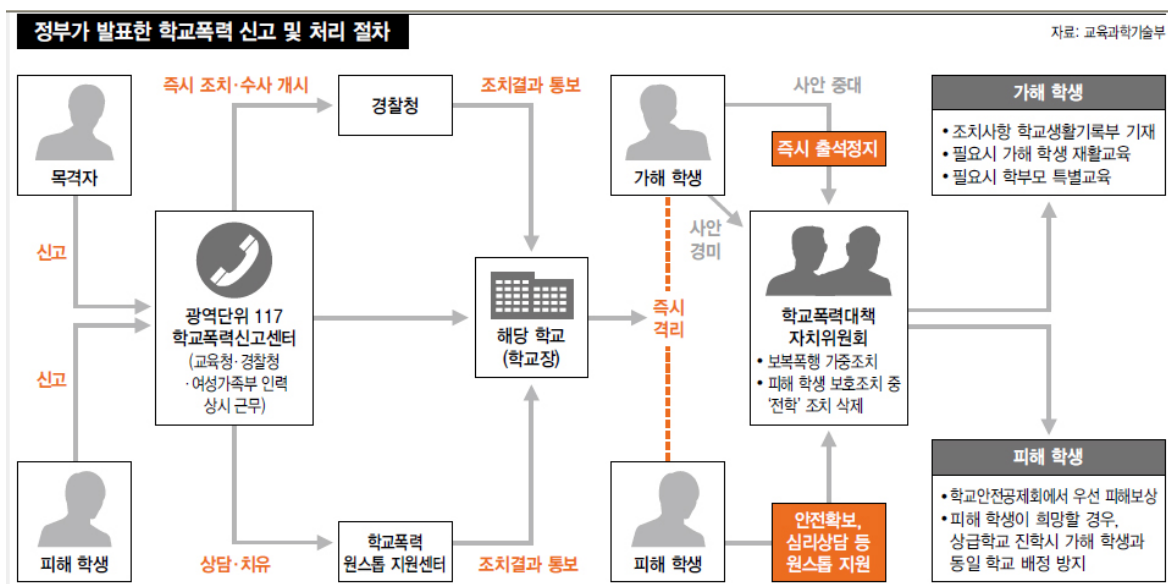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1조 제10항). 반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제11조 제11항)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현행 학교폭력 대응체계

1. 학교 내에서의 대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주변인의 사건현장 목격이나 117신고센터 등의 신고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가 사건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가장 먼저 처리하게 된다. 일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전담기구를 통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그림 1] 학교폭력 신고 및 사건처리절차



자치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즉,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이다(제12조).

가. 자치위원회의 구성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해당학교 교감, 해당학교 교사 중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가운데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 중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나. 자치위원회의 회의 개최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은 ①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④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⑤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⑥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시도교육청별로 집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개최건수를 보면 2009년도에

5,605건에서 2010년도에 7,823건으로 상당부분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 151건이었으나 2010년 231건으로 전년대비 53%가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 2009년 3,846건이었으나 2010년 5,376건으로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9년 1,608건에서 2010년 2,216건으로 전년대비 37.8%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 초중고 학교 수에 비교하면 자치위원회의 개최횟수는 상당히 적다. 이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개최실적(2008-2010)

	심의건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8	207	6,089	2,517	8,813
2009	151	3,846	1,608	5,605
2010	231	5,376	2,216	7,823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근절팀 내부 통계자료, 2011.

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사안조사를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한다.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를 하며,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을 실시한다.

라. 분쟁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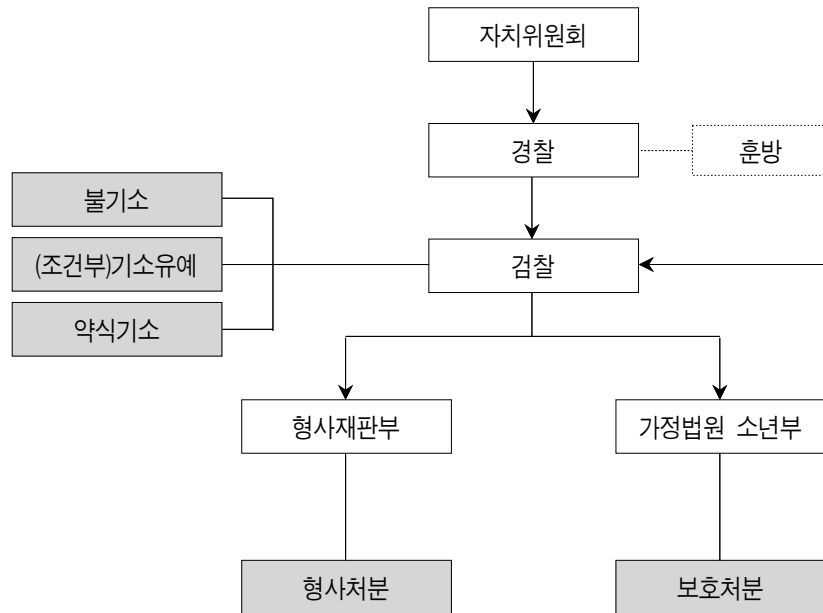
가·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

정 심청을 할 수 있다(제25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해야 한다.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의 실시 및 장소를 통보하고,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기관의 자문을 거쳐 분쟁조정을 개시한다. 이 과정에서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여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낸다(제18조 제2항).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분쟁내용과 조정결과를 적은 합의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한다.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사법적 대응체계

경미한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학교 내에서 자치위원회의 징계 및 선도교육으로 해결이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가 이루어지거나 학교폭력이 심각하여 형사처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소년법이나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사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14세 이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소년법이나 형법 등의 적용을 받지만, 14세 미만 가해학생의 경우 형법상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하여 별도의 처벌의 받지 않는다. 다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그림 2] 학교폭력관련 사건처리절차



우선 학교나 가정 등으로부터 고소되거나 117 신고 등의 방식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하여 경미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단순훈방하거나 교육조건부 훈방처분을 하기도 한다.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검찰로 송치하게 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소년이 초범이거나 재범이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사항이 있어 검찰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희망재단, 보호관찰소 등의 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소년의 전과가 많은 경우나 사안이 아주 중대하여 피해가 큰 경우로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소년범이 소년부에 송치된 전력이 많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법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소년법원에서 판단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감호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보호관찰명령(4,5호), 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6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7호), 소년원 송치(8,9,10호) 등이 이루어진다.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에 대하여

는 형사법원에서 일반성인범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년교도소에 수용된다. 다만, 형의 적용에 있어서는 소년법상 형사처분 특칙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된다.

3. 학교폭력 관련 정부의 종합대책

가. 학교폭력 대응정책의 흐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정부가 국정정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1995년도부터이다. 고(故)김대현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이 한국사회에도 존재함을 알리게 되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내각에 지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이 해방 이후 중대한 청소년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⁵¹⁾ 이를 계기로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01년부터 학교폭력 관련 정부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선거당시 100대 공약 중 학교폭력 관련 공약이 2가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렇다 할 정책으로 나오지 않아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2002년 8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국민협회가 발족하면서 특별법 제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연이은 학교폭력 피해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2004년부터는 정부정책이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2004년 7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교육부총리가 5개 부처 장관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폭력을 매년 5%씩 줄이는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교육정책이 위축되고, 실업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학교폭력 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2011년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 등 각종 학교폭력 피해들이 접수되면서 2012년 2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기관이 한데모여 대책을 강구하였다.

나.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

2012년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²⁾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즉시징계 규정을 신설하였고, 전문상담교사를 배

51) 김종기, 한일 학교폭력 및 이지메 대책마련을 위한 국제세미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5.23, 41-43면.

52) 관계부처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2.6.

치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학교장 및 교원에 대하여는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도록 하였다. 둘째,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조치를 삭제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가해학생에게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가해학생의 보복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도록 하였고, 일진 등 폭력서클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일진경보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또래활동을 지원하였고,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노력을 보였다. 넷째,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확대하였다. 다섯째,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였고, 중학교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가정과 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일곱째,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쿨링오프제, 게임아이템에 대한 규제강화 노력도 보였다.

IV. 현행 학교폭력 대응법제의 문제점

1.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2012년 개정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되었다. 학교폭력 유형에 사이버따돌림의 추가, 학교 밖 학교폭력 문제를 포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보호자에 대한 교육조치 마련, 협박·보복행위에 대한 가중규정 마련 등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의 실무적 적용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가해학생의 조치거부 또는 회피에 대한 징계 문제

현행법상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중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서와 같이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할 경우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⑤ 출석정지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18조상의 징계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퇴학처분에 불과하다. 학교장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조금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퇴학처분조차 의무교육대상자가 되는 중학생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징계의 내용과 수위가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가해학생의 서면사과 조치의 문제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있다.⁵³⁾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처지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만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한다. 강제된 형태의 조치로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⁵⁴⁾ 또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폭행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사과가 형사처벌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서면사과가 문제될 수 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

53) 2010년도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학생 19,949명 가운데 7,211명(36.1%)이 학교봉사명령을, 3,488명(17.5%)이 사회봉사를, 3,437명(17.2%)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1,849명(9.3%)이 서면사과를, 1,395명(7.0%)이 출석정지를, 1,129명(5.7%)이 전학을, 816명(4.1%)이 접촉협박금지를, 135명(0.7%)이 학급교체를, 93명(0.5%)이 퇴학처분을 받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국정조사자료 참조)..

54) 헌법재판소는 1991.4.1 선고 89헌마160 판결을 통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김용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2010.5.3, 38면; 박찬걸,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120면; 오경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12호, 2009, 207면).

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형식적인 사과를 남발하게 되면 실효성도 없을 뿐더러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의 자세를 배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중복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가 있고, 제17조 제3항에도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가 있다. 두 가지 특별교육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엄격하게 구분된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은 독립된 조치로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은 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은 제17조 제8항에 따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은 출석일수 산입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미한 폭력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 학생을 보내 교육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부에서 기관을 물색하여 지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해당학교를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게 되고 학내에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⁵⁵⁾ 이렇게 되면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이를 두 개 규정에서 함께 규율할 필요가 없다.

라. 가해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실효성 부족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7조 제1항 단서에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학교폭력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과정이고 이 단계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퇴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조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⁵⁶⁾

55)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2008, 38면.

56)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마.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

개정법은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991년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표 2〉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보상현황

(단위: 건수, 천원)

연도	급여종류	건수		보상금액	사건요약
2008	요양급여	1	1	585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상해
2009	요양급여	4	3	695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상해
	유족급여		1	119,476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사망
2010	요양급여	5	4	14,210	학생간 다툼으로 인한 상해 2건 일방적 폭행으로 인한 상해 2건
	장해급여		1	60,000	학생간 성추행으로 인한 장해
합계		10		194,966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기금조성 방법, 급여지급한도, 회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에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회원가입도 임의가입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금이 열악하고, 피해정도가 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범위가 제한되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⁵⁷⁾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보상은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범위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어렵다.⁵⁸⁾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13-14면.

57)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5, 8면.

58) 김현철, 앞의 글, 14면; 박부희,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

바. 자치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 어려움

학교폭력의 분쟁해결은 주로 학교 내에서 자체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학교 스스로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청소년전문가, 경찰,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다수 참여시켜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분쟁조정제도가 마련되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은 일반소송과 비교하면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분쟁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해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분쟁조정이라는 준사법적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도 의문이다.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위촉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고, 외부전문가의 참여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을 한꺼번에 소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분쟁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서로 화해하는 등의 방법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아주 경미한 경우엔 매우 효과적이고 손쉽게 분쟁 해결이 가능하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분쟁해결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아 또다른 분쟁을 예고하게 되고, 사건당사자들이 상당기간 심리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되며,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다시 학교나 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⁵⁹⁾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은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을 넘지 못하나,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어 분쟁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

2. 정부의 종합대책의 문제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앞세워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매번 제시되는 종합대책의 내용을

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62면; 이덕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2010, 164면.

59) 김용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변호사 제41집, 2011, 227면;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대검찰청 형사법연구회 발표자료집, 2012.5.10, 9면 이하.

보면 기존의 논의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학교만의 책임을 강조한 채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형태로 일관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이나 방법은 다양화해지는데 반해,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학교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들만 내놓게 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책인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없이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대응방안을 제시하거나, 대책이 관련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데만 급급한 게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2012년 정부가 제시한 대책 가운데 관련법과 관계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전문상담교사의 부족 문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 또는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서도 “학교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한 2005년부터 일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308명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2009년도 마찬가지다. 전문상담교사가 100~300명씩 신규 채용된 2007년, 2008년, 2010년은 학교폭력 예방·근절 15대 중점과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방안 등 관련 대책이 나온 해였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때만 반짝 증원했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동결한 것이다. 2011년 현재 전국 초·중·고 및 교육청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에 불과하고, 전국 초·중·고교는 11,462곳의 대다수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전문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그 배치에 관하여 규정한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3항, 제36조 제3항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⁶⁰⁾ 실제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⁶¹⁾을 보면 심리상담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정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 9월부터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인원을 확대하여 단위학교별로 배치하겠다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신규 전문상담교사 250명을 채용하고, 전직 임용교사 250명을 선발해 생활지도 우수 지원학교 및 중학교에 우선 배치한다고 했다.

〈표 3〉 2012년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신규	26	13	11	19	6	9	9	72	9	10	14	7	10	11	21	3	250
전직	26	13	11	18	5	9	9	73	10	10	15	7	10	10	21	3	250
계	52	26	22	37	11	18	18	145	19	20	29	14	20	21	42	6	500

그러나 실제 전문상담배치계획을 살펴보면 여전히 전문교사 1명이 순회하는 학교 수가 10곳 이상이 되고, 상담시간이 부족하여 일회적인 상담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문상담교사를 전직교사로 채우게 되면 전문상담기술을 가진 교사가 아닌 일반교과교사가 투입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 갑자기 많은 상담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인력부족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계약직 교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계약직상담교사가 적절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상담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교육학 등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면접, 논술 등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나. 일진경보제의 문제점

일진경보제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또래집단간 싸움 여부,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일진경보

60) 이덕난/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 현안보고서 Vol.109, 국회입법조사처, 2010.12.24, 33면.

61) 2010년도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전체 피해학생 13,748명 가운데 10,567명(74.9%)이 심리상담을, 635명(4.6%)이 일시보호를, 608명(4.4%)이 보호조치를, 590명(4.3%)이 치료요양을, 73명(0.5%)이 전학권고, 23명(0.2%)이 학급교체가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년도 국정감사자료 참조).

가 작동되어 관련기관의 피해사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진정보는 정기적인 무기명 표본조사를 통해 일정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경찰이 학교에 투입되어 일진을 소탕한다. 2012년 5월부터 이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진이라는 개념이 모호하여 어떤 기준으로 관련 지표를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산출할지가 막연하다. 또한 이는 가해학생의 처벌에 치중한 대책으로, 학교가 교과부나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표평가에 대해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다. 생활기록부 기재의 문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에서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활지도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은 아니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단한번의 행동으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대학입시나 입학전형에서 반영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 의한 제재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3. 사법처리절차상의 문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외에 별도의 사법처리를 거치는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법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화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사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집계되지 않는 바 전체소년사건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대다수가 훈방으로 처리되고 있고, 검찰로 넘겨지는 사건조차도 60% 정도는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등 불기소

로 처리되고 있으며, 기소되는 사건은 고작 10% 미만에 불과하다.

〈표 4〉 검찰의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6	69,211 (100)	9,315 (13.5)	2,496 (3.6)	6,819 (9.9)	43,495 (62.8)	2,353 (3.4)	36,808 (53.2)	306 (0.4)	4,028 (5.8)	14,105 (20.4)	20 (0.0)	103 (0.1)	2,163 (3.1)
2007	88,104 (100)	10,367 (11.8)	2,815 (3.2)	7,552 (8.6)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4,823 (3.6)	10,327 (7.6)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86 (0.1)	1,535 (1.4)
2010	89,776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93 (0.1)	1,392 (1.6)

주 : '계' 인원에는 성매매송치인원이 포함됨.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2011)

검찰에서 약 30%의 사건이 바로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이 중 70% 이상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 되는 경우도 15% 이상, 불처분되는 경우도 5% 이상을 차지한다. 결국 소수의 사건이 소년부로 온다 하더라도 그 중 대부분은 보호처분으로 해결되고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법원단계로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표 5〉 법원의 소년사건 처리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검 사 송 처	타 법원 이 승	기타
		소 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1·2호 병합	1·3호 병합	2호 단기 보호 관찰	3호 보호 관찰	4호 보호 시설 등에 감호 위탁	5호 병원·요 양소에 위탁	6호 처분	7호 소년원 송치					
2006	25,262 (100)	20,241 (80.1)	4,596 (18.2)	7,003 (27.7)	6,416 (25.4)	10 (0.0)	10 (0.0)	462 (1.8)	10 (0.0)	883 (3.5)	851 (3.4)	1,512 (6.0)	3,344 (13.2)	50 (0.2)	106 (0.4)	9 (0.0)
2007	35,514 (100)	26,874 (75.7)	6,536 (18.4)	10,391 (29.3)	7,639 (21.5)	34 (0.1)	9 (0.0)	478 (1.3)	27 (0.1)	957 (2.7)	803 (2.3)	2,056 (5.8)	5,957 (16.8)	67 (0.2)	546 (1.5)	14 (0.0)

구분 연도	계	보 호 처 분																	
		소 계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2호 수감 명령	3호 사회 봉사 명령	4호 단기 보호 관찰	5호 장기 보호 관찰	6호 소년보 호시설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소년원 송치	1,2 호	1,2,3 호	1,2,4호	1,2,5호	1,2,3,4 호	1,2,3,5 호	1,3 호
2008	39,532 (100)	30,222 (76.4)	6,214 (15.7)	130 (0.3)	181 (0.5)	-	10 (0.0)	410 (1.0)	-	6 (0.0)	762 (1.9)	857 (2.2)	972 (2.5)	-	3,535 (8.9)	874 (2.2)	765 (1.9)	1,576 (4.0)	227 (0.6)
2009	47,865 (100)	35,819 (74.8)	5,883 (12.3)	71 (0.0)	268 (0.6)	23 (0.1)	2 (0.0)	128 (0.3)	100 (0.2)	22 (0.0)	919 (1.9)	992 (2.1)	3,388 (7.1)	572 (1.2)	4,891 (10.2)	1,186 (2.5)	1,905 (4.0)	1,581 (3.3)	1,148 (2.4)
2010	45,090 (100)	32,416 (71.9)	4,527 (10.0)	37 (0.1)	116 (0.3)	34 (0.1)	13 (0.0)	73 (0.2)	81 (0.2)	11 (0.0)	861 (1.9)	806 (1.8)	4,251 (9.4)	615 (1.4)	4,473 (9.9)	1,309 (2.9)	1,777 (4.0)	1,288 (2.9)	1,399 (3.1)

구분 연도	보 호 처 분								불처분	심 리 불개시	타법원 이승	검 사 송 처	기타
	1,3,4호	1,3,5호	1,4호	1,5호	4,6호	5,6호	5,8호	기타					
2008	1,960 (5.0)	1,838 (4.6)	6,259 (15.8)	2,599 (6.6)	137 (0.3)	142 (0.4)	408 (1.0)	360 (0.9)	2,020 (5.1)	6,801 (17.2)	332 (0.8)	152 (0.4)	5 (0.0)
2009	2,183 (4.6)	1,731 (3.6)	4,780 (10.0)	1,256 (2.6)	192 (0.4)	739 (1.5)	1,708 (3.6)	151 (0.3)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
2010	2,182 (4.9)	1,482 (3.3)	3,593 (8.0)	880 (1.9)	104 (0.2)	747 (1.6)	1,689 (3.7)	68 (0.1)	3,105 (6.9)	7,338 (16.3)	1,840 (4.0)	391 (0.9)	-

주 : 1) 2호 및 3호 처분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1)

형사법원으로 넘겨진 5% 미만의 사건조차 30% 이상이 집행유예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받는 경우도 11%에 달하고 있다. 전체 소년범죄 가운데 5% 내외의 사건만이 형사처분되고, 1%-2% 내외의 사건만이 징역형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소년사건처리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표 6〉 형사법원의 제1심 재판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기타
2006		3,543 (100)	-	-	18 (0.5)	624 (17.6)	934 (26.3)	367 (10.4)	1,600 (45.2)
2007		4,151 (100)	-	-	10 (0.2)	671 (16.2)	1,129 (27.2)	362 (8.7)	1,978 (47.7)
2008		5,026 (100)	-	1 (0.0)	215 (4.3)	531 (10.6)	1,504 (29.9)	554 (11.0)	2,222 (44.2)
2009		6,160 (100)	-	-	462 (7.5)	587 (9.5)	1,828 (29.7)	681 (11.1)	2,602 (42.2)
2010		5,294 (1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2,152 (40.7)

주 : 1) '기타'에는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등이 포함됨.

2) 본 통계는 20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2011)

그밖에도 소년사법에서 사건과 관할의 이원화로 인해 경찰-검찰-법원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출석일수 미달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또한 형사처분절차로 갔다가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미결구금 장기화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에 의해 형사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형사법원으로 갔지만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년부로 다시 송치되는 소년의 경우 미결구금 상태에 있게 된다. 또한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을 오가면서 범죄를 학습할 여지도 있다.

V.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단기적 대응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은 이미 정부대책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현실적이고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응방안의 제시가 불가피하다. 신속한 사건 개입과 정확한 사건처리가 전제되어야만 학교폭력 가해학생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해져 더 이상의 폭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도 2차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신속한 개입과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한 단기적 개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예방방법의 정비방안

학교폭력예방방법은 학교폭력사안을 최초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다. 동법에 의해 학교폭력 사안이 정확하게 판명되고 이를 통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개선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에 있어서는 가해학생이 반성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징계로 구성하고, 징계의 거부나 회피 등 불이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징계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징계에 대한 보복행위로 나아갈 우려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 또는 회피한 경우에 조치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가 학교폭력예방방법상의 징계보다 강력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방법상 전학조치는 이를 거부한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출석정지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여 학업이 유예될 수 있음을 보여줄 때 전학에 대한 강제조치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장이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거부 또는 회피의 경우에만 초중등교육법에서 징계하도록 한 부분도 징계수위를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조치 거부 또는 회피에 대한 제재가 원래의 징계 수위와 다를 바 없다면 가해학생의 선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 거부 또는 회피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수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방법상에 명문으로 가중된 조치를 무엇으로 할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방법 제17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할 경우’에 대해서는 그 판단이 모호하고 자칫 잘못하면 판단자의 주관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학생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에도 반하고 민형사절차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바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²⁾

셋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학내외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는 제17조 3항에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의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이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말미암아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어버린바 고등학생에 대하여만 퇴학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대신할 조치로서 의무교육 기간 중인 자 중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공립형 기숙대안학교 설치 등을 통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⁶³⁾ 위탁교육을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안학교 내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기숙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안학교 내에서도 서열로 인한 학교폭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해학생만을 철저히 분리한 공립형 기숙대안학교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해학생의 보호방안

학교안전공제회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보상의 경우 장기간의 심리치료 등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바 범죄피해자구조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범죄피해자구조기금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16조 제7항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해 재정적 자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의 용도)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구제

62) 일반인이 반성문을 요구하거나 서면사과를 강요할 경우 강요죄에 해당하지만 학교현장이나 가정에서 교사나 보호자가 반성문이나 서면사과문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박병식,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의 개선방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피해학생 보호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사후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0.12.7, 50면).

63)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92-93면.

를 위한 기금 마련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배치에 관한 규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두어 초중고에 반드시 상담교사를 두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의 문제로 전체적으로 전문상담교사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가 심각한 중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충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중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35조 제3항(고등학교 교원 배치기준), 제33조 제3항(초등학교 교원 배치기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다”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순차적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해야 한다.

2. 합리적 분쟁기구 설치방안

학교폭력 문제를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에게 모든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쟁조정 권한을 학교에서 분리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쟁기구를 학교 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 산하에 전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가해·피해학생과 그 부모,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등 사법관련 전문가, 관련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갈등해결센터 등)의 중재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이 중심이 되어 사안에 대해 판단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단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야 하고, 분쟁결과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정부정책의 방향 변화

정부부처의 정책 기조도 달라져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수적으로 늘리거나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일진학교 지정을 하는 등의 정책은 많은 예산 투여와 인력낭비만 초래할 수 있어 정책이 얻고자 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서 실질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구하길 바란다. 전문교사가 필요하다면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이 긴급한 학교부터 우선 파악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거친 후 단 1곳의 학교라도 책임자를 배치하여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500명, 1000명 늘리기 식의 배치는 전문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도 없을 뿐더러 학교 현장에서 기여하는 바도 크지 않다.

일진경보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태조사 결과나 정확하지 않은 지표 선정은 바탕으로 일진학교를 선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할 경우 정작 필요한 학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일진학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안을 숨기게 되고, 거짓결과를 통보하게 될 수도 있다. 생활기록부 기재도 학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재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경한 처분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서도 학교 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입시에 관련 업무로 이미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여기에 학교현장에서 폭력예방조치,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및 분쟁해결 등의 역할까지 담당하라고 하면 학교는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긴급조치에 대한 사항들만 제안해야 한다. 조치를 위한 기본정보도 교육과 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조치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심리치료를 하고 싶어도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에서는 학교에 대하여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없고, 학교폭력의 조기발견을 위해 학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정의 기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맞벌이로 힘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가해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즉,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 특별교육 이수시 직장에서의 연가처리 등을 마련해 준 상태에서 교육의무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신속한 개입을 위한 학교장 통고제 활용방안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숨기고 덮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럴 경우 학교폭력은 더 심각해지고 조직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에 학교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장통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⁶⁴⁾

학교장통고제도란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제도이다(소년법 제4조 3항). 통고를 받은 학생은 법원의 화해권고위원회, 심리상담전문가의 전문가진단 및 심리상담, 4주간의 소년분류심사 위탁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제도는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청소년범죄를 관련 기관종사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여 신고함으로써 비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1963년 처음 도입된 이래 잘 활용되지 않았지만 최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접수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 5건, 2008년 20건, 2009년 14건, 2010년 34건, 2011년 57건이 통고되었다.

통고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형사사건에 입건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데다 법원이 조기에 관여함으로써 격리, 보호처분 등의 과정을 한 달여 안에 마쳐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교장이 문제 학생을 ‘법원에 고발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통고제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학교장이 통고제도를 교권보호 차원에서 편향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인권 침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대안학교 등 공교육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통고제도 취지와 처분 결과를 보면 형사입건과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를 거치지 않아 수사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향후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전문가의 적절한 심리조사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고려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사실 인식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학교

64) 대법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자료집, 2012.5.21, 65면.

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기에 사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고제도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법원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통고처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절실하고, 통고에 적합한 유형과 적합하지 않은 유형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학교폭력예방법과 그 시행령에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학교장통고가 필요한 유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응하는 사건, 가해 또는 피해의 확인이 어려운 사안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통고처분의 목적이 절차의 신속화에 있으므로 그 절차 양식을 개선하여 빠르게 법원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현실과 괴리감 있는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조사관의 확충 등을 통해 법원이 대상소년에 대한 조사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5. 사법기관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엄정대응방안

학교폭력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하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가 필요하고, 사건을 무조건 훈방하는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에서도 구속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확하게 구속 여부가 판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경우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해학생이 절차 이원화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대부분이 사법절차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절차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검사와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각 사법기관별로 소년사건 판단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선택과 집중을 발휘하여 중대하고 피해가 심각한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확한 구속과 법원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범죄유형을 유형화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해 살인, 특수강간, 강간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중대하고 흉악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법원으로 보내고, 나머지 사안의 경우에는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자료의 수집이나 양형심리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형편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엄정한 처리를 위한 단기적 대응 방안들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우선,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위해 서면사과조치는 삭제하고, 징계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퇴학처분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초등생과 중등생의 퇴학처분에 상응하는 처분유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구조기금법에 의한 지원방안으로 모색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기관의 설치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방안도 언급하였다. 셋째, 전문상담교사 배치에 관하여 자격요건, 배치방법 등 법규정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학교내 분쟁조정에서 탈피하여 제3의 전문기구에 의한 분쟁조정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사건 개입과 정확한 처리를 위해 사법기관의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 대응방안은 단기간 내에 직접적이고 긴급한 대응방안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적 선도와 복지적 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정부와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별로 나열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을 정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인성이 주가 되는 교육으로 변화하도록 교육풍토도 바꾸어야 하고, 부모가 가정에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며, 학교가 학교이미지를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session 2

학교폭력 법제 및 대책

제 2 주제

외국의
학교폭력 법제 및
강력대응방안

❖ 발표 ❖

김대근 부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정한 전문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I.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 대응책의 필요성과 의의

1.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 대응책의 필요성

인류의 역사에서 폭력은 매우 오랜 역사적 기원을 갖는 행위 유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폭력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혹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다른 개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식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여러 문헌이나 오늘날 우리 주위의 여러 현상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폭력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폭력은 만연해있고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면, 일산생활 속에서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⁶⁵⁾ 특히 폭력은 학교와 같은 교육 공동체에서 심각한 병리적 현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집단 따돌림과 가혹행위 및 각종 유형력의 행사를 통한 학교 폭력은 피해학생의 신체와 재산은 물론 생명을 침해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학교라는 공동체가 갖는 본래의 이념과 존립목적을 훼손하면서, 더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최근까지도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중장기적인 대책들은 끊임 없이 논의되고 있고, 일부는 법정책으로 반영되어 시행되기도 한다.⁶⁶⁾ 문제는 최근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학교 폭력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지속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고 구조화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때문

65) 상세한 분석으로는 연성진 외, 한국사회 폭력문화의 구조화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참조.

66) 관련 연구로는 김은경 외,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 (I) -제 I 부 청소년비행 및 소년사법정책 현황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홍영오 외,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최영신 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I)-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승현 외, 소년원의 처우 방안에 대한 연구-8호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최인섭 외,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이순래,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등 참조.

에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실천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단기적이고 긴급한 대책만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과 의의는 여전하지만, 그러한 중장기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직면한 현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단기적이고 긴급한 처방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따돌림(bullying)에 대한 법정책의 의의

최근에 나타나는 학교폭력의 주요한 특징으로는 따돌림(bullying)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돌림과 학교폭력의 관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동법 제2조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1호)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통해 고통받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조차도 따돌림과 같은 행위가 일종의 폭력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동법 제2조 1의2호에서는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동법 제2조 1의3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미국의 입법례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작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특히 중요성을 갖는 접근 방식으로는 비교법적 접근 방식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과 같은 현상에 대한 인식과 통제는 전지구적 인식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보다 오랜 역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처하려고 했던 선진화된 외국의 법과 제도들이 곧 우리의 미래이자 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의 문제에 대한 외국의 법과 정책을 고찰하는 것은 보편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해결하는 유용한 지침이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2년 콜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따돌림이라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지아(Georgia)에서는 주(州)로는 처음으로 따돌림 법제를 통과시켰고, 점차 대부분의 주에서 따돌림 법제를 마련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각주의 따돌림 법제 현황과 특성을 통해 미국사회가 따돌림이라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각주에서 시행하는 따돌림 법제들은 2002년 중반 이후 매우 빠른 기간에 형성되었으며, 미국 내 기존의 법제와는 달리 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미국 주(州)법상 따돌림 법제의 현황

1. 미국 주(州)법상 따돌림 법제의 역사

(1) 법제의 시초

미국 내에서 학교폭력, 특히 따돌림이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첫 번째 사건은 2002년 리틀턴(Littleton)에 소재한 콜럼바인(Columbine)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이 총기 사건을 계기로 따돌림이 원인이었던 그 지역의 자

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서 조지아 주(州)는 따돌림 법제를 최초로 통과시키게 된다. 따돌림 예방을 위한 특성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의무를 학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주(州)법 이후로, 학교 현장에서의 따돌림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학교나 구역 단위로 따돌림 행위를 방지하는 정책들을 제정하는 새로운 입법이 주(州) 차원에서 급증하게 되었다.

(2) 법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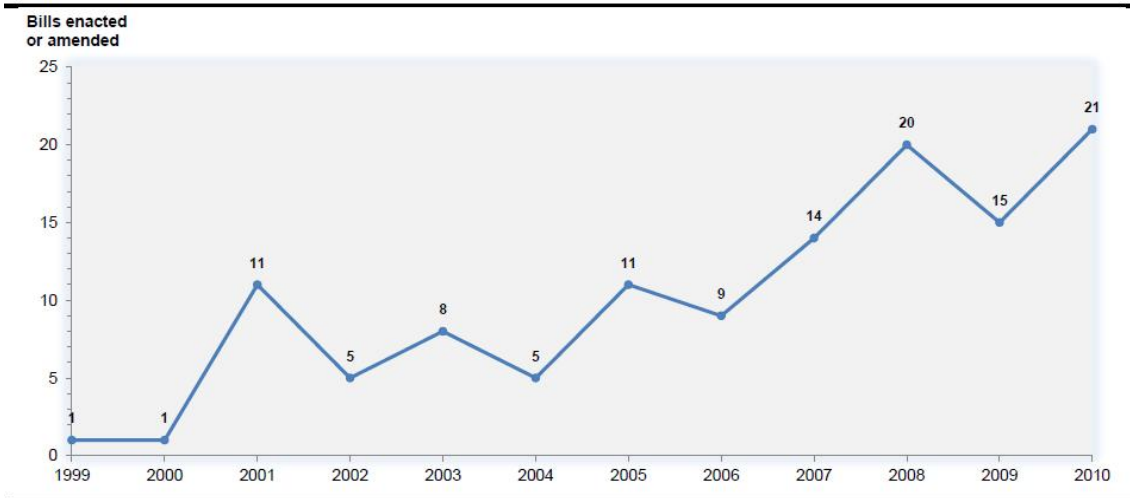
2011년 4월 현재, 미국 내 46개 주(州)가 따돌림 법을 제정하고 있다. 노스다코타(North Dakota)가 의회 법안 216 (*Assembly Bill 216*)을 통과시킨 가장 최근의 주(州)로서 법안은 2011년 4월에 법으로 통과되었다. 다만 하와이(Hawaii)⁶⁸, 미시건(Michigan), 몬타나(Montana), 그리고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는 따돌림 법이 없는 주(州)로서 각 주의 의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제정법이 없는 네 개의 주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46개 주가 학교 시스템 내의 따돌림을 퇴치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999~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주(州) 의회들은 각 주의 교육 현장 또는 형법전에 따돌림 법령을 도입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20개 이상의 법령을 제정했다. [그림 1]은 지난 11년 간 따돌림에 대한 입법이 증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21개 새로운 법안이 2010년에 통과되었고 2011년 4월 30일까지 8개 법안이 법으로 승인되었다. 2006년~2010년 4년 간 35개 주(州)가 사이버 따돌림(cyber bullying)에 관한 새로운 법을 교육법 또는 형법전 속에 제정했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문제 영역이 각각의 입법에 반영되기도 하는 등, 미국 내의 따돌림 법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67)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68) 하와이는 2011년 7월 11일 House Bill 688 제정을 통해 따돌림을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1999-2010 동안 제정된 따돌림 주(州) 법의 숫자



앞서 언급했듯이 2011년 4월 현재, 미국 내에서 공교육 시스템 속의 따돌림을 다루는 법을 제정하지 않은 유일한 주(州)는 하와이, 미시건, 몬타나 그리고 사우스다코타 이 네개이다. 이들 주에서 따돌림 법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따돌림 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히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의 핵심에는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기저에 있는데, 바로 성적 취향에 대한 명시적 보호를 포함시키는 문제와 주(州) 의회에 교육정책에 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그것이다. 이 문제들은 대체로 정책에 대한 주(州)의 통제권과 지역 통제권 사이에서 주(州)가 어떻게 균형적인 재량권을 형성할 것인지와, 특정 요소들을 관련 법속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따돌림(bullying)과 괴롭힘(harassment)의 용어 사용례

(1) 용어의 차용

1999년부터 제정된 대부분의 따돌림 법은 본래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는 집단을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시민권 법(civil rights legislation)을 모델로 삼았다. 따돌림 법을 만들 때 사용된 법률 용어들은 학대(harassment)에 관한 법규들에서 직접적으로 차용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⁹⁾ 이것은 금지되는 구성요건적

69)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행위 유형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며, 특히 “따돌림”과 “괴롭힘”은 법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안에서는 종종 대체적으로 혼용되고 있다.

괴롭힘은 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유발된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따돌림과는 구별된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괴롭힘은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따돌림의 하위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⁷⁰⁾ 인권 사무국(Department’s Office for Civil Rights; OCR)에 의해 시행된 연방 시민권 법(Federal civil rights laws)은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성차별을 금지하는 1972년 개정 교육법(Education Amendments of 1972) Title IX, 그리고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1973년 미국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Section 504과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Title II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금지하는 법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 용어 구별의 실천적 의의

따돌림과 괴롭힘의 법적 구별은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집행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잠재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교들은 따돌림과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정책과 절차들을 마련하도록 장려된다. 또는 학교가 법적 책임을 면책받기 위해서 해당 지역(district)으로 하여금 특정한 따돌림 사건을 조사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따돌림과 괴롭힘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형태로 발생한 따돌림 사건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법적 대처 방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학교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6일, 인권 사무국(OCR)은 Dear Colleague Letter를 통해 학교의 따돌림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행은 하나 이상의 연방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역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Letter는 “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또는 기회들에 참가하거나 이것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학생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정도로 괴롭히는 행위가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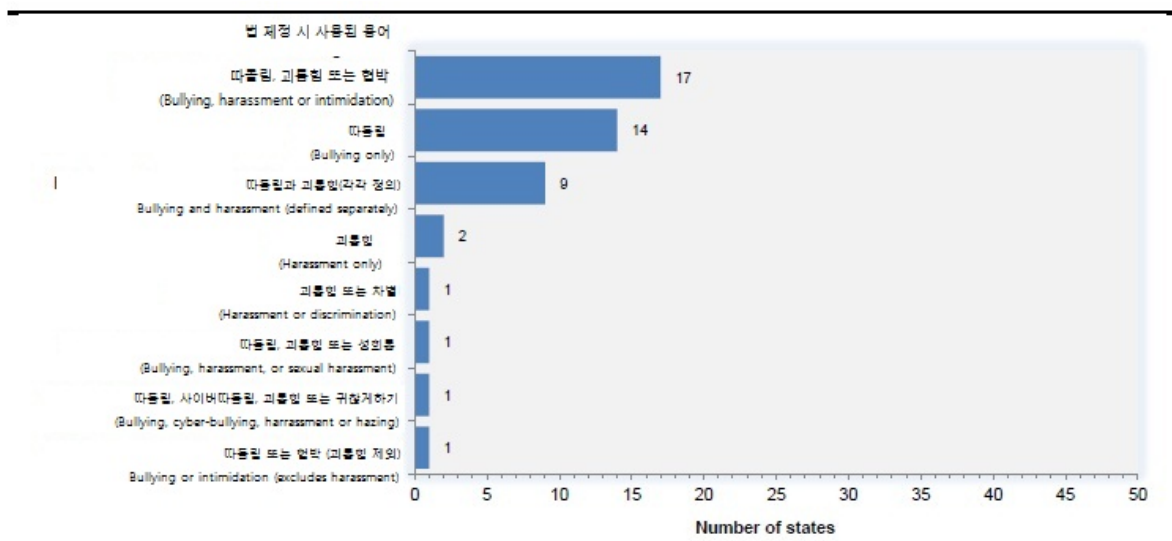
70) 이는 학교폭력의 하위개념으로서 따돌림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해있거나 또는 지속적이면 그 행위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한 괴롭힘이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또는 장애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은 OCR이 집행하고 있는 시민권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3) 주(州) 법에서 사용되는 따돌림과 괴롭힘의 빈도

따돌림 주(州) 법령을 통한 따돌림과 괴롭힘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된 관련 용어들이 따돌림 법의 체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 및 빈도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표 1>은 현재 17개의 주(州) 법이 법률을 제정할 때 “따돌림, 괴롭힘, 그리고 협박(intimidation)”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에서 “따돌림”만을 지칭하고 있는 주(州)는 14개인 반면, 따돌림에 대한 언급 없이 괴롭힘을 금지하는 주(州) 법은 2개이다. 다른 9개 주(州) 법은 금지하는 행위로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하나의 법률 안에서 모두 사용하지만 정의는 각각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 주(州)는 용어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하고 있는데,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과 폭행(hazing)과 같은 다른 형태의 행동을 유형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도 결국은 따돌림의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들에 의해 따돌림을 정의하는 방식과 학교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가 적용되는 방식이 각 주(州)와 학교 지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또한 법적 맥락에서,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해석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표 1> 따돌림 주(州) 법 제정 시 사용되는 용어와 그것을 사용하는 주(州)의 개수(n=46)



3. 재량의 권한에 따른 입법 모델의 범주화

주(州)의 입법 방식에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입법안에서 정책에 대한 지역의 통제권이 어느 영역에서 수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규정된 의무적 정책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모델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⁷¹⁾ 여기에는 따돌림 정책의 형성과 책임에 있어서 주(州)와 지역 간 통제권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차이들이 반영되어 있다.

(1) 정책 형성에 있어 의회의 통제권 (25개 주(州))

첫 번째 모델에서는 지역(districts)이 지역 정책을 형성하고 지역 내 따돌림 정책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규정해야 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러한 법들은 대체적으로 주(州) 입법 내에서 정책 형성에 대한 통제권을 중앙집권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학교들이 법적 요건들을 따르는 것을 도와줄 정책들이나 가이드라인을 주(州)의 교육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량이다. 여기에 속하는 법률들은 지역 정책에 규정된 요소들과 그 세부 사항에 따라 매우 다양해진다.

(2) 정책 형성에 있어 주(州) 교육기관의 통제권 (4개 주(州))

네바다(Nevada), 메인(Maine), 버지니아(Virginia), 워싱턴(Washington)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델은 주(州)에 통제권을 중앙집권화하지만 주(州)의 교육부에 한정하는 것이다. 법은 지역으로 하여금 주(州)가 만든 정책을 모델로 삼아 정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며, 주(州)의 교육부에 모델이 될 정책을 만들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들은 주(州)가 만드는 모델 정책이나 지역들이 만들 정책 내용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요건들을 명시하지 않는다.

(3) 정책 형성에 대한 의회 통제권과 주(州) 교육기관 통제권의 혼합 (6개 주(州))

세 번째 모델은 지역들이 의회의 조건들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되 정책 조항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 재량권을 지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들은 정책 기준을 설정할 때 주(州)가 만드는 모델 정책 보다 훨씬 확대된 역할을 규정한다. 예

71) 자세한 내용은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alysis of State Bullying Laws and Policies, 2011, p.19 이하 참조.

컨대 3개의 주에서는 주(州) 교육부가 주(州)의 모델 정책을 만들고 반드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조항들을 서술한다. 그리고 지역은 주(州)의 모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다른 한 주(州)는 지역들이 자신들의 정책 속에서 특정 입법 조항을 다루도록 요구하면서 주(州)가 만든 모델을 채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른 주의 법은 지역 정책과 주(州)의 모델 정책 속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들만 서술한다.

(4) 정책 형성에 대한 지역의 재량권과 통제권 (11개 주(州))

마지막 모델은 지역이 해당 지역의 정책을 만들도록 하면서 또한 정책 형성에 대한 재량권을 지역에 배분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법들은 주(州) 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주(州) 차원의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요구하여 정책 개발에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10개 주는 지역으로 하여금 따돌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지만 조항이나 내용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위스콘신(Wisconsin)은 정책 형성을 지역에게 요구하고 주(州) 모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하여금 모델 정책을 채택할 의무를 설정하지는 않는다.

주(州)와 지역의 통제권 균형 문제에 접근하는 주들의 다양한 입법 방식을 통해 교육 정책 개발에 있어 주(州)가 담당해야 할 적절한 역할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주(州) 입법 속에 반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방식들은 또한 지역과 주들에 걸쳐 나타나는 따돌림 법과 정책의 시행 방식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

Ⅲ. 구성요건적 행위의 유형화

1. 서설

금지되는 행위는 따돌림이 법과 정책 속에서 정의되는 방식과 금지되는 유형의 행동 및 조건들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규정되고 있다. 법에서 따돌림이 정의되는 방식은 학교 공동체에서 관련 행위가 어떻게 간주되는지, 그리고 따돌림이 발생하는 상황을 교직원과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느 정도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따돌림에 대한 명백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교원 및 직원들이 인지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비일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²⁾

2. 각 주의 현황

(1) 권한의 배분

43개 주 법이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채택할지 여부는 지역 학군 정책의 재량이다. 아리조나(Arizona), 미네소타(Minnesota), 위스콘신(Wisconsin)의 3개 주는 그들의 주 법 속에서 따돌림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지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대신 주 법은 모델이 되는 따돌림 정책을 개발할 의무를 주 교육기관에 부여하거나 지역 스스로 정책을 만들 의무를 지역 학군에 부여하는 방법으로 따돌림을 정의하는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한다. 예를 들어 위스콘신에서는 지역 학군들마다 각자 정의를 채택하고 그것을 정책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아리조나는 어떠한 법령 속에서도 따돌림 행위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역 정책 속에 어떤 형태로든 정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지도 않는다.

(2) 개념의 사용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따돌림의 개념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를 요건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1의 2) 이와 같은 표현은 미국 내 많은 주의 따돌림 법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들의 개념 정의 속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용어들과 문구들이 많지만, 어떠한 정의도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주 법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문자를 사용하는) 특정 행동에 주목하지만, 어떤 주는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에 주목하기도 한다. 다른 주는 피해학생이 받은 피해의 정도와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 많은 주들이 다원적 요소들을 고려하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법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삽입되기도 하는 사소한 용어가 행동과 상황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상당히 변화

72) Swearer, Limber & Alley,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n Effective Anti-Bullying Policy”, In *Bullying Prevention and Intervention: Realistic Strategies for Schools*, The Guilford Press, 2009

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 “신체적”, “공공연한”, 또는 “반복된”과 같은 용어의 포함)

비록 정의는 다양하지만, 많은 주 법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용어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따돌림의 정도가 충분히 심각하여 그것이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은 21개 주 법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15개 주가 “상식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이라는 법 개념을 수용하며, 이것은 관찰된 행동이 따돌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상대적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각각의 표현들은 연방 시민권 법에서 차용한 것들이다.⁷³⁾

(3) 개념에서 피해자 측면을 고려하는 정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따돌림의 요건으로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를 요건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개념의 한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따돌림 행위를 사실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묘사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근거한 정의를 따르는 주는 절반이 채 안 된다. 우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처럼 14개 주에서는 따돌림에 대한 법적 정의를 지속적이고, 만연해있으며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으로 제한한다. 법적으로 따돌림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행동에 힘의 불균형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주는 존재하지 않다. 몇몇 주가 각각의 따돌림 법과 모델 정책 속에 이 개념을 수용하고 있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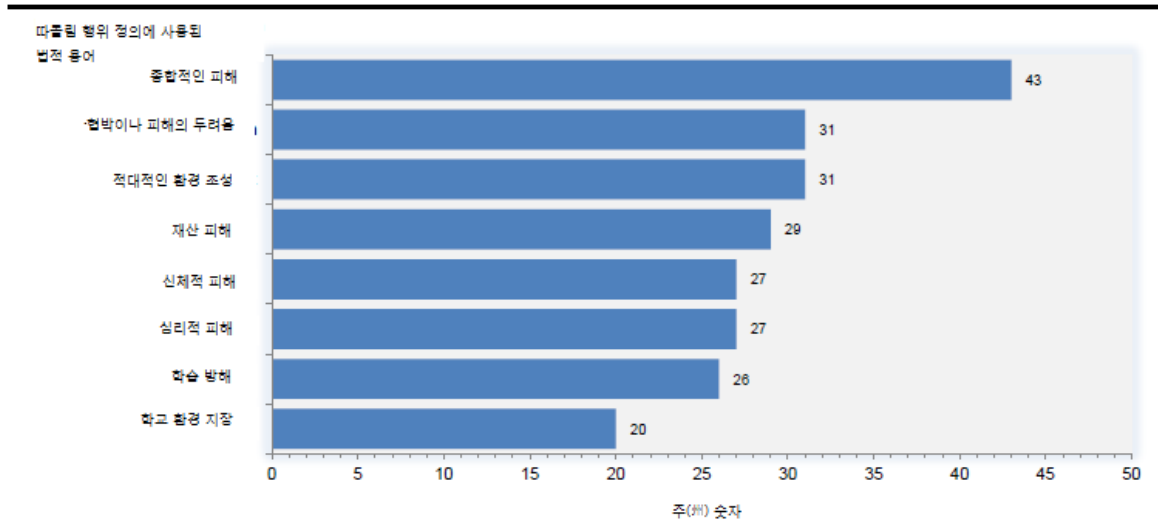
다만 우리 법에서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체적 혹은 심리적 공격이라고 함으로써, 지속성과 반복성의 요건이 피해자의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은 흥미롭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따돌림 법이 따돌림 행위의 의도적 배경과 목표가 된 피해학생에게 유발된 유해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 정의를 따르고 있다. <표 2>는 따돌림이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들을 확인하는 내용 중 주 법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이 따돌림의 행태는 “종합적인 피해”, “피해의 공포에 대한 위협”, “신체적 피해” 또는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정의하는 것이다. “학교 환경에 지장을 주는”, “학습을 방해하는”, 또는 “심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묘사하는 법제도 찾아볼 수 있다.

73) Green & Ross, “The Nature, Scope, and Utility of Formal Laws and Regulations that Prohibit School-Based Bullying and Harassment.” *Persistently Safe Schools 2005*. The National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5

(4) 관계적 측면에 대한 피해의 강조

초기 법에서 채택된 따돌림의 정의는 주로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행동에 주목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각 주의 따돌림 법이 사회적 또는 관계적 공격의 형태까지 담아낼 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란 점에도 주목한다.⁷⁴⁾ 관계적 공격은 한 사람의 자존심이나 사회적 명성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공격은 보통 다른 학생의 교우 관계나 사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훼손하기 위해 이루어진다.⁷⁵⁾ 결과적으로 29개 주가 따돌림을 관계적 공격을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8개 주는 따돌림 행위를 신체적 행동이나 언어적 행동으로 분명하게 제한하고 있다.⁷⁶⁾ 법 체계가 계속 수정되면서, 많은 주의 정의가 직·간접적 행위라는 보다 넓은 범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이러한 확장의 일환으로 몸짓, 소문 퍼트리기 또는 관계적 공격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사회적 배제 행위를 포함하게 된다. 현재 29개 주가 관계적 공격까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많은 주가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표 2〉 따돌림 행위와 관련 피해를 정의하는데 사용된 주의 따돌림 법 용어(n=46)



74) Temkin, "Addressing Social Aggression in State Anti-bullying Policies." *Perspectives on Urban Education*, 2011.3. <http://www.urbanedjourna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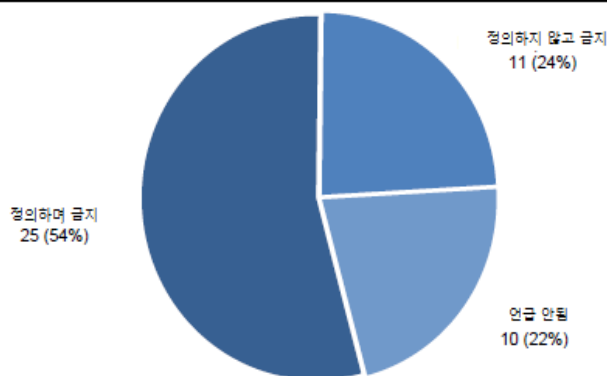
75) Swearer, "Relational Aggression: Not Just a Female Issu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pp.611~616

76) 미주리 주 법은 따돌림을 신체적 공격 행위로서 정의하는, 구체적으로 말해 "일반 학생에게 그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재산상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협박이나 괴롭힘"으로 정의하는 법의 한 사례이다. (Mo. Rev. Stat. §160.775.1)

(5)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사이버 따돌림 행위 및 그러한 행위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문제들의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 간의 사이버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많아졌다. <그림 3>에서 보듯이, 36개 주 법이 현재 사이버 따돌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5개 주가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주는 12개인 반면 다른 주들은 다양한 관련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전자통신, 괴롭히는 연락, 전자 행위, 전자통신 상의 괴롭힘, 전자수단 사용 또는 데이터나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언급한다.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이버 따돌림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것으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라고 함으로써 한정적 열거를 통해 정보통신기기를 포괄하여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법적용의 측면에서 차별화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림 3] 사이버 따돌림 혹은 전기통신 상에서의 따돌림 행위를 다루는 주 법(n=46)



IV. 따돌림의 범직화 추세

1. 서설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형사벌로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만이 존재한다. 동법 제21조 제1항은 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그 주체는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며, 또한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혹은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청소년들이 대부분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을 비밀누설이라는 입법의 취지와는 다른 생뚱한 법익침해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작 따돌림과 같은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격의 주체가 여전히 형사처벌로부터 자유롭고⁷⁷⁾, 심지어 이를 방관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차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다루는데 있어 이에 대처하는 최근의 미국 내 주(州) 입법과 정책은 법 집행과 형사사법제도의 확대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청소년 따돌림에 대한 권한은 거의 학교 시스템의 영역에 거의 독점적으로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따돌림의 결과와 파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최근의 입법에서는 매우 심각한 형태의 따돌림 형태를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증가하는 따돌림 주(州) 법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주(州) 법들은 학교로 하여금 형사 불법에 해당할 수도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7개의 주(州) 법이 형사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따돌림 행동에 대해서 학교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법 집행기관에 침해 사례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절차들을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따돌림 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주리(Missouri)의 주(州) 법은 보고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교직원들을 제재해야 하는 의무를 학교에 부여한다.⁷⁸⁾

2. 각 주의 현황

또한 따돌림 조항을 형사법과 소년 사법에 편입시키는 주(州)들도 증가하는 추세

77) 다만 동법에 따르면 제17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능하다. 그 내용으로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이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8) Mo. Rev. Stat. §167.117.1

이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는 최근 사이버 따돌림을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범죄로서 처벌가능한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⁷⁹⁾ 아이다호(Idaho)의 따돌림 법의 핵심 부분은 주(州) 형법 Title 18에 포함된다. 이 법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괴롭힘, 협박 그리고 따돌림에 대한 정의와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테크놀로지(즉, 일반전화, 카폰, 무선 전화 또는 컴퓨터,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 가능한 정보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사용이 개입된 따돌림도 포함한다. 이 법은 “이 부분의 조항을 개인적으로 침해하는 어떠한 학생도 위법하다.”라고 선언한다.⁸⁰⁾ 켄터기(Kentucky)에서는 Golden Rule Act라고 알려진 핵심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켄터키의 교육법 조항을 수정하면서 “괴롭히는 행위(harassing behavior)”와 “괴롭히는 의사소통(harassing communications)”과 관련된 형사법을 규정하고 있다.⁸¹⁾ 버지니아(Virginia)는 최근 매우 심각한 형태의 따돌림에 대해서 \$2500의 벌금형과 최고 1년 형에 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입법에 대해 고려한 바 있다.

3. 사례

따돌림 행위를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소송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주(州)에서는 따돌림 행위가 한 소녀의 자살에 일조했다는 혐의로 5명의 학생이 주(州) 형사 법원에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폭행, 범죄적 괴롭힘, 그리고 시민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⁸²⁾ 5명의 학생은 보호관찰과 지역 내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게 되었다. 이 소송사건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비행에 의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최초의 따돌림 사건으로써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⁸³⁾ 2010) 이 사건의 법적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였고, 특히 당시 매사추세츠에 등록된 유권자의 61퍼센트가 학교 내 따돌림을 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 열렬하게 찬성했다.

79) N. C. Gen. Stat. §14-458.1

80) Idaho Code §18-917A

81) Ky. Rev. Stat. Ann §158.444

82) Khadaroo, “Phoebe Prince bullies sentenced, but how do they make things right?” 2011, CS Monitor.com

83) Echholm & Zezima, “6 Teenagers Are Charged After Classmate’s Suicide.” <http://www.nytimes.com> 2011.5

V. 교육과 예방

1. 총체적 접근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제1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제2항),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4항).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과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학교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갖는 것이다.

미국 내 교육과 예방 요소들에서도 다양한 범위의 조항들을 망라하고 있다. 여기에도 우리 법제의 경우와 유사하게 따돌림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직원들에게 교육시키는 전문적인 활동, 학생들을 위한 따돌림 교육 또는 인지 프로그램, 그리고 따돌림 및 괴롭힘과 관련하여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교육과 예방 요소들을 법제화함에 있어 주(州)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州) 법은 지역 학군의 따돌림 정책들의 한 요소로서 교직원 교육이 전문성을 갖출 것을 요청하거나 장려한다. 예방 측면에서 주(州) 법은 지역 학군 정책의 일환으로서 예방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것을 해당 학군에게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며, 어떤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나 대책 위원회에 예방 정책에 대한 권한을 이전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따돌림 법에서는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를 상대로 한 예방 교육 또는 교육 조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의 활성화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있다. 먼저 동법 제7조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이하에서는 대책위원회의 구성(제8조)과 설치(제9조), 기능(제10조)을 규정한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두며(제10조의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둔다(제12조).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 내 10개의 주(州)에서는 학교 내 따돌림 문제를 검토하고 따돌림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 학군으로 하여금 지역의 예방 대책 위원회나 안전한 학교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각각의 법령들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의무들로는 예컨대, 따돌림의 확산을 감시하는 것, 교직원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 학교 중심의 예방 및 개입 전략을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포함된다. 지역 대책 위원회의 형성은 6개의 주(州)에서 의무화되었고 4개 주(州)에서 권고되었다.

3. 교육 프로그램의 권고 및 예산

(1) 교육 프로그램의 규정

연구에 따르면 교직원이 대개 따돌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이 부족하며, 그에 따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⁸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제1항에서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25개 주(州)가 따돌림 정책에 대해 직원들을 교육하고, 지속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지역 학군들에

84) Allen, "A Bullying Intervention System: reducing Risk and Creating Support for Aggressive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54(3), 2010, pp.199-209

게 요구한다. 다른 8개 주(州) 법에는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또는 인지 프로그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州)들 중에서 20개 주(州)가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11개 주(州)는 예방 권고 사항에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래는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특성화 사례들이다.

- 메릴랜드(Maryland)의 따돌림 법에서는 교육 위원회에 학생, 직원, 자원자 그리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따돌림, 괴롭힘 그리고 협박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⁸⁵⁾
- 뉴햄프셔(New Hampshire) 주(州) 법에서는 각 지역 학군에 학생들과 가정을 대상으로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의 방지, 구별, 이에 대한 대응 그리고 사건 신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⁸⁶⁾

(2) 예산의 법적 근거의 명시화

한편 오직 세 개의 주(州)만이 법 속에서 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의 출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주(州)들은 예산 문제를 규정하지 않거나, 사용가능한 기금이 마련될 때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산 문제는 따돌림 주(州) 법 속에서 예산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부분에 특히 비판이 제기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4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VI.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감시체계

1. 감시와 신고의 어려움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 및 폭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범위, 성질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⁸⁷⁾

85) *Md. Code Ann., Educ.* ¶7-424.1

86) *N.H. Rev. Stat. Ann.* ¶193-F:5

87) Nieman, *Crime, Violence, Discipline, and Safety in U.S. Public Schools: Findings From the*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등에 대한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제19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라도 이를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을 의무화하거나(제20조 제1항),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지만,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4항).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면이 있다. 이를 이러한 의무를 강제할 법적 조치가 동법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감시와 신고가 예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할 방법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와 같이 학교 내 따돌림의 정확한 감시와 신고를 하는 문제는 미국 내 주(州)와 지역 학군의 경우에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 비록 1965년 개정 초등 및 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65*)에 따라 주(州)는 위협(예, 따돌림)이나 폭력적 행동에 따른 정학과 퇴학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따돌림 관련 사건을 독자적으로 분리해서 파악하기에 그저 정보를 알게하는 정도로는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2. 입법 현황

최근 16개 주(州)에서는 지역 학군에서 발생한 따돌림 사건 관련 데이터를 주(州) 교육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주(州)에서도 주(州) 위원회가 공개적으로 게재하거나 주(州) 의회에 보고해야 할 공식 보고서에 지역 학군에서 발생한 따돌림 사건 관련 데이터를 함께 게재하거나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오직 두 개 주(州)만이 지역 학군에서 발생한 관련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다룰 것을 요한다. 예컨대, 오하이오(Ohio) 주(州)는 지역 학군 사무소가 보고된 사건에 대한 서면 요약서를 모아 학교 이사회 웹사이트에 공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학교 위원회에 관련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⁸⁸⁾

School Survey on Crime and Safety: 2009-10(NCES 2011-320).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88) Ohio Rev. Code Ann. §3313.666

플로리다(Florida)를 제외하고는 사건 보고서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데 사용될 관련 데이터 요소들이나 데이터 보고 절차를 명확히 나타내는 구체적 절차를 담은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플로리다의 지역 학군의 따돌림 정책들은 학교 안전과 규율 보고의 한 부분으로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보고 절차를 채택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해당 학군들에게 훈육과 위탁 조치를 포함하여 개별 사건들 및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심지어 보고서는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사건들에 대한 데이터 조차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데, 이를 통해 개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법은 보고서에 담긴 정보를 집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며, 이를 지역 학군의 사건 보고 의무 준수 및 안전한 학교 기금의 분배와 연결시킨다.⁸⁹⁾

한편 메릴랜드(Maryland)는 주(州)의 교육부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여 사건과 발생 장소를 기술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의 신체 상해, 사건으로 인해 초래된 결석 횟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요청되는 것들을 서류화하는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이 보고서 양식은 각 공립학교에 분배되며 학교들은 반드시 이 양식으로 교육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 위원회는 주(州) 위원회에 수집된 자료 요약집을 연례로 제공한다.⁹⁰⁾

VII. 다른 구제절차의 가능성

1. 서설

학교는 학생들이 교내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을 하는 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을 보장하고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인 따돌림과 괴롭힘을 경험한다면, 교직원과 교육 위원회에게 예측 가능했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으며 주(州) 법 또는 연방 법 아래에서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⁹¹⁾

89) Fla. Stat. Ann. §1006.147

90) Md. Code. Ann., Educ. §7-424

91) Hutton & Bailey, "School Policies and Legal Issues Supporting Safe Schools" The National

2. 시민권법에 따른 책임

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법적 소송은 인종, 국적, 성별 또는 장애를 근거로 차별받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연방 시민권 법 하 괴롭힘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⁹²⁾ *Davis v. Monroe County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의 미 대법원은 연방 기금을 받는 학교는 급우의 괴롭힘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만약 괴롭힘이 매우 “극심하고, 만영해 있으며 객관적으로 모욕적”이어서 교육적 기회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희생자로부터 박탈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또한 학교가 사실상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고의적으로 무관심”했다면 학교는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Davis* 사례는 1972년 개정 교육법(*Educational Amendment of 1972*)의 Title IX를 침해하는 동급생 간 성희롱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1964년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Title VI를 침해하는 인종, 피부색, 국적에 근거한 괴롭힘이 연관된 사건들,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Title II과 1973년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의 Section 504를 침해하는 장애에 근거한 괴롭힘이 연관된 사건들에 적용되었다.⁹³⁾ 이처럼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따돌림 현상이 우리 학교의 현실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도 시급한 편이다.⁹⁴⁾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6조의 2 제1항에서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장애에 근거한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불법행위 책임

Davis 판결은 지역 학군으로 하여금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문제에 대해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의를 다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

Conference of Hamilton Fish Institute on School and Community Violence, 2007

92)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147-190

93) Sacks & Salem, “Victims Without Legal Remedies: Why Kids Needs Schools to Develop Comprehensive Anti-bullying Policies,” *Albany Law Review*, 72(3), 2009, pp.147-190

94) 예를 들어 동아일보, “변기 빠뜨린 과자 먹이고 인간장난감 취급-학교폭력에 두배 세배 명드는 장애학생들”, 2012. 2.1 참조.

다. 연방 시민권 법에 적용되는 소송뿐만 아니라, 따돌림의 희생자들은 주(州)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돌림이 피해자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러한 소송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과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4. 다른 법과의 충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제1항). 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의 구제를 충분히 하려는 조항은 아니다. 관련 문제에 있어서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그 당해 법률이 먼저 적용되고, 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적용되는 다른 법률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동법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관련 문제가 성폭력일 경우에는 관련 법을 적용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아예 배제된다.(제2항)

18개 주(州)의 따돌림 입법에서는 주(州)의 따돌림 법에 의해 희생자들이 개인이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주(州) 법 상의 이러한 보장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배상 권리”란 제목이 붙여지며 여러 주(州)들에 걸쳐 그 용어가 상당부분 일치한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의 따돌림 법은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다른 어떠한 이용 가능한 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⁹⁵⁾ 이와 유사하게, 피해자 배상을 다루는 오레곤(Oregon) 법에서는 법이 “괴롭힘, 위협 또는 따돌림의 피해자 혹은 사이버따돌림의 피해자가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다른 이용 가능한 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관련 조문들은 “어떠한 불법행위 책임을 형성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또는 “법으로 정한 어떠한 소송 사유를 만들지 않는다”고 종종

95) N.C. Gen. Stat. §115C-407.18

표현되는데 이것은 따돌림 정책 시행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학군들에게 전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⁹⁶⁾

Ⅷ. 미국 주(州)법상 따돌림 법제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2002년의 콜럼바인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 학교 폭력 특히 따돌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경우,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을 규제하는 통일된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주에서 따돌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돌림과 같은 용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부터 규제의 권한을 누구에게 얼마큼 배분할 것인지, 또한 따돌림의 당사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대우할 것인지, 보다 궁극적으로는 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입법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주마다 특색있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은 따돌림 관련 법제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각주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에서는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돌림 행위가 한 소녀의 자살에 일조했다는 혐의로 5명의 학생이 주(州) 형사 법원에 기소된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폭행, 범죄적 괴롭힘, 그리고 시민법 위반 등 다수의 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과적으로 5명의 학생 전원이 보호관찰과 지역 내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사회에서도 따돌림과 같은 학교 폭력을 형사처벌화하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고,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추후 미국의 각주에서 어떠한 입법적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지금의 추세를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입법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96) *R.I. Gen. Laws* §16-21-26

I. 들어가는 말

학교폭력이란 학생 사이, 학생과 교사, 학교외부사람과 학생 내지는 교사 사이의 육체적·정신적 폭력 및 공공소유물이나 개인소유물에 대한 폭력을 말하며, 또한 학교에서 폭력의 특별한 형태로 집단따돌림이 있다.⁹⁷⁾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각 경우를 구분해서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폭행에 대해, 외국에서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주목할 만한 단기적 강력처벌인 소년구금제도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처방안인 학교경찰배치제를 살펴보고, 이 중 우리 법제도에 도입될 만한 것이 있는 지 검토한 후,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이 후에 논의될 대처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과열되고 흥포화된 학교폭력을 일단 진정시킴과 동시에 증장기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II. 소년구금제도

1. 미국의 소년병영캠프(Juvenile Boot Camp Program)

병영캠프란 미국해병대 신병훈련소에서 필요로 하는 병사를 육성할 목적으로 집단 관리적인 환경에서 심리적·육체적 압박을 가하여 군대경험이 없는 신병을 단기간 집중 훈련시키는 교육훈련이다. 이러한 병영캠프 훈련방식을 교정처우에 응용하여 범죄자의 심신을 단련·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이 교정에 있어서의 병영캠프이다. 수용되는 소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소년 병영캠프는 주로 심각하지 않은 폭력범죄로 기소돼 구금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83

97) http://de.wikipedia.org/wiki/Gewalt_an_Schulen

년 조지아주 교정국에서 처음 시행하였고, 199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수용대 상선발은 주마다 방식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법관의 선고나 교정당국의 명령으로 시행하나, **보호관찰기관에서 결정하는 주도 있으며**, 각각의 시설은 법원이 민간연구기관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병영캠프의 특징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집단으로 단기집중적인 처우를 한다는 것이다. 소년병영캠프프로그램의 내용은 각 시설마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일 3.5시간의 집단 행동훈련과 체력훈련, 7시간 정도의 교육과 치료적인 활동으로 구성되며, 시설에 따라서는 직업훈련도 시행되고 있다. 소년병영캠프의 시행은 비행성 정도가 심한 소년과 그렇지 않은 소년을 분리하여 소년의 비행성 정도에 따른 처우를 가능토록 하고자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캠프는 90일을 기본 수용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90일간의 시설내처우가 종료되면, 소년은 6~9월에 해당하는 집중보호관찰을 받는다. 기본이 되는 90일간의 수용기간은 시설 내 훈련으로, 이 기간 동안 수용된 소년들은 제복을 착용하며, 군대식의 규율아래, 집단행동 훈련, 체육훈련, 교과교육, 카운슬링, 생활기능훈련 등을 받는다.⁹⁸⁾ 이러한 소년병영캠프프로그램은 미국의 여러 주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 독일의 소년구금처분

소년구금(Jugendarrest)은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JGG)에 따른 교육조치이며, 처벌받아야 하는 청소년들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단기자유박탈을 통해서 제재에 이용된다.⁹⁹⁾ 소년구금처분은 단기자유박탈처분으로 징계처분의 영역에 해당하며, 최저 2일에서 최장 4주간의 기간에 달한다.¹⁰⁰⁾ 징계처분은 처벌체계상 교육처분과 소년형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년형의 선고를 반드시 요하지 아니하면서, 소년의 불법을 엄중히 각성시킬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된다.¹⁰¹⁾ 이러한 징계처분은 형벌의 법효과를 가지지 않는다.¹⁰²⁾ 소년구금은 소년의

98)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08, 140면

99)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ueu.html>

100)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01)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08, 143면

102)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13조 3항

명예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범한 불법에 대해 자기각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집행은 교육적으로 구성되고 범행에 빠지게 만든 곤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년을 지원해야만 한다.¹⁰³⁾

소년구금처분은 법관의 명령에 의해 실행되며, 집행이 지체되면 행위와 형사제재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처분의 효과가 저해되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면 곧바로 집행하여야 한다¹⁰⁴⁾. 다시 말해 소년구금에서는 신속성원칙이 특히 중요하다.

소년구금에는 3가지 유형, 즉 휴일구금·단기구금·장기구금이 있다.¹⁰⁵⁾ 휴일구금은 매주 휴일에 집행되며, 한 주말 또는 두 주말에 걸쳐 부과될 수 있다.¹⁰⁶⁾ 1회 휴일은 48시간에 해당하고, 휴일구금은 금요일 13시에서 16시 사이에 개시된다.¹⁰⁷⁾ 휴일구금은 과실로 인한 경죄와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고의의 경죄에 대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이 구금의 취지는 피구금소년에게 근무시간이나 학교수업시간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 구금으로 인한 곤경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단기구금은 휴일구금에 대한 대체구금으로서, 교육적인 이유, 직장 또는 직업교육이 방해받지 않도록 휴가나 방학을 활용할 수 있게 한 형태의 구금이다.¹⁰⁸⁾ 1회의 휴일구금은 48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단기구금기간은 2일이며, 구금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10시에서 13시 사이에 개시된다¹⁰⁹⁾. 장기구금은 휴일구금에 비해 불법의 정도가 큰 범죄에 적용되며, 최저 1주일에서 최고 4주간에 해당하는 일 또는 주일 단위로 부과된다¹¹⁰⁾. 휴일구금과 2일 이하의 단기구금은 휴일구금소(Freizeitarreststrafe)에서, 장기구금과 2일을 초과하는 단기구금은 소년구금시설(Jugendarrestanstalten)에서 집행된다.

소년구금 종료 4~5년 후에 조사된 재범률은 약 60~70%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¹¹¹⁾ 이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목표실현과 제기되는 여러 비판에도, 소년구금은 독일 소년형사사법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3) 동법 제90조 1항

104) 독일 소년구금집행령(Jugendarrestvollzugsordnung) 제4조

105)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16조 1항

106) 동법 제16조 2항

107)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08)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16조 3항

109)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org.html>

110)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제16조 4항

111)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08, 153면

독일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은 단지 구금 또는 보안처분이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독일연방상원(참의원)은 이른 바 경고사격구금(Warnschuss-arrest), 즉 소년구금에 최대 4주간의 보안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방대통령의 서명과 연방법령관보의 공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¹¹²⁾ 이것은 학교폭력이 단순한 징계처분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결정으로 보인다.

3. 한국의 8호처분

소년법 제32조 1항 8호의 8호처분은 비행초기단계의 소년에게 소년원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집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받게 함으로써, 그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해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즉, 이것은 초범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소년에게 짧은 기간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비행행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단기집중교육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한다. 8호처분은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내처우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대부분 5호의 장기보호관찰과 병합된다는 점에서 사회내처우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8호처분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 양자의 성격을 모두 띄고 있는 “혼합처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¹³⁾

4. 소결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년병영캠프는 병영캠프에서 직원이 수형자를 질책하는 등의 지도방법 등을 사용하고, 수형자는 이에 절대복종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결국 수형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범죄자의 개선과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의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또한 8호처분은 소년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개월의 송치로 인해 대상소년이

112)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2/04/2012-04-18%20warnschussarrest.html>

113) 참조: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비행을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수용됨으로써 소년 스스로 위축감을 느껴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의 낙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관리는 사법기관이 하되 운영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8호처분은 1개월 이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장기보호관찰인 5호처분과 병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8호처분만을 단독으로 받는 경우, 분류·이송·신입자 교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15일 정도의 기간 동안 비행예방프로그램 6개, 집단상담프로그램 7개, 체험교육프로그램 8개, 교양교육프로그램 3개 등 총 24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을 받는 소년의 입장에서 교육 또는 개선의 효과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8호처분은 인성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인은 8호처분의 대안으로 독일의 변형된 소년구금제도를 제안한다. 독일과 같이 비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단계화하여, 구금 기간이 짧은 휴일구금과 단기구금의 경우에는 노동봉사 명령을 내리고, 장기구금인 경우에만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된다.

III. 학교경찰배치제

1. 미국의 학교경찰

미국에서의 학교폭력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급증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수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과 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학교경찰제도(School-police partnership)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학교경찰관이 학교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학교폭력이나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¹⁴⁾.

미국의 학교경찰의 모델은 일반적으로 4가지, 즉 학교경찰관 배치모델, 학교경찰관서 설치모델, 민간경비원 활용모델, 학교담당경찰관 모델로 나누어진다. 학교와

114) Kipper, B. (1996), Law Enforcement's role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Police Chief, 63, 26-29.

경찰은 어느 모델의 경우를 선택하든지 반드시 학교경찰관의 임무와 역할 및 상황 대처방식에 대한 ‘협약서(Protocol)’이나 ‘양해(합의)각서(MOU 또는 MOA)’를 체결해야 한다. 학교경찰관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경찰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학교경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¹¹⁵⁾은 연방정부 측에서 학교경찰제도를 재정적 및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의회는 1994년 ‘학교안전법(Safe School Act)’을 통과시켰으며, 범죄율이나 폭력발생율이 높은 학교 위주로 연방정부 교부금이 지원된다. 그 밖에 주정부 측에서도 학교 경찰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¹¹⁶⁾

그러나 학교경찰이나 학교안전요원들은 학교운영진의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의 교권이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학교경찰요원의 임무를 학생과 교사의 정당한 안전 확보에 국한하도록 하여, 월권적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등, 학교경찰의 민주적 책임 및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 학교경찰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독일의 학교경찰제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및 외부인의 학교 침입사건에 대한 고강도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에 민간경비 또는 경찰을 배치하는 “학교경찰제”를 시행하였다. 학교 경찰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로 베를린시에 있는 노이쾰른(Neukoelln)구의 “학교경비용역제”와 함부르크시의 “학교경찰배치제”를 들 수 있다.

1) 학교경비용역제

베를린시 노이쾰른(Neukoelln)구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학생과 교사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Ein-Euro-Job’¹¹⁷⁾인력을 학교경비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었다. 이에 노이쾰른구의 구청장 Heinz Buschkowsky는 관내의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경비용역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¹¹⁸⁾.

115) Cohen, H. (2004, October 19). Private school rethink security, The Miami Herald, P. 1A.

116) Tran, Q (2004.04.14). Police boast presence at schools, Arizona Republic, B1.

117)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 및 장기실업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118)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1, 2007.

학교별로 배치되는 민간경비용역은 근무시간동안 휴대전화를 소지하며, 무기는 소지 할 수 없다. 민간경비용역의 역할로는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통제, 교사와 약속이 있는 외부인 또는 학부모가 방문할 시 행정실까지의 동행, 학교 운동장과 교내 건물 수시순찰, 쉬는 시간 교문통제 등이 있다. 그리고 교내에서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범죄가 발생할 시 즉시 경찰에 알리는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학생 및 외부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¹¹⁹⁾.

민간경비용역회사인 “germania”와 계약을 체결한 노이퀼른구는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학교들에게 먼저 학교에 있는 학교협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노이퀼른구에 소재한 총76개교 중 13개교에 20명의 학교경비용역을 투입하여 학교출입통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시범사업의 종료시점인 2008년 7월 이후부터는 3개교가 추가로 참여하여 16개교에서 학교경비용역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2) 학교경찰배치제

‘학교경찰배치제’는 학교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에는 함부르크시가 도입한 “Cop4U”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청소년범죄대처방안의 10대 전략개념 중 하나로 “Cop4U”프로그램이 선정되어 강화되었다¹²⁰⁾. 이른바 “Cop4U”(cop for you)는 학교에게 경찰이 고정적으로 배당되고, 경찰권한의 범주 안에서 경찰은 첫 번째 상담자로서 활동한다. Cop4U는 학교와 경찰사이의 믿을만한 협동작업을 후원하며,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공동의 조치들을 협의하고 실행한다¹²¹⁾. 학교에 배치되는 경찰은 고졸 이상으로 업무 수행 전에 주 경찰학교에서 이틀간의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은 주정부의 교원양성·교육개발연구소 산하 폭력방지 상담소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기획·시행한다. 학교배치경찰관은 학교주변 및 등·하교 길의 순찰경계를 강화하고, 전일제 학교에서는 오후에도 학교경찰이 교내에 상주하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협의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한다¹²²⁾.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해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

119)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1, 2007.

120) Zierbach, Nobert, "Handeln gegen Jugendgewalt", Berliner Forum Gewaltpraevention, Nr. 36, 2009, pp. 89-93.

121)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cop4u/>

122) o.V., 5. Verstaerkung der Cop4U an Schulen.

단되는 사항을 학생·교사 및 학부모에게 알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을 실시하며¹²³⁾, 학교모의 밤 행사, 교사·학부모협의회에 참여한다.

학교경찰배치제는 학교와 경찰 간에 긴밀하게 구축된 협력체제가 학교폭력을 포함한 범죄해결을 돕고 위기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높게 평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op4U' 프로그램은 독일 내 다른 주정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도 학교폭력 및 외부인의 학교침입에 대한 성공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¹²⁴⁾.

2002년 10월 교육청과 직업·평생교육청, 함부르크 경찰청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따라 2003년 12월 235명의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였다. 이후 시기별로 배치인원과 참여학교의 수는 거의 비슷하며, 2010년 5월 현재 237명의 경찰을 총 497개교에 배치하고 있다¹²⁵⁾. 이러한 Cop4U의 양적인 증가 외에도, Cop4U의 업무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¹²⁶⁾.

3. 한국의 학교경찰

1) 학교담당경찰관제도

학교담당경찰관제는 각 경찰서별로 외근 형사들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하나씩 담당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이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전국 대부분의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¹²⁷⁾. 학교담당경찰관은 일주일에 한번 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생활지도 교사 및 학교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이와 함께 설문조사나 개별 면접을 통하여 담당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수집하고, 학교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폭력가해자를 찾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신감 배양이나 과외활동 장려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익을 담당한다.¹²⁸⁾ 2005년 전체 학교 4980개교 중 4492개교에 학교경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형사·수사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로 지정되어 있다¹²⁹⁾.

123)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Grosse Anfrage und Antwort des Senat, 18/1844, Hamburg: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2005, p. 20-21.

124)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ert Abendblatt, November 6.2007, p.3.

125)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ert Abendblatt, November 6.2007.

126)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cop4u/>

127) 이민택,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경찰의 대책 연구, p. 21

128) 조병인 외, 앞의 책, P. 77.

하지만 경찰과 교사 간 실질적인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경찰도 학교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호 통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경찰과 학교의 정보공유가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한 학교당 외근 경찰관 한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관의 고유 업무가 벽차 대부분은 학교 내의 요청 시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청의 지침대로 주 1회 학교를 방문하는 형사는 전체의 6%에 불과해¹³⁰⁾ 불량학생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문제학생과의 상담활동 등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담당 경찰을 형사·수사 분야에 근무하는 경찰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강력사건을 다루는 형사들이 학생 상담 및 단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학교경찰관제도를 관장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노출 될 수 있다.

2)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 비행등을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여 불량서클 결성, 집단 따돌림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자를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¹³¹⁾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장의 지도 감독 하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주로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학생지도의 사각시간대에 복도, 옥상, 교내 후미진 곳 등 학교폭력 우려장소를 순회근무 하게 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교외지도를 병행한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혁신안으로 창안, 시행을 하여 2006년 6월 8일 배움터지킴이 시범운영을 확대하였고, 정부는 2007년 9월 702명, 2008년 809명 등 매년 확대 추진토록 하고 있다¹³²⁾.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¹³³⁾에 따르면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초등학교에 대해서 학교내외의 순시·순찰 강화를 위해 배움터 지킴이가 확대 배치되었고, 배움터 지킴이는 365일, 방과 후 학교 종료 시까지 학생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전적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29)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 153.

130) 이민택,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경찰의 대책 연구, p. 22.

131)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 157.

132)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 158.

133) 2010.06.2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창기 시범단계에서는 전직경찰 출신 1명과 교사출신 1명으로 2인 1교를 담당하여 교육적인 부분은 교사출신이, 비행예방 부분은 경찰출신이 주 임무를 맡아 상호 보완적이었으나, 예산부족으로 1인 1개교 원칙으로 배치되면서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¹³⁴⁾.

또한 ‘배움터지킴이’ 제도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이나 조례 혹은 자원 확보 대책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어온 탓에 근원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배움터 지킴이 교사는 학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부 소속으로서 생활지도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학교폭력을 은폐하고자 하면, 그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배움터 지킴이 교사의 업무가 대부분 등·하교시 교통정리와 일반적인 생활지도에 지나지 않아, 학생들에게 배움터 지킴이 교사의 권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소결

학교담당경찰관제와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이 누그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 제도에 문제점이 있으며, 다음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담당경찰관제 하에서는 학교를 담당하는 경찰이 치안을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움터 지킴이”제도에서는 배움터 지킴이가 학교장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 학교폭력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년퇴직 후 배움터 지킴이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나이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과 학생들 앞에서 권위가 서지 않는 것도 문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학교폭력 발생시 형식상의 제재에만 치우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명무실한 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 지킴이 제도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134)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p. 163.

IV. 기타제도

1. 미국 L.A.의 학교범죄 억제 프로그램(School Crime Suppression Programm)¹³⁵⁾

이 프로그램은 Edmund Edelman이 제안한 범죄억제 방안 중 하나로, 1981년 L.A.시에서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은 학교에 상주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이를 법원에 즉시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학생들과의 상담 및 학교 교직원과의 상담에도 응하고, 교직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학생들을 훈육한다. 원칙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현재 보호관찰 중에 있는 학생, 어떤 문제가 있어 특정학교로 배정된 학생 그리고 보호관찰국과 학교가 특별히 정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다. 보호관찰관은 이들을 감시·감독하고 법원명령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이를 사법기관에 보고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 담당자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학생사건의 87%가 보호관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소년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이버전(심판회피)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이 학교에 상주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가 있어,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에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보호관찰관은 학교와 다른 사법기관의 매개역할을 하고, 학교와 상호협력함으로써 학교폭력의 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 독일 함부르크의 PriJus제도

2009년 1월 1일 이래로 독일의 함부르크시는 21세 미만 청소년을 위해 “우선적 소년형사사법절차인 PriJu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riJus의 목적은 소송절차의 가속화, 즉 범행 이후 국가의 반응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riJus의 영역에서 소년형사소송절차에 관계되는 모든 기관들 - 즉 경찰, 소년검찰청, 소년법원, 소년법원지원처 그리고 소년구금시설 -은 긴밀히 협력한다. 특히 검찰은 신속한 공판을 위해 해당 소년법원에 빠른 공판기일을 요청할 수 있다.¹³⁶⁾

135) 법무부, “각국의 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72-73면

136)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protaekt/>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교사특별사법경찰권 요구

한국교총은 지난 4월 23일, 생활지도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특별사법경찰권¹³⁷⁾을 부여하는 조항을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단체교섭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라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면, 그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준사법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로 학생과의 거리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교육단체가 학생통제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수단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사법기관과 교육기관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현장이므로 법적인 부분은 관련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나가는 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8호처분, 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지킴이 제도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목적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면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미국의 학교보호관찰관제와 노동봉사제도 그리고 독일의 소년구금제도와 PriJus제도를 우리의 8호처분과 적절히 조화시킨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8호처분은 앞서 제시한 것처럼 노동봉사제도 및 치료·교육프로그램이 가미된 독일의 소년구금제도를 제안한다. 소년구금을 휴일구금, 단기구금 그리고 4주 이내의 장기구금으로 구분하고, 과실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죄에 대해서는 휴일구금 또는 단기구금을, 책임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장기구금을 부과토록 한다. 물론 이때 별도로 5호의 장기보호관찰이 현행과 같이 병과될 수 있다. 휴일구금의 경우는 미국식의 노동봉사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학생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경험을 갖게 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경감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면, 이것은 비행 정도가 약한 학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효과를 가져

137)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정하여진 사법경찰관리이다. 이들도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차이가 없으나, 다만 그 권한의 범위가 사항적·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임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장기구금을 부과하여, 인성교육을 위해 짜여진 1개월의 8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토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학교담당경찰관제, 배움터 지킴이 제도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제도 등을 폐지하고, 학교담당보호관찰관제 신설을 제안한다. 각 학교에 학교담당보호관찰소를 설치하여, 학교와 유기적으로 밀접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과의 상담을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수사하여, 8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법원과 검찰 그리고 학교장에게 알린다. 이 때 법원이 사실을 인지한 후 4주 이내에 처벌의 유무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징계시기가 늦어지면 행한 범죄와 처벌의 연관성이 약해져 처벌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여기에서 소년형사소송절차를 가속화시키는 독일의 PriJus(Priorit re Jugendstrafverfahren f r junge Schwellent er)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안이 8호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소년형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후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소년사범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보호관찰관일 것이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직무영역을 넓혀, 단지 소년사범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그러므로 1학교 1보호관찰관을 상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과도기적 형태로 5학교 1보호관찰관을 두어 1주일에 하루는 보호관찰관이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들과의 상담 및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가해학생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해학생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과 사회환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적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폭력 현실은 그러한 중·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주춤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단기대책이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한국>

이민택,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대한 경찰의 대책 연구,

이승현·강경래, “소년원의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8호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0-08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각국의 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72-73면

<외국>

Berger, R.R. (2002) Expansion of police power in public schools and the
vanishing rights of students, Social Justice, 29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Grosse Anfrage und
Antwort des Senat, 18/1844, Hamburg: Buergerschaft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2005.

Bundeskriminalamt(BKA), Newsletter 02/2005, at A2; Denso, Christian,
Hamburgert Abendblatt, November 6, 2007.

Cohen, H. (2004, October 19). Private school rethink security, The Miami
Herald, P. 1A

Kipper, B. (1996), Law Enforcement's role in addressing school violence,
Police Chief, 63

Matthias Jekosch, Der Tagesspiegel, December 11,2007; o. V. "Wachschutz
fuer 16 Berliner Schulen", Bild, August 15, 2008.

Nadia Noelting, Anja Schlender, &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December 11, 2007.

Stefan Strauss, Berliner Zeitung, June 27, 2007.

Tran, Q (2004.04.14). Police boast presence at schools, Arizona Republic, B1.

Zierbach, Nobert, "Handeln gegen Jugendgewalt", Berliner Forum Gewaltpraevention, Nr. 36, 2009,

<참고 법령>

독일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

독일 소년구금집행령(Jugendarrestvollzugsordnung)

<참고 기사>

2010.06.23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http://de.wikipedia.org/wiki/Gewalt_an_Schulen

<http://www.berlin.de/sen/justiz/justizvollzug/jaa/ueu.html>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protaekt/>

<http://handeln-gegen-jugendgewalt.hamburg.de/np-cop4u/>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2/04/2012-04-18%20warnschussarrest.html>

issues

3

학교폭력 피·가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 제1주제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 제2주제

-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치유 및 선도방안

session 3

학교폭력 피·가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제 1 주제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 발표 ❖

김미숙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하태정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서론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파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이다. 즉, 학교 근처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위협이나 협박, 욕설이나 폭언, 괴롭힘, 집단 따돌림 포함하는 것으로 단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삶을 파괴하는 학교폭력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피해의 양상도 더욱 처참화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는 모두 심리사회적인 적응력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고 싸움, 흡연, 학우들과의 친교 어려움, 외로움, 알코올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Zinan, 2010). 학교 폭력의 피해청소년은 다양한 증상을 느끼는데, 학업부진, 우울, 불안감, 공격성, 문제 행동 등을 보이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며 자살을 기도한다(성지희·정문자, 2007). 일부 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후에도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하고 학교에 잘 적응하기도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분노가 커짐에 따라 공격성이 생기고, 폭력을 학습하여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상대로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성지희·정문자, 2007).

원혜옥 외(2009)는 학교폭력이 피해자에 심리정서 뿐 아니라 학교생활, 대인관계 등 피해자의 삶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심리정서적으로 피해학생은 폭력을 당하고 나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분노와 불안, 공포, 우울감 및 소외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우울증을 겪는다(원혜옥·김자영, 2009). 학교생활면에서는 계속 학교폭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심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할 경우 수치심으로 학교가기를 꺼려하게 된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 성적이 떨어지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복심리와 불안감과 소외감을 줄이고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겠다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다른 이들을 피해자로 만들기도 한다(원혜옥·김자영, 2009).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피해청소년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대인관계 기피와 대인공포증을 갖게 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

(원혜옥·김자영, 2009).

유엔(UN)은 1985년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을 선포했고, 총회에서 채택하였다. 이를 ‘범죄 피해자 인권선언’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규정된 피해자의 주된 권리로는 개인으로서의 존중, 정보에 접근할 권리, 물리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 피해 회복을 요구할 권리, 가해자의 형사절차 등에 관여하고 알권리를 포함하고 있다(장맹배, 2011).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피해자를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어 왔고,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내용에는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의 시작은 일찍이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 2004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7개 관련부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대책에 의해서 피해유형 중 신체폭행이 '03-'06간 2.967%에서 2.86%으로 감소하였으나, 협박은 1.11%에서 4.26%로 증가하였고, 집단괴롭힘도 0.92%에서 3.21%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2004년 ‘피해자보호 및 지원 종합대책’ 발표한 후, 그동안 종합 대책을 여러 번 발표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종합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2008년에 10.5%였던 피해 경험이 2009년에는 9.4%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0년 11.8%, 2011년에는 10명 중 2명의 비율인 22.7%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 유형으로는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행이 48.3%, 돈이나 물건 갈취가 10.7%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33.6%, 집단 따돌림이 18.1%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30.9%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1번 이상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의 피해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상당수가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피해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

한 대책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실효성 있는 피해청소년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의 개념을 살펴본 뒤, 외국 주요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최근 제시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한 뒤, 현행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피해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나아가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의 개념 및 외국의 정책

1. 학교폭력 피해자지원의 개념

학교폭력을 위시하여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즉, 피해자 보호, 피해자 지원, 피해자 원조구조, 피해자 구조 등과 같은 용어가 동시에 사용된 채, 통일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피해자 지원의 개념은 1950년대 북미 유럽에서 민간자원봉사 조직에서 시작된 피난처 제공, 정신적·심리적 부조,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말한다(김경태, 2007). 1970년대 이후 민간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 국가 및 공공단체 차원의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신적, 심리적 부조 내지 법률 구조를 포괄한다고 하였다. 경제적 지원에는 공적인 피해보상을 의미한다. 단, 공적 부조에 의해 모든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민간차원의 피해자 지원 활동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 보호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꾀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조치이다.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 지원,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보장을 위한 것이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적절한 보호를 베풀고자 실시하는 모든 조치,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김경태, 2007).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 보호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익 보호,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피해자화 방지를 위한 국가와 민간 단체의 활동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자 보호는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피해자 지원’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인권의 주체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사회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내포한 피해자 지원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외국의 피해자 지원현황

한국의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을 살펴보기 전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은 외국의 학교폭력 피해자 대처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은 1994년에 The safe and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act of 1994를 제정하였다(김경태, 2007). 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 직원, 학부모, 학생, 검찰 및 경찰, 법원관계자, 지역사회 유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 위기개입, 기술 훈련, 또래상담, 지역사회프로그램,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안전대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미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는 PACT(positive adolescents choices training)와 VPCA(The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for adolescents)가 있다. VPCA를 통해서 교훈적인 제시, 학생들의 묘안짜기 기법, 역할훈련 절차, 창의적인 숙제배정, 폭력을 주제로 한 토의, 분노를 인간의 정상정서로써 검토하기, 분노 표현방법 알아보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기구가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접근하는 multi-agency coordination approach를 하고 있다(장맹배, 2011). 관련 기관으로는 가정, 학교,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지역경찰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현상과 상당히 연관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사회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 뿐 아니라, 목격자 등과 같은 간접 경험자에게도 심리적, 정서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장맹배, 2011).

2) 영국

영국에서는 The Education Act 1996에 의거해서 학교에서 수업받지 못하는 문제학생, 퇴학 및 자퇴생에 대한 교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김경태, 2007). 그 이후 개정된 The Education Act 1997에 의해서 품행이 좋지 않은 학생 징계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The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생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였다. 이 법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한편, 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에 의해서 학부모와 경찰에게 학생지도 및 단속의무 부여조항을 두고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학교폭력에서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적용하고 있다(장맹배, 2011). 즉,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등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를 복귀하는 것이다(장맹배, 2011).

3) 일본

일본의 청소년의 비행 및 보호에 관한 법에는 형사소송법, 재판소송법, 소년법, 소년원법, 범죄자예방생강법 등이 있다(김경태, 2007). 이와 관련된 기구 관련법에는 청소년 문제심의회 및 지방 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이 있다(김경태, 2007). 한편 교육과 관련한 법으로 학교교육법, 교원기본법, 사회교육법, 청년학급진흥법 등 50여개의 법이 있다(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 학교 내 폭력은 교육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지만, 학교 밖의 폭력에 관한 것은 형사관계법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루어진다(김경태, 2007).

일본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고,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이 연계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장맹배, 2011). 학교 내에서 학생지도부 뿐 아니라 학부모교사연합회(PTA) 등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학교폭력을 대처하고 있다. ‘학교 경찰 연락협의회’, ‘지역 지원시스템’, ‘학교 지원팀’ 등과 같은 연계체계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장맹배, 2011).

4) 독일

독일에는 학교폭력 발생 후 시행 절차와 과정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

라, 학교법에 피해학생을 위한 인권을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장맹배, 2011). 학교폭력의 처리과정에서 가장 최우선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다(장맹배, 2011).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있는 경우는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개입하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청에 청소년복지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기도 한다.

Ⅲ.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그간의 학교폭력 대책 중 피해자 지원정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상의 지원대책, 최근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학교폭력 지원 체계, 피해 신고체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정책에 대해서 다음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상의 지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보호조치는 제16조 1항의 1~6호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었듯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표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상의 피해자 지원내용

<p>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p> <p>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3.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3.21></p> <p>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p> <p>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p>
--

1) 심리상담 및 조언

이는 학교폭력대책법 시행령 제10조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되는 것으로 교사 혹은 학교 외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및 전문의료센터 등에 심리상담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일시보호

일시보호란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요양에는 입원요양, 통원요양,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고,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이 겪게 되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은 극심하다. 이에 따라 제16조 제6항에 치료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보호자’의 범위와 ‘보호자책임’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됨).

4) 피해학생 학급교체

학급교체란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이는 ‘일시보호’의 후속조치이다.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함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격리를 의미한다.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의 학급교체와 보충적 관계에 있다.

5) 그 밖의 보호조치

조치에는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 동행, 법류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신변보호지원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의 조치이다. 제6호의 ‘그 밖의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는 통상적으로 고려되는 보호조치의 유형에 불과하며, 동법 및 동법시행령 제6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원혜욱·김자영, 2009에서 재인용).

6) 학교생활관련 불이익 방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출석일수 산입, 성적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 등이 있다.

① 출석일수 산입

제16조 제3항 ‘제1항의 조치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적시하여 학교출석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성적평가에서의 불이익 금지

제16조 제4항 ‘학교의 장은 성적평가 등에 있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물론이고,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

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2012년 2월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12년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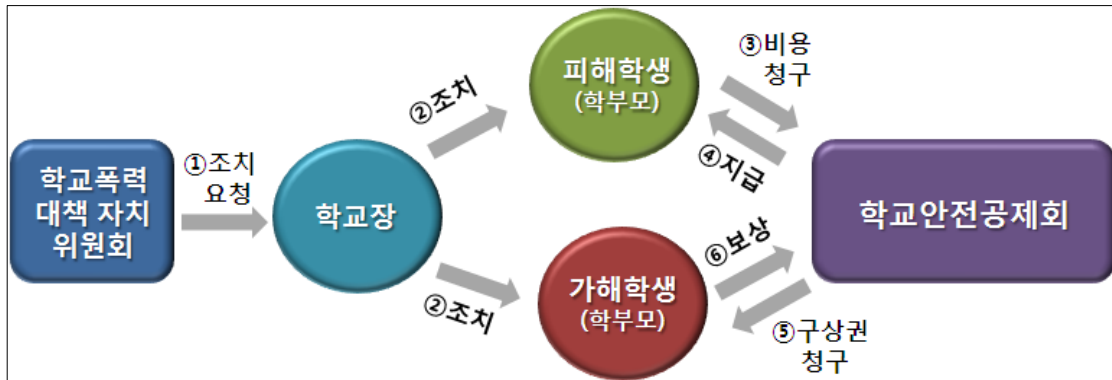
첫째,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당사자나 보호자 혹은 소속된 학교의 학교장이 청구서와 함께 병원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면, 공제회에서 학교장에게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둘째, 교육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조언이나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치료비 등이 지원되는 치료기간은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피해자 혹은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보호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넷째, 피해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에는 제한이 없다. 다섯째, 법률시행일인 2012년 4월 1일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초 학교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적용하되, 총 치료기간이 2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청소년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부담한 후, 가해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그림 1 참조).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의 주요 수행주체인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피해청소년 및 가해청소년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가릴 수 없는 경우(경찰조사 후 사고 종결되었으나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② 가해자가 경제적

13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시행, 2012년 3월 27일자 보도자료 참조.

인 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공제회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삭제하고,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 지원에 있어서 대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다.

[그림 1] 학교안전공제회 피해학생 보상절차 개선(안)



자료: 국무총리실, 2012.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2012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3. 피해청소년 지원체계

피해청소년 지원체계에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CYS-Net 및 Wee 센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 등이 있다.

1)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법무부는 2005년 8월 경찰병원에 ‘여성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ONE-STOP 지원센터는 경찰청의 수사, 상담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 등이 통합된 입체적 정부 피해자 보호시스템이다. 여기서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24시간 무료 통합서비스를 받게 된다(경찰청, 2011). 여기서 센터내 진술녹화실 설치,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설치하였다.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 및 침대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 구비하고, 원격지 화상대

질조사시스템 구축하였다. 법률구조공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 등 무료 법률상담 실시하였다.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2001년 10월부터 경찰병원 내에서 소규모로 시범운영해오던 성폭력 의료지원센터를 개편하여 성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성매매 피해여성 등에게 무료로 24시간 의료 및 상담, 수사에 필요한 진술 녹화·증거채취, 법률지원, NGO연계 등의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의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21개 센터가 있다.

주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법률지원은 여성·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무료법률지원단(50명)이 요일별로 센터에서 순환근무를 하고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담 등의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의료지원은 센터 전담의 산부인과 전문의와 응급학과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며, 첨단 산부인과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피해자의 피해 증거자료를 제공한다. 상담지원은 센터 내에 사회복지사가 상주하여 피해자를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며, 117 학교폭력센터 홈페이지와의 실시간 연계 및 NGO, 쉼터 등과의 연계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전국에 현재 17개소가 설치되어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방문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방문 현황

구분	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2007	9,352	5,701	2,463	105	336	747
2008	10,074	6,818	2,312	70	209	665
2009	10,471	7,140	2,348	116	177	690
2010	13,211	10,265	2,012	134	142	658
2011	12,722	10,169	1,788	110	92	563

자료: 경찰청(2011)과 사이버경찰청(2012) 자료 재구성

2)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2012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전국의 CYS-Net과 Wee센터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센터로 지정되었다.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을 지정하여, 피해 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준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관할 구역이 학교폭력서클이나 학교폭력 관련 민간기관 및 업소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학교폭력 조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경찰 및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피해학생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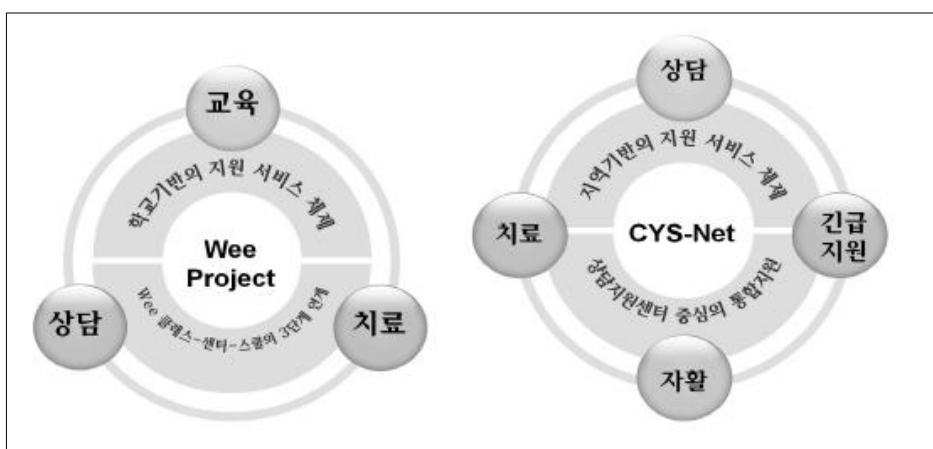
CYS-Net과 Wee센터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Wee 프로젝트의 3가지 안전망(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중 하나인 Wee 센터는 학교 안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CYS-Net은 학교 밖의 청소년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다(김지연·전연진·차성현, 2012). CYS-Net과 Wee센터가 속한 Wee프로젝트의 대상 및 활동목표, 주요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는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 CYS-Net과 Wee프로젝트 비교

구분	CYS-Net	Wee프로젝트
대상	학교밖의 청소년과 가정	학교 안의 청소년과 학부모
사업시기	2006년	2008년
활동중점	상담, 치료, 자활, 긴급지원	교육, 상담, 치료
활동목표	학교 밖 비행청소년 통합지원	건강한 학교생활 함양

자료: 김지연 외, 2012.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그림 2] CYS-Net과 Wee프로젝트의 주요 역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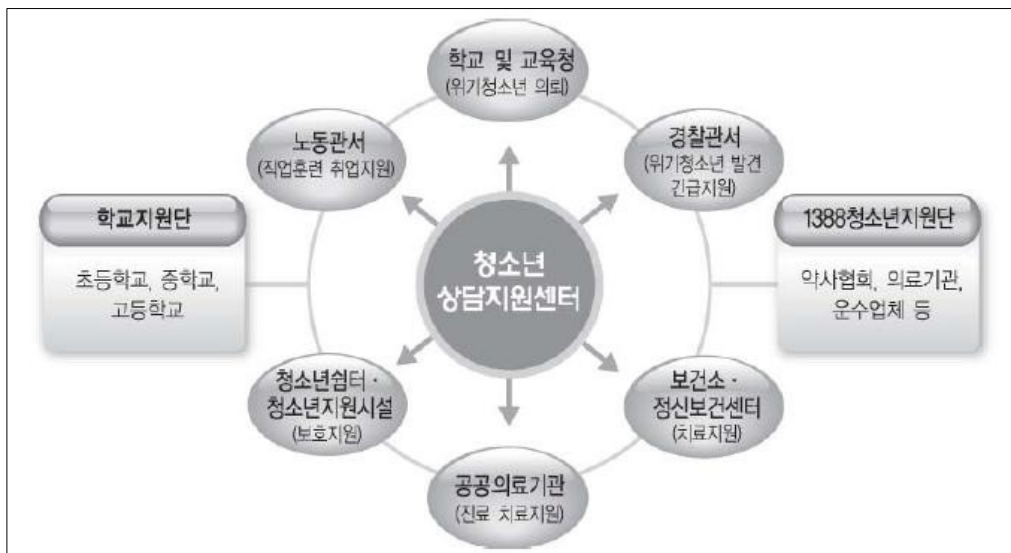
자료: 김지연 외, 2012.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① CYS-Net(여성가족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는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이다. CYS-Net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12).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CYS-Net은 16개 시도 및 150개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상담지원센터와 함께 학교 및 교육청, 경찰관서,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이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되어 위기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CYS-Net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종류는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및 학원지원, 진로 및 취업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로 나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

[그림 3] CYS-Net의 구성



자료: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 사업안내

② Wee 센터(교과부)

Wee 센터는 정서불안·학교폭력·학교부적응 및 일탈행동 등의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 중,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Wee 프로젝트의 3단계 안전망(safe-net)체계 중 하나이다.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1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Wee 클래스가 학교부적응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Wee센터는 단위학교에서의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때 활용되는 곳이다(최상근, 2011). Wee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가 제공하는 심리검사 및 사례 진단과 더불어 전문상담사가 학교폭력, 가정문제 등의 위기 유형별 상담 서비스, 청소년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학습컨설턴트 등을 제공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Wee 서비스 네트워크



자료: Wee 홈페이지. <http://www.wee.or.kr>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와 학부모 뿐만 아니라 법조계, 경찰공무원, 의료계, 청소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

<p>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2. 피해학생의 보호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 발생 전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며, 학교폭력 발생 후에는 분쟁조정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 도모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1차적으로 개입하여 피해 및 가해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한다(<표 1> 참조). 먼저 학교 내의 교사나 학교 외의 전문상담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심리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이 우려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혹은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하도록 한다. 셋째,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출석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한다. 넷째,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교체해주기도 하며, 마지막으로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학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발생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연수자료

4)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 제도

배움터 지킴이(School police)란 퇴직경찰과 퇴직교사가 2인 1조가 되어 교내순찰과 학생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내 화장실이나 옥상 등 후미진 곳을 반복 순찰, 학생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주력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역할을 하고 있다. 경미한 폭력은 지도교사에게, 중대한 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한다.

4. 피해 신고체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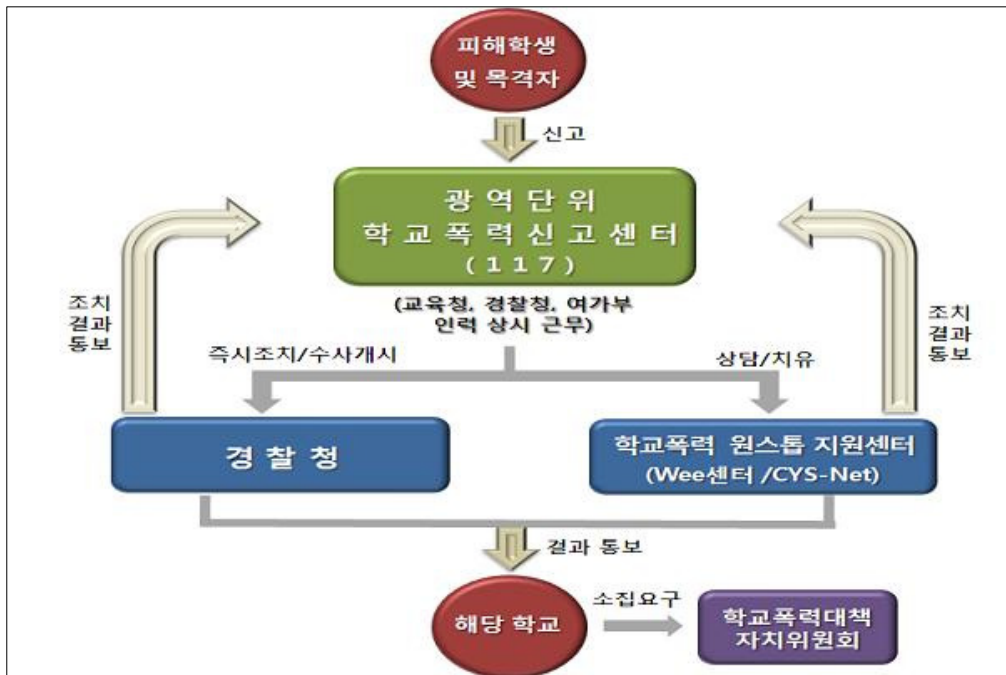
2012년 2월 범정부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고-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하나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설치 및 조사 기능의 강화」이다.

117 신고센터는 2004년 6월부터 경찰청의 여성청소년과에서 개소하여 운영되었으며, 2007년 7월에 182실종아동찾기센터와 117학교·여성폭력피해자 등 긴급지원 센터를 통합하여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로 운영되었다(안전 Dream 아동·

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2012).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접수는 117센터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1588-7179, 여가부의 1388 등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신고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는 경찰청의 117로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시·도 광역단위에 총 17 개소가 설치되어있다.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6]과 같다. 먼저 센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경찰청이나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Wee센터, CYS-Net)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경찰청과 상담센터는 이송 받은 사건의 최종처리 결과를 해당 학교 및 학교폭력신고센터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그림 6]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 6.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여성eNews, 2012)에 따르면 2012년 5월 현재 학교폭력 신고번호를 경찰청 117로 통합하여 운영한 결과, 신고건수가 전년도 1월 616건, 2월 1,124건, 3월 2,386건, 4월 4,592건, 5월 6,400건, 총 14,118건으로 18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그림 7] 117 신고추이



자료: 여성eNEWS, 2012,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 확대운영」 2012년6월19일자 보도자료

IV.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일시보호시설 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16조 1항 2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시설이나 가정 및 학교 상담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원혜옥·김자영, 2009).

원혜옥·김자영(2009)은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의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은 주로 가출청소년과 같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피해청소년만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다면 피해청소년들의 보호가 보다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원혜옥·김자영, 2009).

2. 피해학생 신변보호조치의 미비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7조).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해 강제적으로 등교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피해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3. 심리상담인력 부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운데 ‘심리상담 및 조언’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전문적인 상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중학생이 많은데 이를 집중해서 다룰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부족하다(이덕난, 2010). 2009년 피해학생의 77.1%(9046명)가 중학생인데, 2010년 7월 현재 중학교에서 일하는 전문상담교사는 199명에 불과하다.

4. 실질적 지원 부족

피해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나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단체 및 전문가 육성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이덕난, 2010). 2009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11733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5499명이 폭행 피해학생이며, 이 가운데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은 386명(폭행 피해학생에 비해 치료요양을 받은 학생이 매우 적음)에 불과하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금액도 지나치게 적은 문제가 있다.

5. 구상권 문제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가해자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분명하지만 변재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한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이 맞는 지를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6. 학교폭력 전담체계의 부족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Wee센터와 CYS-Net는 기존의 업무와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지원체계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학교폭력을 ‘전담’하고 있는 지원체계들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지만, 학교폭력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병환(2010)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거나 팀을 만드는 식의 업무 할당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기존에 해오던 일들에 추가된 업무들을 함께 전담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미 그동안 해오던 사업으로 익숙해진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병환, 2010).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청소년 및 피해청소년의 가정이나 개인 내적인 요인, 사회적인 지원체계 등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가질 수 있다(이병환, 2010).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문제들까지도 개입하여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호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상황 중 아동 및 청소년의 학대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호체계는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 의해 모든 지방정부가 단일한 보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이희창, 2007). 위기상황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접근법은 그 서비스의 체계와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방안

본 고에서는 이상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단기지원방안을 제안한다.

1. 각종 지원내용 보완

1) 일시보호시설

청소년복지법상 ‘청소년쉼터’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시설’등과 같은 기존의 시설 등을 확대하여 일시보호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만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원혜옥·김자영, 2009).

2) 학급교체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의 권리측면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피해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자치위원회의 요청한 후,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로 학교장의 조치’로 진행되고 있다.

3) 학습권의 보장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조치의 경우, 피해학생 학습권이 유지되도록 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명문 규정이 없으나,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이 유지되도록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원혜옥·김자영, 2009)

4) 피해학생 신변보호조치의 마련

피해학생이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학교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형법상의 폭력 피해와 중복되기도 한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장맹배, 2011).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부모가 피해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의 참여가 필수이다.

2.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정의 확보

경제적 지원, 의료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범죄피해자지원단체 육성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예산은 10억에 불과하다(김은경·이호중, 2006)

한편, 영국은 피해자보호협회(Victim Support)는 행사수입, 후원회원의 기부, 신탁 및 기금, 로터리클럽의 지원 및 크리스마스카드와 상품판매대금 등을 통해 재정 확보. 주된 수입원은 국고로부터 지원되고 있다(보조금: 재정수입의 97%). 미국은 범죄피해자보호협회(NOVA: 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예산의 25%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된다. 교육, 훈련 서비스의 위탁료나 기부금으로 조달된다. 일본은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일본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미국, 독일처럼 벌금, 몰수, 추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지원금 명목으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사회적지지 강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Holt & Espelage, 2007).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그룹과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들은 학교폭력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보다 동료들이나 친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들의 지지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Holt & Espelage, 2007).

학교폭력 사실을 목격한 학생들의 개입을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방관자들(bystanders)이 피해학생들을 돕기 위해 개입하면 매우 효과적이지만(Hawkins et al., 2001) 대부분의 방관자들은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kkes, M, 외, 2004에서 재인용)

미국 중학생 대상 설문 결과 중학생들은 학교폭력 상황에서 교사의 개입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폭력 상황을 알아차리고 개입하는데 필요한 훈련이 중요하다(Crothers et al., 2006). 학생들은 교사가 보호해 주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Crothers et al., 2006 에서 재인용). 폭력예방법 중에서 동료 사이에 돕는(peer support) 모델과 피해자중심(victim-focused) 모델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교사나 다른 어른들의 역할을 늘려서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Crothers et al., 2006).

한편, 학교간호사와의 상담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유익함이 발견되었다(Borup & Holstein, 2007). 학교폭력과 연관된 청소년들은 건강이상 증세가 있으며 학교간호사무실(school nurse's office)에 출입빈도가 높기 때문에 학교간호사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간호사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역할의식이나 준비 부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Zinan, 2010).

4.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예방노력 필요하다. 유럽 및 북미에서는 범죄피해자 프로그램은 국가 및 정부기관만이 실행주체가 아니라, 사회의 여성단체,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범죄피해구조가 가능하도록 자차단체, 경찰,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간에 유기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 교육과학기술부·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원 연수자료.
- 김경태.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피해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pp.175-201.
- 김은경·이호중. 2006.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연구총서 06-36.
- 김지연·전연진·차성현. 2012.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2012. 『학교안전공제회공제제도 안내』.
- 성지희·정문자. 2007.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학교적응과 보호요인.” 『아동학회지』. 제28권 5호. 1-18.
-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사업안내.
- 원혜옥·김자영. 2009. “학교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호자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17(1), 291-311.
- 이덕난. 2010.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교육법학연구』, Vol.22 No.2, pp.145-169.
- 이병환. 2010.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계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6(2), 45-73.
- 이희창. 2007.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맹배. 2011. “학교폭력 분쟁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1년 학교폭력 트렌드 발표 및 대책강화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최상근. 2011. 『Wee프로젝트 활용 만족도 조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국무총리실.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으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2012년 2월 6일자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先치료지원-後처리시스템 시행.” 2012년 3월 27일자 보도자료.
- 여성eNews,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 확대 운영」 2012년 6월 19일 보도자료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 Wee 홈페이지. <http://www.wee.or.kr>
- Borup I, Holstein BE. 2007. "Schoolchildren who are victims of bullying report benefit from health dialogues with the school health nurse." *Health Education Journal*. 66(1): 58-67.
- Boulton, M.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Crothers L.M., Kolbert J.B. & Barker W.F. 2006. "Middle School Students' Preferences for Anti-Bullying Intervention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 27(4): 475-487.
- Fekkes, M, Pijpers, F.I.M. and Verloove-Vanhorick, S. P. 2004. "Bullying: who does what, when and where? Involvement of children, teachers and parents in bullying behavior."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 20. No1. 81-91.
- Hawkins, D., Pepler, D., & Craig, W. 2001. "Naturalistic Observations of Peer Interventions in Bullying." *Social Development*, 10, 512-527.

- Holt, M. K. & Espelage, D. L. 2007. "Perceived Social Support among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6: 984-994.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consequences. in K.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 Shyness in Childhood*. Hillside, NJ: Erlbaum.
- Zinan, Nora. 2010. "Bully Victim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Program for School Nurs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working paper.

session 3

학교폭력 피·가해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제 2 주제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치유 및
선도방안**

❖ 발표 ❖

배상률 부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학교폭력이 한국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약속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이 문건에 따르면 1) 피·가해 학생 모두 절반이상이 초등학교때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2)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3)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나 성적 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¹³⁹⁾ 이는 최근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학교폭력에 대한 체감지수가 2008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데서도 드러난다.¹⁴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심각’이나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들이 2008년 28.6%에서 2012년 41.7%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75%가량이 학교폭력을 초등학교 시절 최초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같이 학교폭력이 심각해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즉 컴퓨터게임과 TV나 영화 등 미디어의 폭력 묘사에 대한 빈번한 노출과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폭력의 확장성, 지속성, 폭력행위에 대한 유희, 가해자의 영웅화 등으로 인해 모방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영상매체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4.9%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¹⁴¹⁾

이처럼 최근의 학교폭력 관련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홍포화,’ ‘만연화,’ ‘저연령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당국에 모든 책임과 의무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고 유기적인 대응을 할 때임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기 잘못된 가치관과 행동양식 습득은 특정 개인의 나머지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높은 사회비용 (예: 자살, 우울증, 중퇴자, 사회교화 등) 증가를 유발한다.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은 분명 ‘인성교육’과 사회·교육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단기적 가해청소년 선도 및 치유대책 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39) 관계부처합동 (200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140) 청예단 (2012).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청예단 (2008). 2008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141) 청예단 (2012).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대책 1. 학교폭력의 엄격한 정의 확립과 심각성 제고

연구자의 면접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장난’이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상당수가 직업특성상 교육적·온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간 사소한 싸움”이라는 인식이나 “성장통”이라는 사회 분위기나 교사들의 인식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폭력적 언행의 심각성을 간과하도록 만든다. 일선 교사들의 면접에서 드러난 바 “폭력 피·가해학생 부모들의 화해로 끝날 일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치다 보니 가해학생의 진로와 장래에 낙인을 찍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식의 가해학생에 대한 온정적 분위기가 만연하다. 반면 피해 학생과 부모가 겪는 고통과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른 제 2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기존의 폭력에 대한 정의와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좀 더 엄격하게 내려야 할 때이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체·언어·정신적 폭력 등 폭력의 구체적인 규정과 이에 따른 피해사례와 가능한 처벌 규모의 제시들을 담은 동영상과 교육자료 등을 정부차원에서 제작, 배포하고 학생들과 일선 교사들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시청이나 사용이 아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시청이나 사용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폭력사용이 특정 학생에게 미치는 심각성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들의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한 학기에 한 번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외부 강사나 시청각 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현재의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교육에서 최소한 한 반 단위의 소그룹별 강의와 토론으로 이뤄지는 ‘맞춤식 폭력 예방 교실’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폭력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교사들의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폭력의 기준과 사후처리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책 2. 사이버불링 처벌규정마련 및 예방

최근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사이버폭력에 대한 주의와 환기도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일어나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가 크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괴롭힘과는 확연히 구별된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 긴장과 좌절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따돌림을 더 많이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⁴²⁾. 즉 성격이 나쁘거나 가족과의 불화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남을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불링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10~20%의 청소년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불링은 향후 중요한 청소년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괴롭힘과는 여러 면에서 구별되는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www.cyberbullying.us)에 의하면, 2012년 6월 현재 미국 50개 중 49개 주가 따돌림과 관련된 법안을 가지고 있고 14개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리건주 등)는 사이버불링법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가령, 하와이주의 경우 자녀가 불링이나 사이버불링을 저지르게 되면, 그 자녀와 부모는 1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사이버불링에도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3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이버따돌림이 처음으로 학교폭력의 한 유형에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예방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이버불링에 대한 처벌규정 및 예방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령, 사이버불링을 당했을 경우 그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화면을 캡처할 수도 있고 메시지를 출력해 보관할 수도 있다. 사이버불링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 뿐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42) Patchin, J. W., & Hinduja, S.(2011).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Bullying Among Youth: A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Youth & Society*, 43(2), 727-751.

대책 3. 학생들의 놀이 문화 회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communication skills) 교육

십여년전만 하더라도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동네에서 친구나 형제·자매들이 함께 뛰어 놀며 ‘놀이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가정 한자녀시대’와 저학년부터 각종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과열된 교육 현상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체득과정을 밀어내고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을 통한 타인과의 교류가 주를 이루게 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또래집단들과 어울리며 관계 맺기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교우들과 한 반에서 어울리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갈등에 대한 조절과 타협을 어렵게 한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SNS 등에서 이뤄지는 커뮤니케이션과 관계 맺기는 매우 선별적이고 즉흥적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마주치게 되는 갈등에 대한 타협과 조종 기술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배려와 관용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놀이문화 회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 습득의 일환으로써 피·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폭력사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역할극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가 폭력 예방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이 큰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실시하는 강연이다. 이는 효과적인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보다는 몰입도가 높고 간접 체험을 통한 타인과 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역할극이 보다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문제해결 방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¹⁴³⁾ 역할극의 장점으로 문재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소장은 1) 학교폭력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2) 폭력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을 돌아보게 되고, 3)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¹⁴⁴⁾

또한 학교의 체육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요일별로 학년에 맞춰 쉬는 시간을 10~20분 가량 추가로 배정, 의무적인 ‘놀이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운동장 규모와 학생 수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 교사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운동장에서 20~30분간 뛰어 놀며 ‘놀이문화’를 통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체득하도록 함으로써 인성교육과 함께 타인에 대

143) 문재현 외 (2012). 학교폭력 멈춰! 살림터

144) 문재현 외 (2012). 학교폭력 멈춰! 살림터

한 이해와 심신의 단련도 도모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운동이나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공격성, 충동성 등을 해소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¹⁴⁵⁾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이 내신에 반영이 안되는 현 교육시스템을 수정,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를 통해 타인과의 배려와 협동심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을 학교 정규시간에 포함시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김정휘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위기에 처한 일부 청소년들은 소심하고 반항적이며 욕구 좌절을 겪어왔고 움츠러들기 때문에 곤경에 빠지게 되며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학생, 교사, 가족 성원을 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청소년들은 주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적의가 있고, 화를 내며, 공격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고 지적한다.¹⁴⁶⁾ 자기주장 훈련과 저항과 거절 훈련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체계적인 교육과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한 훈련을 가르침으로 해서 학생들 스스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과 분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일부 학교는 10분가량의 별도 시간을 배정하여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진일보한 체계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문 강사나 교사의 지도아래 일주일에 한두시간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 이해관계 갈등 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책 4. 전문상담인력 증강·배치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식 교사가 아닌 상담인 혼자서 수백명의 학생들을 도맡고 있는 곳이 많으며 그나마 학교재정문제로 상담인이 1~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신을 이해해주며 훈계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에게 학생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¹⁴⁷⁾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들처럼 전문 상담 인력이 최소한 한 명

145) 김남수, 이기봉, 박일혁 (2010).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선도를 위한 스포츠활동 적용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6) 김정휘 (2001).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도의 이론과 실제. 민지사.

배치되어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점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학교마다 서너명의 카운슬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다. 카운슬러는 학업에 관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회복지사는 심리적 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집단괴롭힘을 당하거나 폭력을 경험하면 카운슬러나 사회복지사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받는다. 학교안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가급적 학교안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미국교육의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특정 상담인이 소속 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분위기를 익힐 때면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기에 효과적인 상담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초·중·고의 구분없이 일탈과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의 상당수는 편부나 편모 가정, 또는 조손 가정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이러한 가정 환경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존재가 결여된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타 학생들과 교사에게 폭력성을 쉽게 보인다.¹⁴⁸⁾ 이 때 교사의 꾸중과 문제아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며 교사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며 전문적 상담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상담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으며 효과 높은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하며, 각 학교의 재정지원을 통해 전문상담인력은 가해학생들의 치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문상담인은 각 학생들의 애로사항과 고민에 귀기울이며 그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기관의 전문 상담인들의 면접 결과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학생들 편에서 인내를 갖고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린다”는 것이다.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사회 환경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반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¹⁴⁹⁾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몇 주가 걸릴지라도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진솔한 대화가 시작되고 눈에 띄는 개선된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 일선 상담인들의 증언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학교는 각 학생들의 가정배경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을 통한 이들의 심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학교폭력의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분류가 필요하

147) 정종진 (2012) 학교폭력 상담: 이론과 실제. 학지사

148) 문재현 외 (2012) 학교폭력 멈춰: 보살핌 우정 배움의 공동체. 살림터

149) Senna, J. & Siegel, L.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다. 또한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상담교사, 담임교사, 그리고 생활지도 교사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소위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지도가 이뤄져야 하겠다. 이같은 개선책은 결국 가해학생들의 치유와 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¹⁵⁰⁾

대책 5. 부모의 적극적 협조를 위한 법체계 개선

현장조사 결과 한부모나 조손가정의 자녀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후 처리도 이 학생들의 경우 보호자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폭력의 굴레를 끊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일반 가정의 자녀들 보다 더욱 크다. 이들뿐 아니라 정상 가정의 경우도 폭력사건이 발생해서 자치위원회나 학교의 호출을 받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폭력 사건 해결과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기에는 직장 업무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같은 경우, 부모들은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결근처리 등 사회적·경제적 제약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자녀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폭력의 피해정도가 클 경우 조치하는 ‘출석정지’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출석도 정지 되면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소홀하게 되고 가정에서도 방치가 되어 학생은 결국 자신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되고 이 경우 또 다른 비행이나 폭력을 일삼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근처리의 염려없이 부모가 며칠을 두고 집에서 자녀와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법의 정비도 고려해 볼만 하다.

대책 6. 미디어 규제 방안

청소년들의 폭력행위에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이뤄진 TV 폭력연구로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즉 미디어에 의해 묘사된 폭력장면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다. 즉 영화나 TV에 등장하는 폭력장면을 청소년들이 현실세

150) 최인재·김경준 (2007).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계에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¹⁵¹⁾ 최근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통한 청소년의 폭력성을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미디어와 폭력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를 위시한 6개 미 건강관련 단체들은 지난 2000년에 “부모의 무관심과 같은 위험요인들로 인해 폭력적인 미디어 이미지에 노출된 어린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공동 발표문을 내놓은 바 있다.¹⁵²⁾ 최근 호주출신의 학자는 휴대폰을 통한 가해학생의 영웅화와 폭력사건의 유희화가 이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억제에 위한 휴대폰 사용의 금지를 권고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뉴미디어나 전통 미디어의 구분없이 청소년의 폭력성에 미디어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같은 직접적인 폭력의 주요 변인으로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에 반박하는 일부 학자들도 최소한 가정환경이나 개인 성격 등 폭력이나 일탈에 영향을 끼치는 잠재 요인들이 실제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매체 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디어 사용 규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각 가정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선별적이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미디어 내용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통해 학생들의 무분별한 미디어 사용행태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사이버불링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만연화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대책 7. 교사/대학생과의 멘토링 (mentoring)제

교사나 대학생들과 학생들과의 멘도/멘티 (mentor/mentee) 관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편부·편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등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들에게 결핍된 가정의 일부 역할을 교사나 우수 대학생들에게 맡길 경우 효과를 볼

151)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summer), 10-29.

152) 전종수 (2012). 게임중독과 셧다운제. 커뮤니케이션북스, p. 51 (재인용)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산의 A고등학교의 경우, 정상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학생들이 70%가 넘고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이들 학생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평교사들은 4~7명의 학생들을 멘토로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의 업무를 넘어 한 가정의 부모와 같은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주고 휴일에는 함께 모여 여가생활을 하는 제도를 시행,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선 교사나 우수 대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제의 시행을 통해 개인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준다면 가해학생들의 치유 및 선도에 효과적일 수 있겠다.

위 상기한 대책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학생들의 치유와 선도가 가능한 것들이다. 폭력의 유발에 대한 Berkowitz의 이론은 낙담이나 자포자기 심정을 갖는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는 습관적 행동으로 고착화되고 더욱 더 쉽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포자기 심정이나 소외된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고, 폭력적 행동들이 억제되도록 우리 사회가 체계적이고 꾸준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이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더 나아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는 막대한 사회 비용을 치르게 된다.¹⁵³⁾ 청소년폭력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치유와 선도 대책도 학교와 교사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크게는 정부 정책의 대대적인 개선과 작게는 각 가정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기밀한 협조속에 우리 청소년들을 과도한 경쟁사회에서, 또는 파괴된 가정 환경에서, 폭력이 난무한 미디어 환경에서 낙담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 기원전 196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된 로제타석에 적혀 있는 말이다. 2천 500년 전 공자도 이와 비슷한 개탄을 했다고 전해진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기성 세대의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동·서양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일탈과 폭력문제가 최근들어 더욱더 심각한 사회문제화된 거시적 이유 중 하나로 가속화된 세계화와 인터넷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는 빠른 속도로 바뀌어지고 있으며 세대간 생활 패턴과 사고의 패러다임(paradigm)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선 교사를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는 책임의식과 눈높이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중·장기적 대응책과 상기한 단기적 대응책들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

153) 김정휘 (2001) 위기에 처한 청소년 지도의 이론과 실제. 민지사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

발 행 / 2012년 7월

발행인 / 김 일 수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02) 575-5258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주)정인&D

전화 (02) 3486-6791~6

※ 자료집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비매품]

